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Developing National Food Safety Agenda in a Rapidly Changing
Food Safety Environment

정기혜 · 곽노성 · 김정선 · 정진욱 · 박지은 · 신정훈 · 윤시몬 · 김경은

연구보고서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정 기 혜 외
발행인 김 용 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대명기획
가격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774-3 93510

머리말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이 제고될수록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적 화두는 복지, 안전, 재정분야 등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안전분야에서도 식품안전은 그 중요성이 제일이라 할 수 있다. 식품 수입국으로 해마다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비의도적 식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원전사고에 의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현안으로 지난 3월 발생이후 여전히 일본산 수입식품의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수산 식재료의 오염 증가와 온도 및 습도 상승에 의한 식중독 다발 등 예측되지 못한 자연환경 변화에 의한 식품사고도 발생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고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식품안전행정의 목표를 어디에 두며, 어떤 추진전략을 갖고, 세부실천과제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5대 국정기조중의 하나가 안전이고, 이중 식품안전은 민생분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큰 상황에서 이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예측, 우리나라와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현황

파악 및 분석, 향후 식품안전관리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장기적인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 선정, 상대적으로 허술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저해하는 수입식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제개정 방안 제시 등 시의성있는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개진된 연구결과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25
제2절 연구목적	29
제3절 연구내용	29
제4절 연구방법	31
제5절 분석방법	32
제6절 연구수행 체계	33
제2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37
제1절 식품사고 유형 변화	37
제2절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	42
제3절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	47
제4절 신소재 식품 및 신기술 출현	52
제5절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식품 인증 등 제도 강화	58
제6절 인구구조 및 식이섭취 변화	65
제7절 방사성물질 오염으로 인한 식품안전 위협	69
제3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75
제1절 국무총리실	75
제2절 농림수산식품부	85
제3절 식품의약품안전청	95
제4절 향후 추진대책	104

제4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113
제1절	국제기구	113
제2절	미국	124
제3절	유럽연합	131
제4절	일본	139
제5절	중국	14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50
제5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취약성 평가	157
제1절	식품위생법 제·개정 현황	157
제2절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제개정 연혁 및 내용	158
제3절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제개정 연혁 및 내용	160
제4절	업종별 영업 허가·신고·등록 현황	162
제5절	수입식품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제·개정안	167
제6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175
제1절	기본 틀	175
제2절	전문가 조사 실시	181
제3절	향후 추진전략 수립	209
제7장	정책제언 및 합의	219
제1절	결론	219
제2절	정책 제언	221
	참고문헌	223
	부록 :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조사표	231

표 목차

〈표 1- 1〉 전문가 인식조사 개요31

〈표 2- 1〉 식품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 현황39

〈표 2- 2〉 식품사고와 정부대응조치(2008~2009)40

〈표 2- 3〉 기후변화 관련 국내 정책관리 및 대응 체계43

〈표 2- 4〉 기후온난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전망46

〈표 2- 5〉 2009년 주요 상위 10개국 국가별 수입실적 현황48

〈표 2- 6〉 국가별 식중독 발생현황50

〈표 2- 7〉 국가별 원인군별 식중독 발생현황51

〈표 2- 8〉 연도별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승인 현황(2006~2009) ·53

〈표 2- 9〉 연도별 유전자재조합작물의 재배53

〈표 2-10〉 주요국의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 비교58

〈표 2-11〉 식품안전분야 안전 및 품질 인증 현황59

〈표 2-12〉 세계 각국의 HACCP 적용 현황60

〈표 2-13〉 연도별 HACCP 지정업소 현황61

〈표 2-14〉 세계 각국의 GMP 적용 현황63

〈표 2-15〉 세계 각국의 GMP 관련 법령63

〈표 2-16〉 연도별 비만 유병률 변화 추이65

〈표 2-17〉 연도별 영양소 섭취 변화 추이66

〈표 2-18〉 도시가계 월평균 가공식품비 및 외식비 지출추이67

〈표 2-19〉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현황71

〈표 3- 1〉 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추진목표75

〈표 3- 2〉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평가결과 현황76

〈표 3- 3〉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부처별 실적현황76

〈표 3- 4〉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관별 실적현황
(계속-기타 세부현황)77

〈표 3- 5〉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완료과제 현황	78
〈표 3- 5〉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완료과제 현황(계속)	79
〈표 3- 6〉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지연과제 현황	80
〈표 3- 7〉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계속과제 현황	81
〈표 3- 8〉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전 2020의 추진전략	85
〈표 3- 9〉 식약청 미래전략 2010의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104
〈표 3-10〉 2020미래계획의 기관별 추진 과제 및 내용	105
〈표 3-11〉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2020미래계획 추진 과제의 연계성	107
〈표 4- 1〉 Codex 분과위원회별 주요내용	113
〈표 4- 2〉 FAO 식품안전품질서비스(Food Quality and Standards Service, AGNS) 사업 개요	117
〈표 4- 3〉 OECD의 식품·사료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기준 관련 합의 문서 목록	122
〈표 4- 4〉 OECD의 화학적 안전 관련 주제	123
〈표 4- 5〉 미국의 식품안전관리 담당 기관 현황	125
〈표 4- 6〉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의견 수렴 질문서	126
〈표 4- 7〉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	127
〈표 4- 8〉 미국 정부기관의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 후속조치	128
〈표 4- 9〉 FDA 전략 : 식품안전을 위한 장기 목표	129
〈표 4-10〉 FDA 전략 : 식습관과 영양을 위한 장기 목표	129
〈표 4-11〉 전략목적(strategic goal) 달성을 위한 목표 (objectives)	130
〈표 4-12〉 EU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의 식품안전 분야 성과지표	133
〈표 4-13〉 EFSA의 식품안전관련 대내외적 요인 분석 결과	134

〈표 4-14〉 EFSA의 주요 전략목적 및 계획과 성공지표	135
〈표 4-15〉 일본 소비자기본계획 중 식품안전 관련 사항	142
〈표 4-16〉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중 식품안전 관련 주요내용	144
〈표 4-17〉 동경도의 식품안전추진계획 체계	145
〈표 4-18〉 동경도의 중점추진과제	147
〈표 4-19〉 식품안전위원회 구성원	148
〈표 4-20〉 중국의 식품안전정책 5대 목표	150
〈표 5- 1〉 식품위생법 개정현황	157
〈표 5-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관련 개정내용	158
〈표 5- 3〉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개정법 조항 총괄 현황	159
〈표 5-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관련 개정 내용	160
〈표 5- 5〉 업종별 시설기준 관련 개정법 조항 총괄표	161
〈표 5- 6〉 업종별 허가·신고·등록 현황	162
〈표 5- 7〉 업종별 허가·신고·등록 관련 주요 규정 비교	165
〈표 5- 7〉 업종별 허가·신고·등록 관련 주요 규정 비교(계속)	166
〈표 5- 8〉 [별표 17] 관련 수입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전면개정 검토사항	170
〈표 6- 1〉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Key Word 안	176
〈표 6- 2〉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Key Word 안	177
〈표 6- 3〉 세부실천과제 수립을 위한 대상분야별 Key Words 안	179
〈표 6- 4〉 세부실천과제 수립을 위한 시스템 Key Words 안	180
〈표 6- 5〉 조사개요	181
〈표 6- 6〉 조사대상자 구성분포	182

〈표 6- 7〉 환경변화 Key Word에 대한 분석	183
〈표 6- 8〉 환경변화 Key Word에 대한 의견	184
〈표 6- 9〉 환경변화 Key Word에 대한 추가 및 기타 의견	187
〈표 6-10〉 국가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채택여부 검토결과	188
〈표 6-11〉 국가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검토의견	· 189
〈표 6-12〉 국가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관련 기타의견	190
〈표 6-13〉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검토결과	191
〈표 6-14〉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검토의견	192
〈표 6-15〉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관련 기타의견	· 193
〈표 6-16〉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분야) 검토결과	194
〈표 6-17〉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분야) 검토의견	195
〈표 6-18〉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분야) 관련 기타의견	198
〈표 6-19〉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시스템) 검토결과	· 199
〈표 6-20〉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시스템) 검토의견	· 200
〈표 6-21〉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시스템) 관련 기타의견	201
〈표 6-22〉 조사대상자별 환경변화 Key Word에 대한 인식	202
〈표 6-23〉 조사대상자별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에 대한 인식	203
〈표 6-24〉 조사대상자별 추진전략 Key Word에 대한 인식	204
〈표 6-25〉 조사대상자별 세부추진과제 Key Word에 대한 인식	· 205
〈표 6-26〉 조사대상자별 세부실천과제 시스템 Key Word에 대한 인식	· 206

〈표 6-27〉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틀	209
〈표 6-28〉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식품안전환경변화 ..	210
〈표 6-29〉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213

그림 목차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32
[그림 1-2] 연구수행 체계	33
[그림 2-1] 식품수입액 현황	47
[그림 2-2]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관련 현황	48
[그림 2-3] 연도별 비만 유병률 변화 추이	68
[그림 4-1] FAO의 식품안전위기대응시스템 전략계획의 8대 요소 ..	119
[그림 4-2] INFOSAN의 조기경보 가동 체계	120
[그림 4-3] INFOSAN의 주요 조기경보 실적	120
[그림 4-3] IFOSAN의 주요 조기경보 실적	121
[그림 4-4] 일본의 식품안전행정체계	140
[그림 6-1]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목표(안)	211





Abstract

Developing National Food Safety Agenda in a Rapidly Changing Food Safety Environment

The goals of this study include: reviewing and evaluating Korea's food safety management; examining food safety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and drawing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orecasting future changes in Korea's food safety environment and charting directions for policy response; taking stock of regulations on food businesses and 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 and; setting mid-to-long-term strategies for food safety in Korea. To provide a basis for setting national agenda in response to the changing food safety environment, the authors extracted a set of key points: changing types of food safety accidents; increasing incidents of hazardous materials in imported foods and foodstuffs, climate and other environmental changes; emergence of new food ingredients and new technologies in food production; extended application of the FTA; strengthening food accredit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for consumer empowerment; aging population and changes in dietary patterns; food safety policies eyed to raising consumer satisfaction, and; food safety management in times of potential nuclear poll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Korea's mid-to-long term food safety strategies should be able to predict and duly respond to future changes in food safety environment. This will require prudent considerations of reconciling the issues of food safety and demands and policies concerning other areas. The findings point to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food safety and, thus, in the proceeding of the strategies. Also, the current capabilities of responsible Ministries should be closely examined and factored into the making of the strategies, with a view to making them implementable and sustainable.

요약

1. 연구필요성 및 배경

-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특히 식품 안전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
- 빈곤, 질병 등 과거 사회위험에 최근에는 식품안전이 새로운 식품안전으로 등장하고 정책적 부담이 되고 있음
-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하에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외국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식품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등 검토하여 우리나라 식품위생수준을 제고함은 시의성있는 연구임
-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하의 목표, 전략, 세부실천과제 등 개발은 필요함

2. 연구 목적

-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및 평가
-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예측 및 식품안전추진 방향 설정
- 식품위생법상 우리나라 식품영업자 규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식품안전의 중장기 전략 목표 등 수립

3. 연구내용

-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안전 추진 현황 및 평가
 -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실적 평가
 - 각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평가
- 국내외, 국제기구의 식품안전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영업개설 조건 검토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검토 및 개정안 마련
- 중장기 식품안전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별 Key Words 도출
-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 기본 틀 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사
- 향후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4. 연구방법

- 기존 문헌 고찰 및 분석
 - 국무총리실, 농수산식품부, 식약청의 최근 3개년 업무추진 실적
 - 부처별 미래계획 분석
- 외국과 국제기구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파악
 - 일본, OECD, EU, 미국 식품안전 작업그룹(Food Safety Working Group, FSWG)등 자료 분석
- 식품위생법 제개정 연혁 및 내용 분석
- 각 법령별 영업개설 조건 비교 분석
-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추진 실적 평가
- 전문가 인식 조사
- 연구진, 전문가, 각 부처 담당자 정책간담회

5. 연구결과

가. 식품안전 환경변화

1. 식품사고 유형 변화 및 법적 대응
2.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3.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
4. 신소재 식품 및 신기술 출현
5.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강화
6. 인구구조 변화 및 식이섭취 변화
7. 방사능 오염에 대비하는 식품안전관리

나. 국내외 관련국 및 국제기구 식품안전관리동향 분석

1) 국내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의 업무 추진실적을 위주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가) 추진목표 비교

□ 국무총리실

〈표 1〉 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추진목표

2009 ~ 2011

1.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2.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평가
3.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4.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

〈표 2〉 최근 3개년 농식품부 추진목표

2009	2010	20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식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고급화 추진 2.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3. 농수산업의 체질 강화로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 4. 농어업인을 위한 소득, 경영안정 장치 확충 및 도시민과 상생하는 풍요롭고 활력있는 복지 농어촌 구현 5. 체계적인 대외협상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로 농어업개방에 대비한 대응체계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식품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2. 농수산업 체질 강화로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 3. 농어업 경영혁신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 4. 농어촌 활력을 증진 및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5. 체계적인 대외협상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로 어업개방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 분야 위협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 성장동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3. 농어촌 지역 활성화

□ 식약청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최근 3개년 식품안전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3〉 최근 3개년 식약청 추진목표

2009	2010	20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이 체감하는 식탁안전 2.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약 환경 조성 3. 건강한 삶을 위한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 4. 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실용적인 안전컨설팅 5. 규제 합리화로 기업 활력 제고 6. 민·관 협력을 통한 알지리 창출과 재정 조기 집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2.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심 3. 녹색성장과 미래 수요 대비 4.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5. 국가 품격 향상과 국제협력 기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2.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 3.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발전 지원 4.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 개혁 5. 안전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 활성화 6.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나) 2020 미래계획 비교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의 2020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4〉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전 2020의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업의 체질전환 ② 신성장 동력 창출 ③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④ 국가식품시스템의 선진화 ⑤ 지역 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
--

□ 식약청

〈표 5〉 식약청 미래전략 2020의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
완벽예방 (Sufficient Prot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강화 ②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개선 ③ 정책대상별 맞춤형 예방서비스 제공 ④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 강화
신속대응 (Speedy Respon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선진화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⑥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 활성화 ⑦ 신속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대
최적지원 (Smart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국내의 식의약 지원 네트워크 확립 ⑨ 정보공개 및 정책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⑩ 식의약 신기술 개발과 안전 지원 강화 ⑪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역량 확충

2) 외국

〈표 6〉 식품안전관리 국외기관의 추진전략

구분		전략목표
미 국	FDA (2011-20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과학기반의 예방통제를 수립함. 2. 국내 및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방통제를 달성함. 3. 공중보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역량을 확립함. 4. 소비자가 더욱 건강한 식습관을 선택하고 만성질환과 비만을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적시적인 정보를 제공함. 5. 고영양식품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식품 재조리를 권장함.
	FSIS (2008-20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위생을 보호하기위해 검사, 집행체계 및 시행 강화 2. FSIS의 공중위생 보호 접근에 있어서 위험분석과 취약성 평가의 사용 강화 3. 과학의 발달과 위험에 근거한 정책 및 시스템의 강화 4. 기관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튼튼한 자료수집과 분석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강화 5. 기관의 임무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반의 개발과 유지 강화 6. 공중위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의 영향과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강화
캐 나 다 (2011)	보건부 (Health Canada)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제품과 식품, 건강한 선택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
	식품검사청 (CFIA)	식품공급과 관련된 건강위험 및 동물질병의 사람으로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관리
E U	보건소비자보호총국 (2011)	식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
	유럽식품안전청 (EFSA) (2009-20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장부터 식탁까지 식품제인과 관련된 과학적 지문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적 접근에 초점 2. 규제 승인 절차에 필요한 제품, 물질, 정보표시에 대한 높은 품질의 평가를 적시에 제공 3. EFSA 소관 분야의 자료를 수집, 배포, 분석하는 작업 조정 4.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위해성 평가 방법과 실행에서 EFSA가 최선봉에 위치 5.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위해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EFSA와 EU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강화 6. EFSA의 대응성, 효율성, 효과성 강화

3) 시사점

〈표 7〉 국내외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 비교

1차 기본계획	외국	정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강화 - 위해성 커뮤니케이션 강화 - 예방통제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과학적 역량 강화 - 농장에서 식탁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정 안전성 제고 - 맞춤형 예방 서비스 제공 - 선진화된 위기대응 - 최적 지원 강화(인적, 물적) - 신성장 동력 - 식품안전관리체계

4) 국내 부처별 목표

□ 부처별 목표 설정

○ 식약청

- 사전예방, 국민안심, 전과정 안전성 확보, 소비자와 소통강화, 기관간 협력강화, 규제개혁, 국제조화
- 연령별 영양관리,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첨가물 및 위해 기능 영양성분 저감화, 비만 예방에 중점
- 고령층에 대한 추진과제 미흡

○ 농식품부

- 식량안보, 식재료 안전성 제고, 시장개방 대응
- 취약계층 대상, 학교 교육 강화, 녹색식생활,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알레르기 및 질병과 영양의 연관성
- 고령층에 대한 추진과제 미흡

5) 외국

□ 행정 문화적으로 범정부적이기 보다는 기관별 중장기계획 수립

- 소비자 역량강화, 예방통제, 기관의 역량강화
- 재조리 등 영양분야 언급

□ 추진전략 구성하고 있는 국내의 주요 방향성 비교

- 국내는 사전예방 및 소비자 소통강화, 기관간 협력강화
- 국외는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의 과학적 역량강화 노력

다.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 평가

1) 총괄평가

가) 연도별

〈표 8〉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평가결과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계	195	100.0	174	100.0
정상추진	150	76.9	141	81.0
완료	27	13.9	21	12.1
지연	10	5.1	2	1.1
입법절차지연	8	4.1	10	5.8

나) 기관별

〈표 9〉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관별 실적현황

(단위: 건수, %)

구분	식약청					농식품부					기타				
	계	2009		2010		계	2009		2010		계	2009		2010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계	169	91	46.7	78	44.8	164	85	43.6	79	45.4	36	19	9.7	17	9.8
정상추진	129	68	45.3	61	43.3	131	65	43.3	66	46.8	31	17	11.3	14	9.9
과제완료	29	19	70.4	10	47.6	17	7	25.9	10	47.6	2	1	3.7	1	4.8
자연	5	4	40.0	1	50.0	5	5	50.0	0	0.0	2	1	10.0	1	50.0
입법절차 자연	6	0	0.0	6	60.0	11	8	100.0	3	30.0	1	0	0.0	1	10.0

주: 기타는 총리실, 환경부, 교과부, 법무부, 관세청 등이 추진하는 과제임.

다) 사업별

□ 미흡한 점

- 우선 실천과제의 질적인 면보다는 목표 달성의 양적인 면에 치우쳐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HACCP 적용 업체 비율로 프로그램의 올바른 적용과 점검보다는 업체 적용비율의 양적확대에만 주로 집중했던 것으로 판단됨.
- 단순히 전년 대비 사업건수 증감, 국민 만족도 상승치 등 사업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단순비교 지표가 대부분이라 시계열적인 계량적인 사업 평가를 할 수 없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지자체 통합평가의 식품안전관련 지표는 4개로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한 형편임.
- 정책집행이 조금 더디더라도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는 사전조사

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대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를 거친 사업이 없어 보여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시범사업이나 사전조사를 실시토록 함.

- 잔류농약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차별화된 정책수립 및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아 업무의 중복,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수산물에 대한 제도 적용이 농산물과 정도 차이를 보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음.
- 대부분의 사업이 정책 수단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목표달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책목표의 성취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설정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였음.
- 한국 교민위주의 한식세계화 등 일부과제는 정책내용이나 수단의 범위가 협소하여 정책 달성의 임팩트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GAP, HACCP 등이 농산물을 위주로 적용되는 등 대부분의 정책내용이나 수단이 기존 업무영역과 차별적이지 않고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 개선노력 등을 평가해 줄 수가 없었음.
- 소비자단체 등과는 의견수렴 및 일정 점검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일부과제의 경우 언론·전문가그룹(학회)·식품업계 등의 Opinion leader 대상으로한 다양한 참여 노력이 미흡해 보였음.
- 민관협의체 활용 및 어린이 먹거리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정부 부처간 사전 업무협조가 부족해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었음.
- 대부분의 경우 과제추진 및 성과의 홍보가 보도자료 설명회 등 기존 방식에서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국민 인지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미흡하였음.

라) 업종별

〈표 10〉 업종별 허가·신고·등록 관련 주요 규정 비교

해당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담배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형태	허가/신고	신고	허가/신고	허가/신고/등록/지정	등록
대상	(허가대상) - 식품조리처리업 - 유흥주점영업 (신고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축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 제조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피부) - 세탁업 - 위생관리용역업	(허가대상) - 사회복지법인 (신고대상) -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	(허가대상) - 담배제조업 (신고대상) - 담배의 판매 가격 (등록대상) - 담배판매업 (지정대상) - 담배소매업	- 건설업
사전 현장 점검	- 출입 검사수거 (법제22조)	- 보고 및 출입·검사 (법제9조)	-	-	- 검사 및 인도 (법제37조) - 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법제86조의3)
유효 기간	-	-	-	-	-
갱신	-	-	-	-	-
교육 이수 여부	- 식품안전교육 명령 (법제19조의3) - 식품위생교육 실시 (법제41조)	- 위생교육 (법제17조)	-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법제13조)	-	-
특징	- 검사명령 (법제19조의4) -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법제48조)	-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법제13조)	-	-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마) 전문가 조사 실시 및 결과

□ 응답자 구성 분포

- 총 5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이 35명, 전문가가 23명이었음.

□ 환경 변화

- 조사 결과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확정된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음.
 - －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식품안전관리를 포함하여 총 9개 아젠다로 확정됨.

〈표 11〉 환경 변화 Key Words 안

1. 식품사고 유형 변화
2.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
3.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변화
4. 신소재 식품 및 신기술 출현
5. FTA 확대
6.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등 정보 제공 강화
7. 인구 고령화 및 식이섭취 변화
8.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
9.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식품안전관리

□ 전략 목표

- 조사 결과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확정된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음.
 - －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한 주제로 보아 총 8개 Key Words가 선정되었음.

〈표 12〉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Key Words 안

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2. 안전(Safety)
3. 역량(Capability)
4. 공정(Fairness, equity)
5. 예방(Prevention)
6. 과학(Science)
7. 소통(Communication)
8. 건전(Soundness), 완전(Wholesomeness), 안전(Safety)

□ 추진전략

- 조사 결과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상위개념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거버넌스, 규제, 방식 등 총 10개 Key Words가 선정되었음.

〈표 13〉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Key Words 안

1. 거버넌스 (Governance)
2. 규제 (Regulation)
3. 방식 (Method)
4. 지원 (Support)
5. 근거 (Evidence)
6. 대응 (Response)
7. 평가 (Evaluation)
8. 시장 (Market)
9. 연구 (Research)
10. 교육 (Education)

□ 세부실천과제

-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향후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확정된 분야별 세부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음.

- 알리지 관리, 식품유통, 식품저장 등 총 30개 Key Words가 선정되었음.
- 시스템 분야 세부실천과제는 인프라, 국제협력, 사전 모니터링 등 총 8개 Key Words가 선정되었음.

〈표 14〉 세부실천과제 수립을 위한 대상분야별 Key Words 안

1. 수입식품	2. 검역
3. 수출식품	4. 식품유해물질
5. 식품유해 미생물	6. 표시
7. 인증	8. 신소재 및 신기술 식품
9. 식중독	10. HACCP, GMP, GAP, GHP
11. 식품첨가물	12. 유기농
13. 잔류농약	14. 유전자재조합식품
15.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16. 고위험집단의(어린이, 노인) 먹거리
17. 외식	18. 집단급식
19. 건강기능식품	20. 식품유통
21. 식품저장	22. 사료
23. 주류	24. 식품포장
25. 알리지	26. 방사능
27. 농식품(식재료)	28. 영양
29. 식품이물	30. 식품안전사각지대

〈표 15〉 세부실천과제 중 시스템 수립을 위한 Key Words 안

1. 인프라
2. 국제협력
3. 사전 모니터링
4. 사후관리
5. 위해식품 신속수거 등 대응
6. 이력추적
7. 지자체 평가
8. 자체평가 강화

마. 향후 중장기 식품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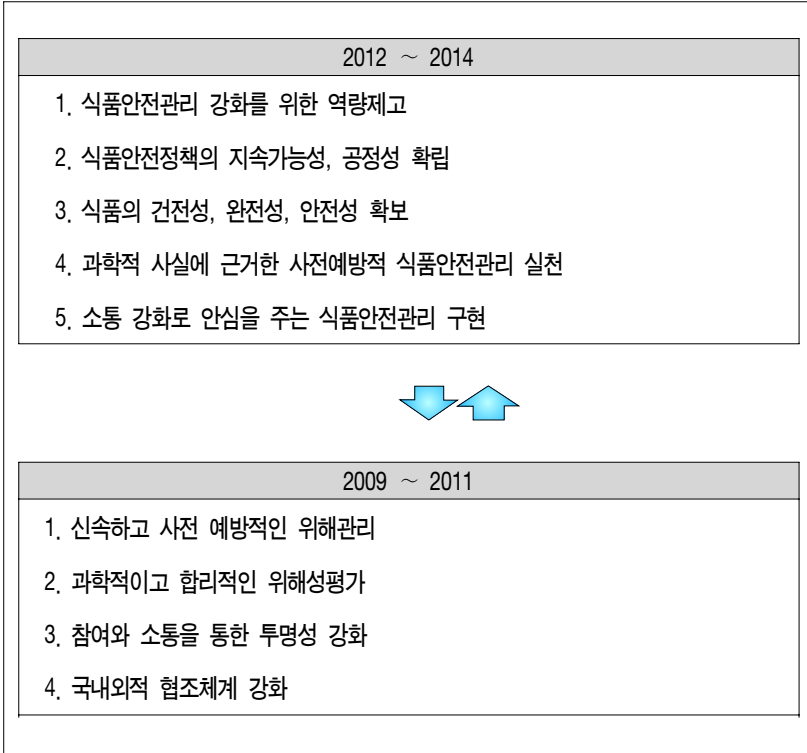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1. 향후 3년간을 포함한 그 이후의 식품안전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부여
2. 타 분야와 동일한 국정기조,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계획 수립
3. 전략목표는 새롭게 채택된 방향과 기존 강조되어야 할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
4.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는 각각 상위개념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구성
5. 세부과제는 식품안전관리 범위의 확대 차원에서 가능한 폭넓게 포함
6. 각 부처의 추진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적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
7.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과 더불어 신규사업 개발, 추가
8. 각 중앙정부 부처간 업무연계 강조
9. 지자체의 업무추진 능력 제고
10. 자체 평가 강화에 의한 역량 제고 모색

□ 전략목표(안)

-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확정된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 －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이 4개인데 반해 5개로 확대됨.
 - －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과학, 예방, 소통은 중요한 Key Words로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에도 전략목표로 설정되었음.
 - － 특히 현재 우리나라 국정기조인 지속가능성, 공정성 등을 식품안전기본계획에도 포함시켰음.

[그림 1]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목표(안)



□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5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개 Key Words별 추진전략은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16〉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전략목표	1.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역량 제고	2. 식품안전관리의 지속가능성, 공정성 확립
특징	제도의 효율화, 합리화 및 국가, 기관 등 경쟁력 제고	관리체계 전환 및 구축, 공정경쟁, 취약부문 지원
거버넌스	업무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성 증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효율적인 업무협력체계 구축
규제	단계별 식품안전규제 합리화	중장기적인 규제개선 정책 수립 및 집행
방법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감독 강화
지원	국제기준에 합하는 법 제·개정 등 관리 균형화	인적, 물적 지원의 타당성 제고
근거	근거기반한 위해평가 실시	식품안전의 취약성 평가 및 활용 강화
대응	식품사고에 신속, 적정 대응시스템 구축	위해식품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체계 마련
평가	자자체 식품안전업무 추진 실적 평가	평가결과의 선순환적 활용 확대
시장	신소재, 신기술 제품의 안전관리	친 시장적 정책 및 관리 기능 강화
연구	연구 확대로 정책의 근거 기반 마련	자료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유지 강화
교육	교육 강화로 이해당사자간 소통 원활	업무추진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표 16〉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 계속

전략목표	3.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확보	4.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특징	위해식품 및 식품의 영양관리	사전관리, 위해평가 강화
거버넌스	식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위해평가의 전문성 강화
규제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	규제승인에 필요한 평가의 적시 실시
방법	고 영양식품의 올바른 조리지침 마련	국내외적 위해예방통제 강화
지원	새로운 식품 개발을 위한 지원	과학에 근거한 위해정보 수집체계 강화
근거	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과학의 발달과 위험에 근거한 정책개발 및 시스템 강화
대응	고 위험식품의 관리 강화	식품검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평가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식품관련 인증제의 실효성 평가 및 개선
시장	식품인증 등 표시 강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근절
연구	소비자 인식조사의 체계화 및 시계열적 분석	외국의 식품유해물질 관리 현황 연구
교육	만성질환(비만포함) 감소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수입국의 해외실사 전문성 강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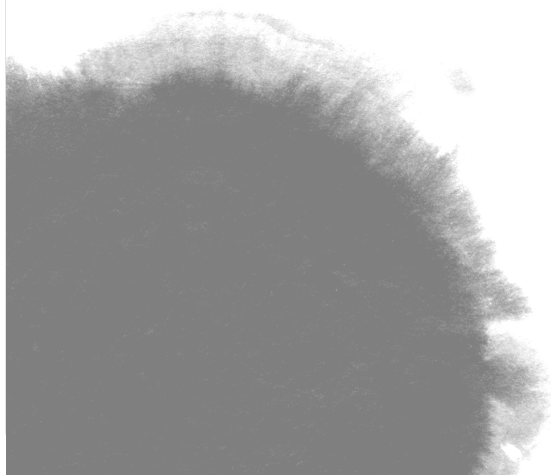
〈표 16〉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 계속

전략목표	5. 소통 강화로 안심을 주는 식품안전정책 구현
특징	국가, 기관, 업체, 개인 등 소통
거버넌스	소통체계의 전문화 및 계통화 유지
규제	단계별(생산부터 소비까지) 소통차단 요인 확인 및 개선
방법	생산 및 유통환경의 위생수준 강화
지원	이력추적시스템 확대 적용을 위한 지원
근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환경 조성
대응	식품공급에 관련된 건강위험 최소화
평가	정기적인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장	(식품)유통구조 간전화
연구	식품안전의 사회위험화 현황 및 대응 전략 마련
교육	올바른 인터넷 정보 선택 및 활용을 위한 교육 강화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의 식품 생산, 제조 유통 등의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식품 생산 환경에서는 농수축산물의 증산을 위한 농약, 동물의약품 등 인체 위해가능물질의 의도적, 비의도적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농약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발달에 따른 잔류농약, 항생제, 다이옥신 등 환경유래오염물질과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등 식품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등 신중유해물질의 출현이 증가하여, 산업오염물질의 토양 등 오염 확대로 농축수산물의 오염기회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식품 제조 및 유통 환경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방사선 조사식품 등 신소재 식품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고, 식경험이 적은 기능성 소재 및 식품가공시 첨가되는 아질산염, 착색제 등의 식품첨가물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걱정 섭취 수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사전사후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멜라민 등 식품위해물질의 지속적인 검출로 인해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해지면서, 결국 이러한 소비자불안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게 되고 궁극

적으로는 국가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식품성분, 식품첨가물, 식품오염물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규격이 강화됨으로써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의 식량 자급률(2005년에 29.2%)¹⁾과 국산 식재료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1995년 WTO 출범 이후 1995년 대비 2005년에 수입식품이 2배로 증가하였고, 특히 원료식품의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향후 FTA의 확대에 따라 수입식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수입식품 및 원료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식품유해물질의 국가간 이동도 그 속도와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식품안전 사고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이옥신에 오염된 외국산 돼지고기, 멜라민에 오염된 유제품류 등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되고 있고, 수입 원료에서 기인하는 비닐, 노끈 등 식품이물 또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산 위해식품의 유입으로 인해 관리와 통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국내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소비자의 불만 상승과 현장에서의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추가 생산비 증가 등 식품제조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원료의 이물 제거를 위한 추가 공정까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식품에 의한 사고는 동종의 국내식품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관리체계, 검사체계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 분야 외에 여러 분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식량수급의 불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기후

1) 우리나라 식량자급률(물량자급률기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31.1%(’01) → 27.8%(’03) → 29.2%(’05)임.

변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질병매개체 질환인 말라리아 또는 기온상승과 비례하는 쯔쯔기무시증, 유행성 출혈열 등의 발생 확대가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출현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 등의 식품 안전 관련 문제가 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확산되어 food chain의 위협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후온난화 속도 완화와 함께 국민의 선제적인 적응방안 도출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식품 내 이물질 혼입, 멜라민 검출, 식중독사고 등 식품 관련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식과 단체급식이 증가하고 있어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대형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식품 제조, 가공 및 취급시의 부적절한 위생관리에 기인하는 식품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의 위생관리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HACCP, GMP 등 외에도 일부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우수위생기준(GHP)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만족시키고 식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식품에 대한 안전규격이 세계적인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기에 국제 식품안전기준과 국내 기준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식품안전관리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도 식품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우수위생기준(GHP) 등의 위생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도입,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폭우, 폭염, 지진 등 기상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위협 뿐 아니라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식품안전에 미치는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 등 원자력발전소 사고나 핵실험으로 발생하는 각종 인공 방사능물질이 대기 환경으로 방출되고 방출된 물질이 낙진 또는 비를 통해 직접 채소나 농·축·수산물을 오염시키거나 토양이나 해양을 오염시킨다. 다량의 방사능물질이 오염된 토양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면 농작물이 방사능물질을 흡수하여 축적하게 되고, 이 농산물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방사성 물질을 간접적으로 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방사성물질의 반감기(세슘 30년)에 따라 중장기적인 모니터링검사와 관리가 필요하고, 오염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국민 정보전달이 시급하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향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아젠다, 프로젝트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아젠다, 프로젝트를 추진, 실행 및 달성하기 위한 목표설정 등의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겠다.

2. 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필요성 및 배경,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 및 분석 방법 등이 작성되어있다. 제2장은 향후 처하게 될 식품안전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이 되어있고, 제3장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는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의 기관 사업 평가가 작성되어 있고, 제4장은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등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현황이 분석되어있다. 제5장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취약성을 평가하였는데 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외국과 비교하였고, 제6장은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이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이 개진되어있다.

제2절 연구목적

식품안전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아젠다,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전략 수립 등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 환경변화 고찰 및 분석

둘째,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화 선정

셋째,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의 키워드 개발 및 선정

넷째, 우리나라 식품안전 취약성 평가 및 수준 제고를 위한 법적 제 개정 방안 모색

다섯째, 향후 식품안전관리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여섯째,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도출

제3절 연구내용

1. 기존 문헌 및 자료 고찰, 분석

- 주요 환경변화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 기후변화, 식품위해사고 및 수입식품 증가 등
- 사업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에 관한 기존 문헌 고찰
 - －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 각 해당부처별 2020 미래계획 및 각년도 중점추진사업 등
- 식품위생법 제개정 연혁 및 내용 분석
 - － 영업자 준수사항 등 분야

2. 주요 환경변화 선정 및 특성 파악

- 국제교역 자유화, 기후변화 등 주요 환경변화에 의한 식품안전분야 환경 변화 특성 파악
 - － 식품위해사고, 식중독 발생, 국민의 불안감 등 증가

3.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범주화

- 기후변화, 식중독 관리 등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화 선정

4. 영업자 준수사항 등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취약성 평가

- 영세업체 위생수준 평가 및 향상을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근거 법령 제개정 사항 마련

5. 국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목표 키워드 선정

- 지속가능성, 과학, 예방, 소통 등 키워드 도출 및 선정

6. 국가 전략목표별 추진전략 키워드 선정

- 전략목표별 거버넌스, 규제, 방식 등 키워드 도출 및 선정

7. 추진전략별 세부실천분야 설정

- 각 전략목표별 식중독, 식품이물, 수입식품, 단체급식 등 세부실천분야 및 과제 설정
-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지자체 평가, 세부실천분야 및 과제 선정

8. 향후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영세업체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 제고 방안
- 향후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제4절 연구방법

1. 기존 문헌 및 자료 고찰, 분석

- 국내외 관련 자료 분석

2. 전문가 인식 조사

- 전문가, 업체, 소비자, 공무원 등의 KAP 조사
 - － 영업자 준수사항 개정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실시
 - － 향후 식품안전관리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단계별 키워드 선정을 위한 관련자 인식조사
- 영업자 준수사항 제개정 방안 도출을 위한 각 대상별 Focus Group 조사
 - － 식품제조가공업체, 전문가 등 대상

〈표 1-1〉 전문가 인식조사 개요

조사 구분		조사규모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내용
전략수립	전문가	50명	온라인 웹조사	2011.07.08 ~07.19 (12일간)	향후 식품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등
	공무원	30명	온라인 웹조사 및 우편조사 병행	2011.07.08 ~07.19 (12일간)	상동
영업자 준수사항	전문가	50명	우편조사	2011.07.08 ~07.19 (12일간)	현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개선안
	공무원	30명	상동	2011.07.08 ~07.19 (12일간)	상동

3. 정책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업체 현장조사시 현지회의 등 개최

4. 외국의 현황 조사

-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의 식품안전관리 현황 및 전략 조사

제5절 분석방법

1.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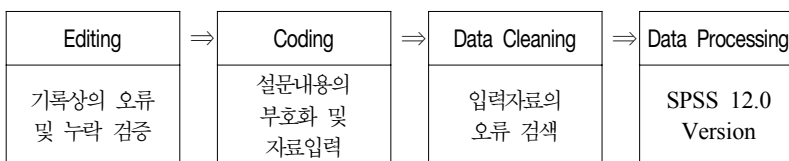
수집된 설문지는 Coding, 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SPSS 12.0 Version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의 집계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분석시 필요에 따라 기본 변수별(업종, 업태, 종류, 조사대상자별 등)과 문항과 문항간의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자료 처리

평가된 자료는 [그림 1-1]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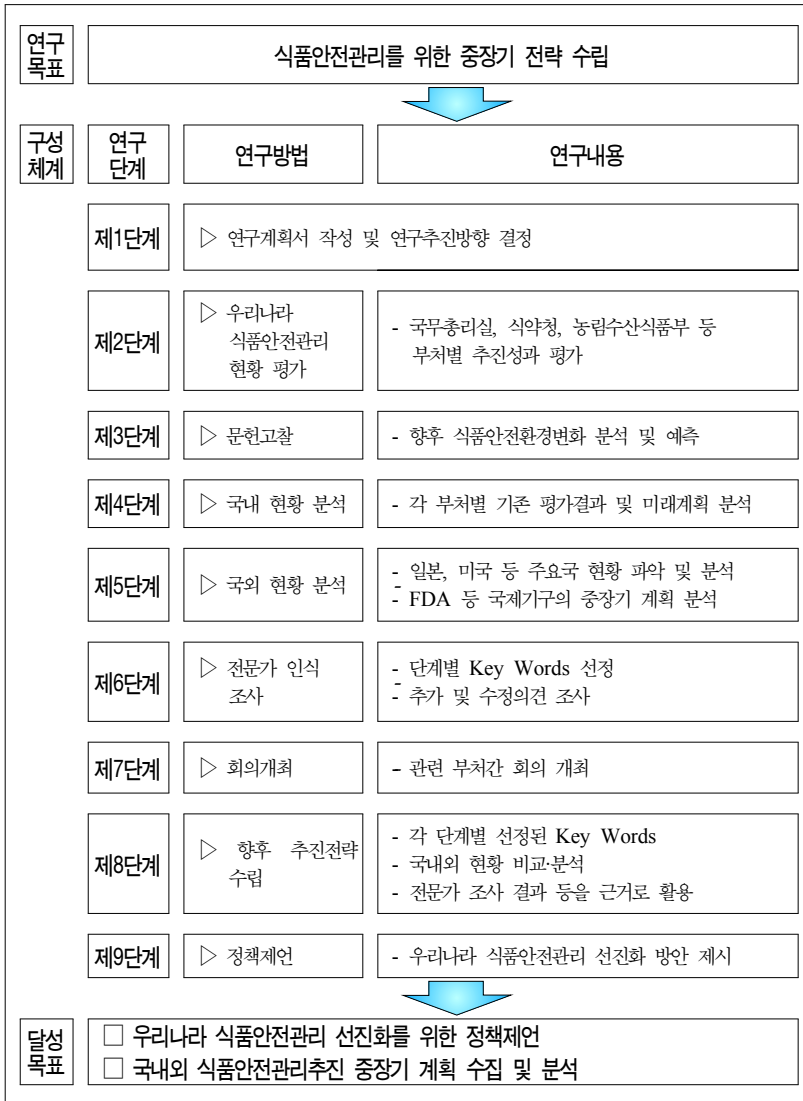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제6절 연구수행 체계

이 연구의 수행 체계는 [그림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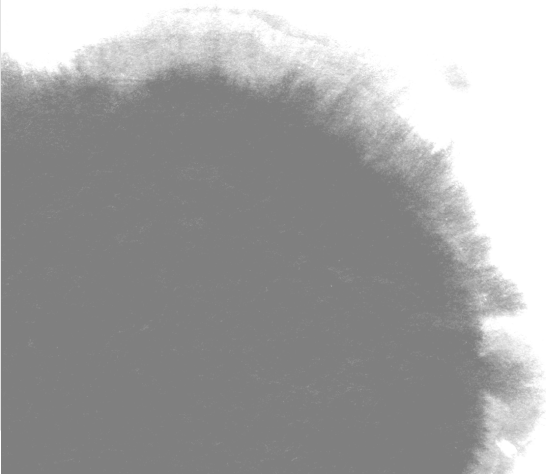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수행 체계





02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제2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제1절 식품사고 유형 변화

산업발달에 따른 잔류농약, 항생제, 다이옥신 등 환경유래오염물질과 아크릴아미이드, 벤조피렌 등 식품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등 신종유해물질의 출현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식품가공시 첨가되는 아질산염, 착색제 등의 식품첨가물의 적정 섭취도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 활성화에 따른 장기저장·수송에 기인하는 곰팡이독소와 같은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 및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등 신기술 출현에 따른 불안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식품성분, 식품첨가물, 식품오염물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규격이 강화됨으로써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표 2-1>에는 2000년대 국내에서 발생한 식품사고의 현황을 식품위해물질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식품사고의 유형은 원재료의 품질, 인위적 조작에 의한 식품안전사고에서 최근에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유래 또는 제도가공 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유해물질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병원성 미생물과 이물은 식품안전 관리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식품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위험은 최근까지도 선진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갖춘 외국에서도 식품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변종들의 발생으로 인해 지속적인 연구와 예방이 필요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한 예로서 2011년 5월부터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를 공포에 몰아넣은 감염세균인 EHEC O104:H4는 *E. Coli* 세균의 두가지 유형이 근원으로 밝혀졌다. 독일연방위해평가연구소의 DNA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사유발균인 EA_ggEC(Enteraggregative 대장균)와 93%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독일 뮌스터대학의 헬게 카르호 교수팀에 따르면 장출혈성 대장균(EHEC)과 장응집성 대장균(EAEA)이 유전적으로 혼합된 형태라고 발표되었다. 1987년 발견된 EA_ggEC는 설사를 유발하는 *E. Coli*의 새로운 세균그룹으로 감염으로 인한 발병은 지금까지 주로 단체식사와 연관성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으며, 물건이나 식품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 독일연방위해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원인식품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새싹 채소씨앗이고, 사람이 식품과 환경의 오염을 야기한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표 2-1〉 식품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 현황²⁾

(단위: 건, %)

연도	계	자연발생	환경유래	제조·가공과정	식품첨가물	기타
계	77(100.0)	23(29.9)	11(14.3)	9(11.7)	7(9.1)	27(35.1)
2000년 이전	17	5	4	3	2	3
2000년	8	1	3	1	-	3
2001년	3	1	1	-	-	2
2002년	7	3	-	1	1	2
2003년	3	2	-	-	-	1
2004년	6	2	-	-	2	2
2005년	6	2	-	1	1	2
2006년	2	1	-	-	1	-
2007년	6	2	1	1	-	2
2008년	7	1	2	-	-	4
2009년	6	3	1	-	-	2
2010년	6	2	-	-	-	4

- 주: 1) 자연발생: 유해 미생물, AI 등
 2) 환경유래: 잔류농약, 항생제, 다이옥신 등의 환경성 오염물질
 3) 제조·가공 과정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아크릴아마이드, 니트로즈아민 등
 4) 식품첨가물: 표백제, 착색료 등
 5) 기타: 유전자재조합식품, 멜라민, 광우병, 이물, 유통기한 허위표시 포함

<표 2-2>에는 정부의 개별 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예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식품사고와 이에 대한 정부대응조치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수입식품 및 신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고, 정부의 대응조치는 2009년 취해진 주요 조치를 보면 우선 분유에서 검출된 사카자키 균에 대한 대응조치로 고시 제2007-31호를 개정하여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중국산 멜라민 분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였으며, 황색포도상구균 관리를 강화하여 균의 정량규격을 신설하고, 정량시험법을 개정하는 등 대부분 기준·규격의 제·개정 또는 시험법의 신설 등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기혜 외, 해외 식품안전 관리실태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검토, 2009.

〈표 2-2〉 식품사고와 정부대응조치(2008~2009)

연도	번호	사고내용	대응조치
2010	1	동원F&B 동원참치회, 기준치 초과 대장균과 세균 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전량 회수 - 위탁생산업체의 제조공정 점검 - 고시 제2010-11호(2010.03.03) 기구 및 용가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준 신설, 용도별 규격 신설 · 기구 및 용가포장재 제조시 사용되는 - 원료물질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2	금속이물 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카칩 오리지널 - 켈로그 콘푸로스트 금속체인망 이물 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켈로그 스페셜K 플라스틱 이물 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켈로그 오크으로 만든 첵스초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전량 회수, 제조공정개산등 행정처분
2009	1	프랑스 분유 중 사카자키균 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 고시 제2007-31호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강화 -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불검출” 규격 및 시험법 신설
	2	중국 멜라민 분유 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 고시 제2009-7호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 신설
	3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도넛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 고시 제2008-51호(2008.08.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중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규격 신설(사전조치 해당가능) - 식약청 고시 제2008-15호(2008.03.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중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 신설(사전조치 해당) 및 황색포도상구균 정량시험법 개정

〈표 2-2〉 식품사고와 정부대응조치(2008~2009)(계속)

연도	번호	사고내용	대응조치
2008	1	미국산 쇠고기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 고시: 식품의 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08.08.29)(고시 제2008-63호)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마련) - 식약청 고시 제2007-84호(2007.12.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중 한우확인 시험법 신설(사전조치 해당가능)
	2	다이옥신 사건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2007-68호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다이옥신 기준 신설 및 시험법 - 식약청 고시 제2007-71호(2007.10.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 고시 중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규격(식육 중 다이옥신 허용기준) - 식약청 고시 제2007-10호(2007.02.27) 식품등 중 기준규격 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제정(다이옥신류 외 5종)
	3	중국산 수입과자 등에서 멜라민 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2009-7호 식육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 신설 - 식약청 고시 제2008-65호(2008.10.04) 판매금지식품판매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4	페루산 바닷장어에서 살충농약성분인 카보푸란 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고시 제2009-24호(2009.05.07) 식품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 식약청 고시 제2008-70호(2008.11.07) 식품의 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개정 - 식약청 고시제2002-66호(2002.12.0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고시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5	GMO 옥수수 수입으로 찬반 논란 쟁점화 동원홈푸드 미숫가루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 표시 의무화 확인 : GMO-Free 정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에 3년간 유예기간 허용 - 식약청고시 2009-24호(2009.05.0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중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시험법 신설 및 개정

제2절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

국제기구인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³⁾의 정의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기간(수십년 또는 그 이상)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동을 뜻하고, UNFCCC⁴⁾의 정의에 따르면, 전지구 대기의 조상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 사용하면 금세기말까지 지구 평균기온 최대 6.4℃, 해수면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한 평균기온은 20세기 동안 약 1.5℃ 상승하였고, 지난 100년간 서울의 겨울철 평균기온 1.87℃로 평년(영하 0.87℃)보다 2.74℃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은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가뭄, 홍수, 폭염, 산불, 산사태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이는 농림어업 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기후 온난화 및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 분야 외에 여러 분야의 대응책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식품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식량수급의 불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질병매개체 질환인 말라리아 또는 기온상승과 비례하는 쯔쯔가무시증, 유행성 출혈열 등의 발생 확대

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프로그램(UNEP)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90년, 1996년, 2001년, 및 2007년 총 4차례에 걸쳐 기후변화 관련 과학, 기술, 사회, 경제 분야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4)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가 관찰되고 있다.

IPCC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분야별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관계 부처들이 참여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는 <표 2-3>과 같이 정책관리 및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표 2-3〉 기후변화 관련 국내 정책관리 및 대응 체계

관리부처	하부조직	정책관리 및 대응체계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등	- 범지구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정부부처간 조직임.
환경부	환경전략실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 - 기후변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수립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부	-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등의 측정 및 조사 연구
	지구환경연구소	-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저감 방안 연구 -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동향의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 국토해양 부문 기후변화 대응 국제업무에 관한사항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 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 - 지구 및 기후변화협약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 농업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 및 조정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 기후변화 관련 국민건강대책 수립 및 조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지원실 (기후변화 에너지정책관)	- 에너지이용합리화 방안 -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관리 등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 기후변화를 연구 교육하고 멸종위기 생물종을 보존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생태원의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

〈표 2-3〉 기후변화 관련 국내 정책관리 및 대응 체계(계속)

관리부처	하부조직	정책관리 및 대응체계
기상청	기후국 (기후정보화국) - 기후정책과 - 정보화기획과 - 기후예측과 - 정보화기술 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기후변화협약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 -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과학분야 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대책 수립 - 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감시계획(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감시 국제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측망 조정 -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관한 전망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기후변화에 대한 과거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발표 -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에 관한 기법 개발 및 개선 -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평가를 위한 자료 생산 및 지원 -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국립기상연구소	기후국 (기후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동성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 기후예측 모델 및 기후변화예측 모델의 개발에 관한 연구 -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산림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협약 분석·대응 총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 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식품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대책 마련
질병관리본부	세부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질병발생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 등 추진

자료: 김정선 외, 국제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대책 추진방안, 2008.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추진되어 왔으나, 초기에는 이산화탄소 저감화 및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반면 2007년 이후부터는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와 식품수급 등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CCSP(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m / SAP), CCTP(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m),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등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기후변화 준비 및 대처원칙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총리내각에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종합적인 대응 전력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염병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온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기생충이나 설사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식량수급에 중점을 두고 식량안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식량공급 확보대책 및 물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니카타, 도쿄 및 오사카 등 모델지역의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른 주요 식중독 병원체로는 *Salmonella spp.*, *E. coli O157:H7*, *Campylobacter spp.*, *Vibrio spp.*가 주목되며,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식품 원재료로부터 이들 미생물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독일은 German Climate Protection Programme(2005), 영국은 APF(Adaptation Policy Framework) / UKCIP(UK Climate Impacts Programme) / UKCCP(UK Climate Change Programme), 프랑스는 Plan Climate(2004)/GICC, 핀란드는 National Climate Strategy(2001) / FinADPT 등 국가별 적응계획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나,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식약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사업단을 운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0년에 걸쳐 지구의 평균온도가 1.5℃ 상승한 반면 향후는 30~50년이 소요될 것임을 예측 기후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환경변화의 요소로서 식품안전분야에서는 온도, 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식중독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표 2-4>와 같이 '50년에 '07년 대비 평균기온이 1.2℃ 상승하면 식중독 발생률은 약 6.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확산되어 food chain의 위협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후온난화 속도 완화와 함께 국민의 선제적인 적응방안 도출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표 2-4> 기후온난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전망

(단위: ℃, 건, 명)

연도	평균 기온	식중독 발생 증가비	식중독 발생건수	식중독 발생자수
2003-2007 평균	13.6℃	-	236.0	8,905
2020	14.8℃	6.3	250.9	12,052.4
2050	16.6℃	15.8	273.8	13,300.5
2080	18.6℃	26.4	29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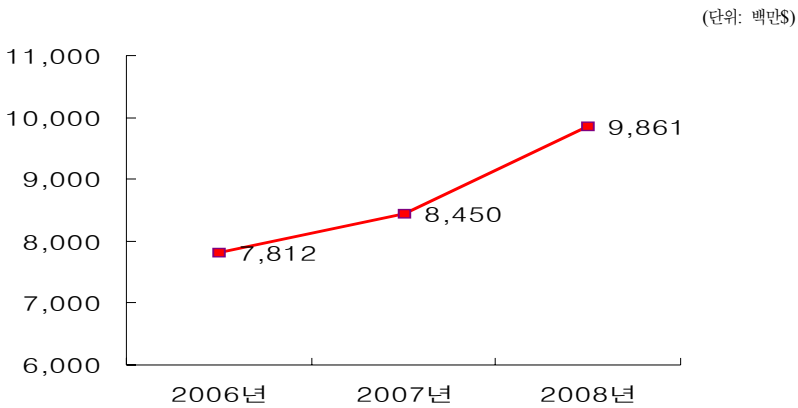
자료: 김정선의, 국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대책 추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제3절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

1. WTO(세계무역기구)의 영향

낮은 수준의 식량 자급률(2005년에 29.2%)⁵⁾과 국산 식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식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FTA의 확대에 따라 수입 식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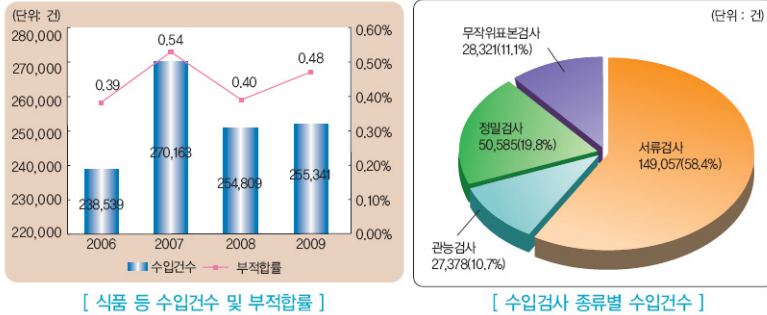
[그림 2-1] 식품수입액 현황



WTO출범과 함께 국제교역이 완전 개방화 및 자유화되어 더 이상의 보호무역적인 통상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무역의 자유화로 우리나라는 식품안전분야의 확대된 영역에 대해 시급히 대처하고, SPS협정에 의거 수입산에 적용하는 식품안전규제인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에 차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도 정밀검사비용을 타 검사에 비해 무작정 상향조정할 수 없어 무작위표본 검사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5) 우리나라 식량자급률(물량자급률기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31.1%(’01) → 27.8%(’03) → 29.2%(’05)임.

[그림 2-2]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관련 현황



자료: 식약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11.

무역의 활성화로 인해 식품유해물질의 국가간 이동도 그 속도와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식품안전사고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식품수입국인 우리나라도 수입식품의존도가 증가하여 <표 2-5>와 같이 2009년말 기준으로 총 124개국에서 수입이 되고, 이 중 상위 5개 국가들의 수입건수로는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이며, 이들의 수입점유율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2009년 주요 상위 10개국 국가별 수입실적 현황

(단위: 건, kg, USD)

순위	국가	건수	국가	중량	국가	금액
계	-	255,341	-	11,301,537,120	-	8,434,080,763
1	중국	73,770	미국	2,944,365,661	중국	1,863,791,209
2	일본	40,467	호주	2,184,529,646	미국	1,797,143,531
3	미국	38,825	중국	2,158,291,477	호주	767,395,187
4	프랑스	10,800	브라질	852,774,397	브라질	449,096,889
5	이탈리아	8,426	헝가리	393,174,762	일본	396,626,281
6	독일	7,160	필리핀	346,832,787	필리핀	239,857,452
7	태국	6,787	베트남	294,824,709	베트남	221,442,525
8	베트남	6,242	과테말라	265,404,734	영국	197,715,796
9	영국	4,790	태국	258,791,179	태국	187,356,081
10	호주	4,481	캐나다	253,095,688	말레이시아	177,936,480

자료: 식약청, 『2009년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2010.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산 위해식품의 유입으로 인해 관리와 통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국내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입식품에 의한 사고는 동종의 국내식품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관리체계, 검사체계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수입물량의 1/3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물류비용이 저렴한 것 등 여러 이유로 수입을 피할 수 없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제고 방안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다.

이에 식약청은 수입 OEM 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관리강화를 위해 2009년 수입 OEM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품질검사 및 현지 위생점검을 의무화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수준 현지점검 강화(11개국) 및 수산물 주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하였다. 또한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였다.

2. 식중독

식중독 발생통계는 국가의 식품위생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국제적 지표 중의 하나로,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중독 발생 환자수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2010년 십만명당 식중독 발생환자수가 한국은 14.6명, 일본은 17.4명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08년 미국의 11.9명과 EU의 9.4명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개인위생수준이 향상되면서 1960년대 이후 식중독 발생률은 감소하다가 1990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률은 미국, 일본 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 국가별 식중독 발생현황

(단위: 건, 명)

연도	구분	발생건수	환자수	십만명당 발생환자수
'10	한국	271	7,218	14.6
	일본	1,254	25,972	17.4
'09	한국	228	5,999	12.3
	일본	1,048	20,249	15.9
'08	한국	354	7,487	15.5
	일본	1,369	24,303	19.0
	미국	1,034	23,152	11.9
	EU	5,332	45,622	9.4
'07	한국	510	9,686	20.5
	일본	1,289	33,477	26.3
	대만	240	3,223	14.8
	미국	1,097	21,244	-
	EU	5,609	-	-
'06	한국	259	10,833	22.4
	일본	1,491	39,026	30.5
	대만	265	4,401	19.1
	미국	1,270	27,634	8.6
	EU	5,705	53,546	11.3
'05	한국	109	5,711	11.9
	일본	1,545	27,019	21.2
	대만	247	3,530	15.4
	미국	928	20,179	6.8
	EU	5,311	47,251	10.5

자료: <http://www.kfda.go.kr/fm/index.do> 식약청, 2011.
 Surveillance for Foodborne Disease Outbreaks, United States, 2007-2008.
 EFSA, The Community Summary Report on Trends and Sources of Zoonoses, Zoonotic Agents,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Foodborne Outbreaks in the European Union in 2005, 2006, 2007, 2008.

<표 2-7>에는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연합의 식중독 원인균별 발생 건수와 환자수가 비교되어 제시되어있다.

한국에서는 E. Coli와 Norovirus, 일본에서는 Salmonella와 Campylobacter, 미국에서는 Calicivirus, Salmonella 및 Clostridium perfringens, 유럽연합에서는 Salmonella, Food borne virus로 인한 식중독이 다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식습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가별 다소비 식품별 식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에 편차가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2-7〉 국가별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현황

(단위: 발생건수, 환자 수)

구분(기준년도)		한국(2010)	일본(2010)	미국(2008)	EU(2006)
Total		271(7,218)	1,254(25,972)	1,270(27,634)	5,705(53,546)
Bacterial	<i>Salmonella</i>	27(677)	73(2,476)	117(3,296)	3,131(22,705)
	<i>Staphylococcus enterotoxin</i>	19(372)	33(836)	29(428)	236(2,057)
	<i>Vibrio parahaemolyticus</i>	18(223)	36(579)	8(322)	-
	<i>Bacillus cereus</i>	14(401)	15(155)	13(72)	78(964)
	<i>Clostridium perfringens</i>	5(171)	24(1,151)	34(1,880)	-
	<i>Escherichia coli</i> , <i>Shigatoxin-producing(STEC)</i>	28(1,926)	27(358)	29(592)	48(750)
	<i>Campylobacter</i>	15(380)	361(2,092)	25(301)	400(1,304)
	<i>Shigella</i>	-	1(2)	10(185)	33(138)
	<i>Listeria</i>	-	-	4(10)	9(120)
	<i>Clostridium botulinum</i>	-	1(1)	4(13)	81(1,651)
	<i>Brucella spp.</i>	-	-	1(5)	6(43)
	<i>Escherichia coli</i> , <i>Enterotoxigenic</i>	-	8(1,048)	1(2)	-
	<i>Yersinia</i>	-	-	-	26(604)
	<i>Giardia</i>	-	-	-	18(44)
	<i>Trichinella</i>	-	-	-	18(202)
	<i>Cryptosporidium</i>	-	-	-	7(59)
	<i>Klebsiella</i>	-	-	-	3(109)
<i>Streptococcus</i>	-	-	-	2(236)	
Other bacteria	-	1(21)	20(135)	9(31)	
Chemical	Scombroid toxin/Histamine	-	-	32(113)	71(370)
	Ciguatoxin	-	-	10(45)	-
	Mushroom toxins	-	-	4(16)	-
	Cleaning agents	-	-	2(4)	-
	Neurotoxic shellfish poison	-	-	2(15)	-
	Monosodium glutamate (MSG)	-	-	1(2)	-
	Plant toxins (herbal toxins)	-	-	1(15)	-
	Puffer fish tetrodotoxin	-	-	1(2)	-
	Other chemicals	1(3)	9(55)	13(55)	-
Viral	Norovirus	31(1,994)	399(13,904)	-	-
	Calicivirus	-	-	505(14,753)	-
	Hepatitis A	-	-	5(50)	-
	<i>Flavivirus</i>	-	-	-	6(26)
	Food borne virus	-	-	-	587(13,345)
Other viruses	2(8)	4(796)	1(52)	-	
Parasitic	-	-	12(147)	-	
Natural toxins	6(33)	139(390)	-	86(834)	
Unknown etiology	105(1,030)	123(2,108)	363(4,330)	952(9,437)	

자료: 식약청 식중독 통계시스템(<http://e-stat.kfda.go.kr/>) 재구성.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Surveillance for Foodborne Disease Outbreaks, United States, 2008.

EFSA, The Community Summary Report on Trends and Sources of Zoonoses, Zoonotic Agents,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Foodborne Outbreaks in the European Union in 2006.

최근 소비자의 식생활 행태의 변화와 외식 증가로 인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기회가 증대하였고 학교 및 기업체 등에서 집단급식이 확대되면서 식중독의 위험은 집단화되었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2006년 대형 학교식중독 사고 직후 예방 활동 강화로 일시적으로 집단급식소 환자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환자수 중 집단급식소 환자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46.8%, 2008년 48.3%, 2009년 57.3%, 2010년 58.5%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의 경우도 건당 환자수가 2007년 54.5명, 2008년 76.5명, 2009년 69.6명, 2010년 83.6으로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식품매개질환으로 인한 식중독 신고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식약청,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체 및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4절 신소재 식품 및 신기술 출현

식품산업분야에 신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식품과 식품에 적용되는 과학들에 관한 소비자들은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어 쉽게 보편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 대표적인 경우가 GMO, 방사선조사식품, 식품가공과 보관에 나노기술 등의 신식품의 등장으로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1. GMO

전 세계적으로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GMO식품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고, <표 2-8>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특히, 옥수수, 알팔파 등의 안전성 심사승인 이 증가하고 있다.

〈표 2-8〉 연도별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승인 현황(2006~2009)

(단위: 건)

구분	총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59	36	12	4	2	5
콩	3	1	-	-	-	2
옥수수	31	17	6	3	2	3
면화	13	8	5	-	-	-
카놀라	6	6	-	-	-	-
감자	4	4	-	-	-	-
사탕무	1	-	1	-	-	-
알팔파	1	-	-	1	-	-

자료: 2010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2호.

식품안전 측면에서 GMO에 대한 허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으로 유럽연합은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GMO식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세계 재배면적은 1996년 170만ha에서 2008년 1억2,500만ha로 약 74배 증가하였고, 주요 작물별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표 2-9>와 같이 콩이 가장 많고, 옥수수, 목화, 카놀라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연도별 유전자재조합작물의 재배

(단위: 백만ha)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39.9	44.2	52.6	58.7	67.7	81.0	90.0	102.0	114.3	125.0	134.0
콩	21.6	25.8	33.3	36.5	41.4	48.4	54.4	58.6	58.6	65.8	69.2
옥수수	10.1	10.3	9.8	12.4	15.5	19.3	21.2	25.2	35.2	37.3	41.7
면화	3.7	5.3	6.8	6.8	7.2	9.0	9.8	13.4	15.0	15.5	16.1
카놀라	3.4	2.8	2.7	3.0	3.6	4.3	4.6	4.8	5.5	5.9	6.4

주 :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1.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LM작물 재배현황(<http://www.biosafety.or.kr>)

2. 원자료는 ISAAA(2009)임.

3. ISAAA는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임.

미국과 같이 GMO식품의 주요 생산국가들은 GM식품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를 함으로서 부정적인 점을 암시하게 된다고 반대해온 반면에 유럽연합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MO표시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등이다. 즉, 안전성과 불안전성 여부는 여전히 입증되지 않고 있어 각국은 표시제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 식품산업총국(Directorate-General III-Industry)에서 GMO를 관리하며, 1990년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모든 생물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전제로 2개의 지침(Council Directive 90/219/EEC, 90/220/EEC) 발표, 전문 24개 조항으로 Biosafety Protocol을 제정하여 비교적 엄격히 규제를 시작하였고, 1997년 5월부터 ‘신규 식품 및 신규 식품 성분에 관한 규칙(Regulation (EC) No. 258/97)’을 제정하여 GMO의 labelling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EU 규칙(EC) No. 1139/98를 공포하여 1998년 5월 신규 식품 성분에 대한 표시를 아래와 같이 강제화하여 1998년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1)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라고 하더라도 DNA나 새로운 단백질이 가공과정에서 파괴된 경우에는 표시의 의무가 없다.
- 2)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는 “유전자재조합대두로 제조됨”이라는 문구를 원재료명 뒤에 표기하도록 하였고, 원재료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의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GM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정 1829/2003에 근거하여 GMO를 포함하고 있거나 GMO로부터 생산된 식품과 사료의 시장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 1) 시장에 유통되는 GMO나 GM 식품과 사료는 표시와 이력 추적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2) 규정 641/2004와 함께 GM 식품과 사료의 승인 신청에 대한 상세한 규칙과 규정 실시 이전에 기존 제품에 대한 신고절차, 위해 평가 결과는 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GM물질이 비의도적이거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혼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이 외에 GMO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정 1946/2003에 따라 유럽 연합회원국과 제3국과의 의도적·비의도적 GMO의 이동에 대한 규제, 역내에서의 의도적인 이동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1992년도 안전성심사 지침 마련 후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기술개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GMO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나 비정부단체 등에서 잠재적 위해성 문제가 되고 있다.

GMO 관련 담당기관으로 FDA(식품의약품청)는 GMO 농작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APHIS(USDA 농무부산하 동식물검역청)는 GMO농작물 제배에 대한 안전성을 관리하며, EPA(환경청)는 GMO 농작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GMO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이 마련되어 입안 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46호, 99년8월)되어 2001년 7월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사전에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는 영양성, 독성, 알레르기성 등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받도록 시행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이 2005년 2월 1일자로 고시(식약청 고시 제2005-3호)되었다.

2. 방사선조사식품

1990년도 초 방사선을 이용하는 산업화 기술이 개발되고 1980년대를 기점으로 조사기술은 식중독 예방, 식품의 국제교역, 특수식품 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연구되었다. 특히 세계식량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유엔 산하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 기술의 가치와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미국 FDA 등 각국의 보건당국들에서도 이 조사기술의 이용을 권장하는 추세이다.

방사선조사의 장점은 식품의 관능적 특성을 유지시키면서 부패 및 식품유해 병원성 미생물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식품자체의 온도를 높이지 않고 위해한 잔류물질을 남기지 않으면서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나, 이러한 기술의 남용과 오용을 우려하고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적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유고슬라비아, 캐나다, 한국, 크로아치엔, 쿠바,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타이완, 태국, 체코, 헝가리, 우크라이나, 우르과이, 미국, 베트남에서 허가하고 있으나, 유럽공동체내에서는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는 규정이 없어 허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며, 그리스에서는 규정은 없으나 허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83년 독일연방보건부에서는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나, 1997년 3월 10일 제정된 독일 식품법 47a조항에 따라서 유럽공동체내의 무역을 원활히 하고자는 목적으로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은 독일로의 수입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며, 2000년 식품방사선

조사규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말린 허브나 향신료들에 대한 방사선조사를 독일에서도 허용하였다. 단, 이 때 방사선 조사된 소재가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은 약 200,000톤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네덜란드나 프랑스의 경우 각각 약 20,000톤, 벨기에에는 약 10,000톤으로 예상된다. 대상 식품으로는 향신료, 건조채소나 살모넬라 퇴치를 목적으로 냉동새우, 닭고기 외에도 곡류, 감자, 양파, 딸기 등에도 시행되고 있다.

방사선조사에 WHO와 Codex Alimentarius의 의견을 살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 1)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건강에 위해하지 않으며 후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 2) 방사선조사법은 위해물질이 없는 식품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처리되는 식품들을 줄이는 하나의 처리방법이다.
- 3) 식재료로서 신선한 조류육 또는 방사선조사된 냉동조류육을 사용하도록 권장
- 4) 식품안전을 위해 방사선조사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16일 감자, 양파, 마늘 등에 방사선조사를 승인하기 시작하여 2004년 5월 24일 달걀가루, 곡류 또는 콩류 및 그 분말, 해초류 등에 미생물의 발육억제를 위해 방사선살균을 승인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조사식품은 <표 2-10>과 같이 국가별 기준에 준하여 식품포장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0〉 주요국의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 비교⁶⁾

구분	한국	미국	EU, CODEX	일본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표시	표시	표시	원칙적으로 방사선 조사 금지 - 감자에만 허용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표시 (*10.1.1)	표시 없음	표시	

3. 나노기술

나노산업이 고부가 지식산업으로서 식품,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의 산업에 적용이 증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과학위원회에서는 식품과 사료 분야에서 이러한 나노기술의 적용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나노기술 식품관련 제외국의 연구, 관리 동향을 소비자정보로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나노물질 독성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범위를 확대하여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사업지원으로 신기술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제5절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식품 인증 등 제도 강화

1. 인증제 총괄 현황

<표 2-11>에는 식품안전 관련부처별 수행되고 있는 식품안전분야의 주요 품질 인증 현황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되어 있다.

6) 정기혜 외, 해외 식품안전 관리실태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검토, 2009.

잔류농약, 중금속 및 유해미생물 등을 사전에 중점관리 하는 GAP(농산물우수관리, '06)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확대 시행하여 '농어장에서 식탁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2-11〉 식품안전분야 안전 및 품질 인증 현황

구분		인증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반식품 (가공식품 포함)	HACCP
		건강기능식품	GMP
		우수수입업소	GIP
		중소업체 대상 우수위생관리기준	GHP
농림수산물부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가공식품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 KS 인증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인증 (단,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 제2007-69, 제3조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09.12.31까지 효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인증
			GAP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축산가공품 포함)	HACCP
			친환경 축산물 인증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물	HACCP
			수산물 품질인증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친환경 수산물 인증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9.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GAP인증실적은 '09년 28,562농가에서 '10년 34,421농가로 전체 농산물 대비 3.9%를 차지하였고, 가공 축산물 HACCP 현황은 '09년 2,529개소로 생산량 대비 60%에서 '10년 3,831개소로 생산량 대비 75.8%를 달성하였다. 또한 수산물 HACCP 현황은 '09년 147개소에서 '10년 177개소로 전체 양식장의 약 6.6%에 달한다.

2. HACCP 현황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정의된다.

<표 2-12>에는 각 국가별 HACCP 적용 현황이 비교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신설 도입되어, 해마다 적용업체 수와 품목수가 단계별 확대되고 있다.

〈표 2-12〉 세계 각국의 HACCP 적용 현황

구분	한국	유럽연합	미국	일본
관리부처	식약청 농식품부	EU Council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기관	FDA USDA/FSIS	후생노동성
관리업체수	5.2%('10)	모든 제조업소에 적용하도록 권장('06)	7.4%('05)	4.1%('08)
대상품목	의무적용 식품유형 6종 외 자율 적용	모든 식품	의무적용 대상 외에 자율 적용	유·유제품 식육제품, 레토르트파우치식품, 어육연제품, 청량음료수
방식	의무 / 자율	의무 권유	의무 / 자율	의무

자료: 식품안전 종합대책, 관계장관 회의자료, 2008.7.11 및 식약청 내부자료, 2010.

<표 2-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5년 제도도입 이래 HACCP 적용은 ①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③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 식품 ⑦ 배추김치('08.4) 등의 의무적용 대상품목의 연매출액 기준의 단계별 의무적용 외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자율적인 권장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까지 총 726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10년말까지 식품제조가공업 1,127개소, 집단급식소 26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1,153개소가 지정되었다⁷⁾.

〈표 2-13〉 연도별 HACCP 지정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연도별 지정계	연도별 누적계
합계	692	34	726	726
1999	5	0	5	5
2000	2	4	6	11
2001	3	2	5	16
2002	17	5	22	38
2003	23	8	31	69
2004	21	5	26	95
2005	38	4	42	135
2006	68	6	74	209
2007	115	4	119	328
2008	144	1	145	473
2009	262	0	262	726

주: 2009년까지의 지정업소 현황임.
자료: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9 및 2010 .

2006년부터는 6개 품목(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을 대상으로 의무적용을 시작하여 현재는 식품위

7) 국무총리실, 식품인증제 운영분야 점검 참고자료, 2011.6.17.

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김치류 중 배추김치 제조·가공업 소를 포함시켜 총 7개품목류로 확대되었다.

HACCP 의무적용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만 해당한다(식약청, 2009). 식품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에서 2012년에는 HACCP 적용률을 전체의 20% 수준인 약 2,000여개 업소에 적용키로 목표를 잡고 있다.

2010년 현재는 1,153업소를 인증해주고 있으며,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체가 참여토록 중소기업체 HACCP 모델 개발·보급, 식품진흥기금 활용 등의 재정 지원, 컨설팅 강화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11년 6월 11일부터 기존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 한하여 적용하던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접객업, 식품소분업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HACCP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HACCP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HACCP 지도관·검사담당자 교육·훈련 확대하고, 신규 HACCP 지도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 지명된 HACCP 지도관의 지정평가업무 눈높이 일치 등을 위한 이론 및 현장평가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2009년부터 연 5회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 HACCP 적용작업장 검사담당자에게는 미생물 실습 교육을 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간인 대상 HACCP 전문교육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HACCP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HACCP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2009년부터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해분석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과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교류 실무자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3. GMP 현황

식약청은 안전한 기능성식품 생산관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0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총 148개소를 달성하였고, 업체와의 간담회, 실무회의 및 현장 기술지원을 통하여 중·소규모업체에 GMP적용 컨설팅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GMP 지도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4>와 <표 2-15>에는 각국의 GMP 적용 현황과 관련 법령이 제시되어 있다.

<표 2-14> 세계 각국의 GMP 적용 현황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관리부처	식약청	FDA	Health Canada	후생노동성
대상품목	건강식품	영양보조제 기능성 식품	NHP:민간치료제, 동종요법 치료약, 비타민 및 무기질, 허브치료약, 생균제, 아미노산, 식품분리성분, 지방산	- 정제, 캡슐 등 - 천연 추출물로 분획, 정제, 화학적 반응물, 화학적 합성품 원재료의 정제, 캡슐, 액상 등
방식	의무	의무	의무	자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9.

<표 2-15> 세계 각국의 GMP 관련 법령

국가	GMP 관련 법령
한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9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식약청 고시 제2004-7호, '04.1.31)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CFR Part 111- 식이보조제와 원료 및 성분의 제조, 포장, 저장에 대한 적정제조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in manufacturing, packaging, or holding dietary ingredients and dietary supplements)
캐나다	자연건강제품규정(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 우수제조기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호주	호주의 우수제조기준 규정집 (The Australian Cod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일본	보건기능식품 적정제조규범
중국	보건식품 양호생산규범

4. 우수위생관리기준(GHP, Good Hygienic Practices)현황

GHP 제도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HACCP 적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개발된 위생적 관리프로그램(위생조건, 원료선택, 위해요소 관리수칙 등)으로 '08.4.30일에 도입되어 현재까지는 뚜렷한 실적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

특히,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GHP의 역할은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관리체계에 있어 생산단계관리가 GAP의 핵심사항인 반면에 처리가공단계는 우수제조관리(GMP)가 핵심이며, 유통단계에서는 우수위생관리(GHP)가 중심이다.

- 생산단계: 우수농산물인증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처리가공단계: 우수제조관리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유통·판매단계: 우수위생관리 (GHP, Good Hygienic Practices)

향후 식품안전 규제의 선진화와 합리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준부터 단계별 수준 개선이 필요한 인증제도이다.

5. 유기 인증 현황

농식품부는 인증제의 단계적 통폐합과 인증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유사 제도를 통폐합하여 현재 18종의 인증제를 '11년까지 11종, '13년까지 8종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유기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을 통합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인증제별 다양한 로고 사용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 농식품 인증 통합로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표지형태는 단일화하되, 인증목적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인증별 특성을 반영하고,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고 정부는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 보완, 인증기관 지정, 민간 인증기관 관리

감독 기능에 집중하도록 추진 중이다.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 중인 인증업무는 '13년까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HACCP, GMP, 유기가공식품 등의 식품안전 관련 인증제도가 도입·확대되면서 생산자 및 제조자의 안전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고 자율적인 책임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GAP 농산물 비중이 총 생산량의 약 4%에 불과해 아직 EU(70~80%) 등에 비해 저조하고, HACCP 제품이 전체 가공축산물의 75.8%를 차지하지만, 『농장→도축·가공→판매』 중 농장·판매단계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단계의 예방적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으로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제6절 인구구조 및 식이섭취 변화

과거 수십년간 미국 등의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비만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우리나라도 <표 2-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마다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는 등 비만은 전 세계적인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2-16〉 연도별 비만 유병률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98	'01	'05	'07	'08	'09
전체	26.0	29.2	31.3	31.7	30.7	31.3
남자	25.1	31.8	34.7	36.2	35.3	35.8
여자	26.2	27.4	27.3	26.3	25.2	26.0

주: 비만유병률,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분율, 만 19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급격한 비만 유병율의 상승 원인으로 과거에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 혹은 생활습관 등의 개인적 요인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만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개인적 요인 중에는 <표 2-17>에 제시된 바처럼 식품섭취 패턴의 변화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식품섭취패턴을 살펴보면, 지방, 당분, 염분, 탄산음료 등 고열량 저영양으로 건강하지 못한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과일, 야채 등의 저열량 고영양 건강식품 섭취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의 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의 외식은 외식증가의 주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표 2-17> 연도별 영양소 섭취 변화 추이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탄수화물 (g)	조섬유 (g)	칼슘 (mg)	나트륨 (mg)	철 (mg)	비타민A (μgRE)	비타민C (mg)	
전체	'09	1,883.4	67.6	40.5	298.8	6.7	491.9	4,617.5	13.4	766.4	100.2
	'08	1,867.5	66.7	39.3	297.7	6.7	488.5	4,607.6	13.3	770.8	99.7
	'07	1,829.6	66.0	37.9	292.7	6.3	468.9	4,452.9	13.1	734.4	93.0
	'05	1,979.1	75.0	45.2	301.0	7.2	552.4	5,260.2	13.8	781.7	99.1
	'01	1,896.7	70.9	41.7	296.9	6.9	495.5	4,966.9	12.3	628.8	134.6
	'98	1,933.5	73.2	40.1	315.5	6.6	500.5	4,581.6	12.5	609.5	123.7
남자	'09	2,170.1	78.8	47.6	330.8	7.3	548.1	5,404.3	15.0	834.2	104.7
	'08	2,146.4	77.0	46.1	329.0	7.2	538.0	5,341.6	14.9	857.4	103.0
	'07	2,106.5	77.2	43.8	324.2	7.1	526.3	5,168.6	15.1	817.2	96.1
	'05	2,213.6	84.1	50.8	327.3	7.9	592.2	5,861.5	15.1	843.6	103.3
	'01	2,107.0	80.2	47.3	319.2	7.3	533.7	5,454.1	13.4	695.3	129.4
	'98	2,151.6	82.1	45.3	342.1	7.2	541.2	5,125.9	13.7	671.3	122.3
여자	'09	1,589.5	56.2	33.1	266.0	6.1	434.8	3,819.8	11.6	694.9	95.6
	'08	1,583.4	56.3	32.4	265.9	6.2	438.1	3,866.8	11.6	682.2	96.6
	'07	1,548.9	54.5	32.0	260.9	5.6	410.9	3,737.8	11.0	650.0	90.1
	'05	1,742.2	65.9	39.5	274.4	6.5	513.1	4,659.7	12.4	719.4	95.1
	'01	1,713.1	62.8	36.8	277.3	6.4	462.9	4,548.8	11.3	572.1	139.3
	'98	1,728.5	64.8	35.2	290.6	6.2	461.8	4,065.3	11.3	551.5	125.4

주: 만 1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또한 가구의 식품섭취패턴과 가구소비에 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총 에너지 소비 중 외식을 통한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⁸⁾

<표 2-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식비의 증가가 급격한데 외식의 증가는 대체로 영양섭취상 총 열량과 더불어 지방, 나트륨 등 특정영양소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 2-18> 도시가계 월평균 가공식품비 및 외식비 지출추이

(단위: 천원, %)

구분	총 식료품비	가공식품비 ¹⁾	외식비
1975	168.5	162.6	5.9
1980	208.8	196.7	12.1
1985	227.9	205.9	22.0
1990	307.2	236.9	70.3
1995	364.1	248.4	115.7
1999	341.7	213.7	128.0
2000	444.0	258.3	185.7
2001	463.4	262.5	200.9
2002	481.3	268.6	212.7
2003	495.2	272.2	223.0
2004	532.5	288.1	244.4
2005	539.3	292.4	246.9
2006	543.9	296.0	247.9
2007	555.6	297.7	257.9
2008	584.8	317.4	267.4
2002년/1975년	2.8	1.7	36.1
2008년/1975년	3.5	2.0	45.3

주: 가공식품은 외식비를 제외한 곡류 등 가공품, 육류가공품, 어패류가공품, 채소 및 해조가공품, 빵 및 과자, 차와 음료, 주류를 포함.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가계조사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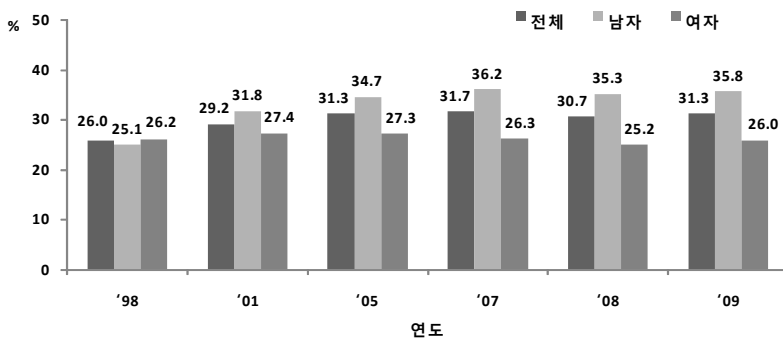
8) Guthrie, Lin, and Frazao 2002; Nielsen, Siega-Riz, and Popkin 2002; Stewart et al. 2004.

<표 2-18>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외식비는 1975년 5,900원에서 2008년 267,400원으로 45.3배 증가하였는데 총 식료품비가 동기간에 3.5배 상승하고, 가공식품비는 2.0배 상승한 것에 비하면 매우 급격한 증가로 향후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외식의 증가는 경제수준의 발전에도 기인하지만 주로 맛벌이, 핵가족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한 현상으로 향후 국가 영양관리 정책 수립 시에 외식에 관한 정책적 대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외식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그림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만 유병률이 상승하고 있다.

[그림 2-3] 연도별 비만 유병률 변화 추이



주: 비만유병률,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분율, 만 19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사회경제학적인 요인으로는 식료품 가격의 변화, 패스트푸드 등 열량이 높고 영양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식품의 실질 가격의 하락 및 지리적 접근성 증가, 그리고 특정 불건강 식품의 광고 증가 등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9)

9) Cutler, Glaeser, and Shapiro 2003; Lakdawalla, Philipson, and Bhattacharya 2005.

패스트푸드 가격과 청소년의 체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으며¹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이러한 패턴이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보고되고 있다.¹¹⁾

이러한 비만 유병률 상승에 기여한 개인 및 사회경제학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특정 식품의 소비를 억제 하기 위한 추가적인 소비세 부과 혹은 특정 건강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논의 되고 있으며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특정 식품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규제 혹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학교 주변 인가 억제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보건정책들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개인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비만을 통제하고자 하는 개인적 접근이 대세였으나, 이러한 개인적 접근만으로 급속한 비만 유병률 상승세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경제학적 요인이 개인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변동시킴으로서 개인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7절 방사성물질 오염으로 인한 식품안전 위협

폭우, 폭염, 지진 등 기상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위협 뿐아니라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식품안전에 미치는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

한 예로서 2011년 3월 11일(금) 14시 45분 일본 도후쿠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가 손상을 입으면서 야

10) Auld and Powell 2009; Chou, Grossman, and Saffer 2004; Powell et al. 2007.

11) Auld and Powell 2009; Powell and Bao 2009; Sturm and Datar 2005; Sturm and Datar 2008.

기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은 이후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 대기, 해수, 농경지 등 주변으로 방출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위험 대처에 고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나 핵실험으로 발생하는 각종 인공 방사능물질이 대기 환경으로 방출되고 방출된 물질이 낙진 또는 비를 통해 직접 채소나 농·축·수산물에 오염시키거나 토양이나 해양을 오염시킨다. 다량의 방사능물질이 오염된 토양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면 농작물이 방사능물질을 흡수하여 축적하게 되고, 이 농산물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방사성 물질을 간접적으로 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현황을 분석해보면, 기류에 의한 확산, 해류에 의한 확산, 농·림·수산물 등에 의한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 3km에서는 연중 편서풍이 주기류를 형성하고 있어 대류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쿠로시오 해류의 동해 유입 가능성이 희박하며, 북태평양 해류순환에 따른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 및 국내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 사례는 없었다.

이와 같이 과량의 방사능물질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구토, 탈모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과 급성방사선증후군(전신이 1 Sv 이상의 용량에 노출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1 Sv = 자연적으로 1년간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약 300배 수준으로 골수 손상과 관련된 용량이며, 소화기계, 심혈관계 등의 다른 장기는 더 높은 용량 약 >10 Sv에 의해 영향을 받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라 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만약 식품 허용 한계치 이상의 많은 세슘이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몸 전신에 고르게 축

적되며 주로 근육에 가장 많이 축적되지만, 요오드처럼 특정 장기(갑상선)에 축적되어 손상을 주지는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표 2-19>와 같이 모두 적합 수준이고, 아주 일부 식품에서 kg 당 0.08-0.6 Bq 수준으로 이는 국내 식품위생법의 식품 방사능 기준인 370 Bq 비하면 수천분의일 수준의 극히 낮은 양이며, 미국의 경우도 세슘이 Kg당 5 Bq이하일 경우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양이다.

식약청은 검사를 강화한 2011년 5월 1일 이후 일본산 식품첨가물 2건(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41.9 Bq/kg, 카라기난 1.5 Bq/kg) 및 미국에서 생산되어 일본을 경유해 수입한 커피원두에서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 이하인 1.4 Bq/kg 검출되었으나, 수입자가 자진 방송하여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 2-19〉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현황

(단위: 건)

구 분		품 명	검사 현황			
			계	적합	부적합	검사중
농산물	국내산	곤드레나물, 대파, 동포, 미나리, 풋마늘, 배추 등 총 17종	200	197	-	3
	축산물	가공유크림, 유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 기타조제분유 외 10종	25	23	-	2
	국내산	원유	134	131	-	3
수산물	일본산	냉장명태, 활대게, 냉장홍어, 냉장가오리, 활떡장어,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등	1,582	1,538	-	44
	주변국가 (태평양산)	다랑어, 떡장어, 명태, 고등어, 꽁치 총 5종	68	67	-	1
	국내산 (연근해 및 원양산)	가자미류, 대게, 청어, 오징어, 옥돔, 갈치, 고등어, 소라 등 총 16종	114	110	-	4

자료: <http://web.maf.go.kr/safety/> (농림수산물부, 2011. 06. 27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식품공전)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세슘(134Cs, 137Cs), 요오드(131I)에 대해서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요오드 허용기준은 우유 및 유가공품은 150 Bq/kg, 우유 및 유가공품 제외한 식품은 300 Bq/kg이며, 세슘은 모든 식품에서 370 Bq/kg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는 요오드에 민감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재 영유아식품(0~6세)에 대한 요오드의 별도기준(100 Bq/kg)을 신설하였다.¹²⁾

이러한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방사성물질의 반감기(세슘 30년)에 따라 중장기적인 모니터링검사와 관리가 필요하고, 오염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국민 정보전달이 시급하다. 현재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사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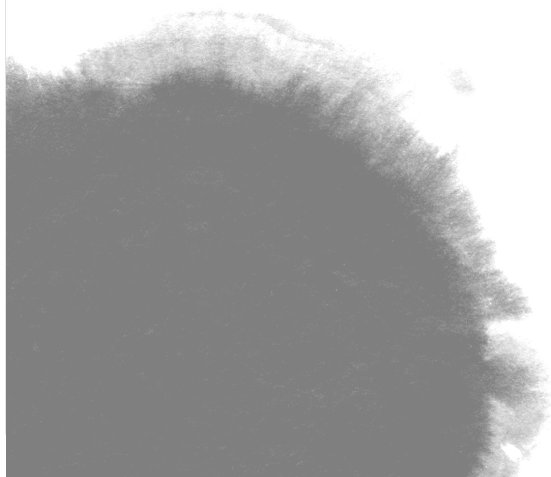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¹³⁾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3.1%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88.5%가 방사능 확산에 대응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방사능은 문제가 없지만 인공방사능은 몸에 나쁘다’고 오해하는 국민이 73.2%에 달하는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서 국민의 53.3%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17.3%가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진단’을 들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대기·식품 등의 방사성 오염 정도와 안전성에 관한 정보(40.8%)’, ‘정부의 조치내용과 정보공개 채널(27.7%)’이었다.

12) 이상영 외,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3) 대통령 서면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03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제3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 평가

제1절 국무총리실

1.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추진

국무총리실은 여러 관련부처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표 3-1〉 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추진목표

2009-2011
1.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2.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평가 3.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4.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가. 총괄 현황

1) 연도별 현황

<표 3-2>에는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하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3-2〉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평가결과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계	195	100.0	174	100.0
정상추진	150	76.9	141	81.0
완료	27	13.9	21	12.1
지연	10	5.1	2	1.1
- 입법절차지연	8	4.1	10	5.8

2009년도는 총 1965과제중 정상추진이 76.9%였고, 2010년은 총 174과제의 81.0%가 정상추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 여전히 추진중이라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2) 기관별 현황

〈표 3-3〉에는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하의 부처별 사업추진 실적¹⁾이 제시되어 있다.

〈표 3-3〉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부처별 실적현황

(단위: 건수, %)

구분	식약청					농식품부					기타				
	계	2009		2010		계	2009		2010		계	2009		2010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계	169	91	46.7	78	44.8	164	85	43.6	79	45.4	36	19	9.7	17	9.8
정상추진	129	68	45.3	61	43.3	131	65	43.3	66	46.8	31	17	11.3	14	9.9
과제완료	29	19	70.4	10	47.6	17	7	25.9	10	47.6	2	1	3.7	1	4.8
지연	5	4	40.0	1	50.0	5	5	50.0	0	0.0	2	1	10.0	1	50.0
입법절차지연	6	0	0.0	6	60.0	11	8	100.0	3	30.0	1	0	0.0	1	10.0

주: 기타는 총리실, 환경부, 교과부, 법무부, 관세청 등이 추진하는 과제임.

식품안전관리의 주무부처인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상추진율이 45% 수준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에는 기타 부처별 추진실적이 제시되어있다.

기타부처는 교육부, 관세청, 환경부, 법무부 등이 추진하는 과제가 대상이다.

<표 3-4>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관별 실적현황(계속)기타 세부현황

(단위: 건수, %)

구분	환경부					교육부					그 외(관세청, 법무부, 총리실)				
	계	2009		2010		계	2009		2010		계	2009		2010	
		과제 수	구성비	과제 수	구성비		과제 수	구성비	과제 수	구성비		과제 수	구성비	과제 수	구성비
계	8	4	50.0	4	50.0	17	9	52.9	8	47.1	11	6	54.5	5	45.5
정상추진	7	4	57.1	3	42.9	16	8	50.0	8	50.0	8	5	62.5	3	37.5
과제완료	0	0	0.0	0	0.0	1	1	100.0	0	0.0	1	0	0.0	1	100.0
지연	0	0	0.0	0	0.0	0	0	0.0	0	0.0	2	1	50.0	1	50.0
입법절차지연	1	0	0.0	1	100.0	0	0	0.0	0	0.0	0	0	0.0	0	0.0

주: 그 외의 현황(정상추진-2009년 관세청 3건, 법무부 1건, 총리실 1건과 2010년 관세청 2건, 법무부 1건, 총리실 1건/ 과제완료-2010년 총리실 1건/ 지연-2009년, 2010년 관세청 각 1건.

나. 세부평가결과 현황

1) 완료과제

<표 3-5>에는 부처별, 연도별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하에서 완료된 과제가 정리되어있다.

2009년에는 농식품부는 7건, 식약청은 19건, 교과부 1건이었는데, 2010년에는 농식품부는 10건, 식약청은 11건으로 나타났다.

〈표 3-5〉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완료과제 현황

구분	완료과제	완료과제 세부과제명	
2009년도 (27건)	식품위생 (7건)	1-2-1. 이력추적제 확대	② 농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1-7-1. 위기대응메뉴얼 작성·운영	① 통합 위기대응메뉴얼 작성
			② 농산물 위기대응 메뉴얼 작성
			④ 수산물 위기대응 메뉴얼 보완
		3-1-1.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④ 농식품안전상담센터 활성화
		3-1-2. 소비자 대상 정보 공개 및 교육 확대	① 농산물 안전정보 공개 확대
	4-1-1. Codex 협력 강화	① CODEX 참여·정보공유 확대	
	식약청 (19건)	1-2-3. 식품보관 관리방안	④ 수입식품보관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 마련
		1-4-3. 국내 유통단계 관리	⑥ 유해물질 검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1-5-1. 식품위생감사기관 신뢰성 제고	① 식품위생감사기관 ‘지정일몰제’ 도입
② 부정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및 벌칙 강화			
③ ‘감사수수료 원가산출 신고제’ 한시적 시행			
④ 검사능력 ‘현장평가제’ 실시			
⑤ 검사기관별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⑥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지도·감독실시			
1-7-1. 위기대응메뉴얼 작성·운영		⑤ ‘식품사고 위기대응 메뉴얼’ 작성 및 모의훈련실시 ⑦ 위해정보 입수 시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 및 정보 공유	
1-7-2. 위해식품 회수전담반 설치·운영		① 위해식품 신속회수를 위한 회수전담반 설치·운영	
1-8-1. 식품위해 사범 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⑤ 식품위해사범 관리 강화 및 형량 강화	
	⑥ 위해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 및 경제적 이익박탈		
	⑦ 불법·유사 건강기능식품 등 단속강화		
1-8-3. 영업자의 식품안전 책임 강화	① 수입 OEM 식품에 대한 영업자 관리 강화 ② 식품제조·가공 시설기준 제고 등 제도 개선		
4-3-2. 정보 공유 체계 구축	④ 식품안전정보 공유 확대		
4-4-1. 식품제조·업체 위생관리 강화	① 식약청 위생감사인력 지방자치단체 이체 및 시·도 식품안전 전담부서 신설		
4-4-2. 안전성 검사에 지자체와 협력강화	⑤ 지자체와 검사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마련		
국과부 (1건)	1-6-6.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① 위탁급식 직영전환 지원	

〈표 3-5〉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완료과제 현황(계속)

구분	완료과제	완료과제 세부과제명	
2010년도 (25건)	농식품부 (10건)	1-1-4. 축산물 도축·유통단계 위생수준 제고	③ 도축장 시설 개선 ④ 도축장 실명제 정착
		1-2-1. 이력추적제 확대	①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
		1-2-3. 식품보관 관리방안	① 축산물 저온유통체계 강화
		1-7-1. 위기대응매뉴얼 작성·운영	③ 축산물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2-2-2. HACCP 및 위해분석 전문인력 양성	① HACCP 기준원 전문성 강화
		2-2-3. 식품위생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	② 축산물 안전성 검사원 전문성 강화
		3-1-2. 소비자 대상 정보 공개 및 교육 확대	② 축산물 안전정보 공개확대
		4-2-1. 식품안전정보 수집역량 강화	① 국내외 안전정보 수집 강화 및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4-3-1. 식품관련 규정 관리	② 축산물가공처리법 확대개정
	식약청 (11건)	1-1-8. 안전한 기능성 식품 생산관리	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 컨설팅 및 기술지원 확대
		1-3-4. 첨가물·용기·포장 관리방안	② 식품첨가물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1-4-2. 통관단계 관리	③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강화
		1-8-1. 식품위해 사범 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⑧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관리 및 정보수집 체계 강화
		2-1-1. 과학적 위해성평가 강화	④ 유해물질 모니터링 DB구축 및 과학적 안전관리 기준 마련
		2-2-3. 식품위생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	④ 검사기관 검사원 교육지원 서비스 강화
		3-1-3. 가정에서의 식품안전·위생 정보제공	① 가정에서의 식중독예방 교육 강화 ② 내가 먹는 음식의 열량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3-3-2. 어린이 식생활 개선	②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4-3-2. 정보 공유 체계 구축	② 유해물질 목록 작성 및 자료 공유
		4-4-2. 안전성 검사에 지자체와 협력강화	④ 지방자치단체 검사능력 제고
관세청 (3건)	1-2-3. 식품보관 관리방안	⑤ 수입할어 무단반출 원천 차단으로 식탁안전 확보	
	1-4-2. 통관단계 관리	④ 해외공급망 주체 안전관리 강화	
	3-2-2. 원산지 표시제도 등 개선	④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총리실 (1건)	2-1-2. 위해성 평가의 독립성 강화	① 위해성평가 위해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2) 지연과제

<표 3-6>에는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하에 연도별, 부처별 지연 과제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2009년도에는 농식품부 5건, 식약청 4건으로 분석되었으나 2010년에는 식약청과 관세청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표 3-6〉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지연과제 현황

구분	지연과제	지연과제 세부과제명	
2009년 도 (10건)	농 식 품 부 (5건)	1-1-2. 농약 동물용의약품 관리	① 농약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등)
		1-1-4. 축산물 도축 유통단계 위생수준 제고	③ 도축장 시설 개선
		1-1-5. 친환경식품 관리방안	③ 친환경 수산물 확대
		1-1-7.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 강화	② 수산물 HACCP 확대
		1-5-1. 식품위생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⑨ 친환경농산물 인증 민간기관 신뢰도 제고
	식 약 청 (4건)	1-1-7.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 강화	③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적용업체 지정 대폭확대
		1-2-1. 이력추적제 확대	④ 기업의 이력추적도입 지원 및 확산
		1-3-3. 유전자 재조합식품 관리방안	③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1-3-4. 첨가물·용기·포장 관리방안	② 식품첨가물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
	관 세 청 (1건)	1-4-3. 국내 유통단계 관리	⑦ 국민보건 저해 우려물품 Recall 규정 마련
2010년 도 (2건)	농 식 품 부	-	-
	식 약 청 (1건)	1-2-3. 식품보관 관리방안	③ 식품물류창고 등의 보관 기준 마련
	관 세 청 (1건)	1-4-3. 국내 유통단계 관리	⑦ 국민보건 저해 우려물품 Recall 규정마련

주: 2011. 3월 실적보고 현황 반영

3) 계속과제

<표 3-7>에는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에 이어 2012년 이상까지 추진하는 과제가 부처별로 제시되어있다.

농식품부가 3건, 식약청이 5건으로 나타났다.

<표 3-7>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계속과제 현황

구분	계속과제	계속과제 세부과제명	추진시한
농 식 품 부 (3건)	1-1-1. 농수산물 생산환경 관리 강화	①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확대	'12
	1-1-5. 친환경식품 관리방안	③ 친환경 수산물 확대	'12
	1-3-1. 식품 등의 유해물질 기준 확대	① 농산물 중금속 관리강화	'12
식 약 청 (5건)	1-2-1. 이력추적제 확대	④ 기업의 이력추적도입 지원 및 확산	'12
	1-5-1. 식품위생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⑩ 우수 시험검사기관제도 운영	'12
	3-1-1.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⑦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모니터링 망」 구축 운영	'13
	3-2-1.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개선	②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개선	'13
	3-3-1. 위해가능 영양성분 중점 관리	① 식품 중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12

2. 성과

가. 신속하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85% 정도 되는 영세업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기준 개발·보급하고, 4년간 1,200억원(업소당 3천만원×4천개)을 식품진흥기금(50%), 자비(50%) 비율로 지원하였다. 또한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및 유해생물 등의 유해요소를 관리하고, 노후된 축사시설, 밀집사육 등 열악한 가축사육 환

경을 개선하며, 수산물 생산 해역의 안전평가를 통한 해역별 위생등급을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해평가로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사전 관리 강화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 '08년 1,638개의 기준을 '10년까지 EU 수준의 1,882개로 확대하였다. 즉, 중금속(57종 → 61종, Codex수준), 곰팡이독소(3종 → 7종, EU 수준), 동물용의약품(87종 → 131종, EU수준), 잔류농약(398종 → 430종) 등이다.

다. 우수수입업체 제도 시행

식품수입국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국 청도 등에 현지식품감사기관을 설치하여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을 확보하고, OEM¹⁴⁾ 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 생산업체 현지 위생점검 의무화를 추진하고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시행하고,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등 실효성 평가 및 개선하였다.

라. GMO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GMO 표시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GMO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GMO표시 확대 및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파악하여 적합한 교육·홍보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였다.

마. 식품 관련 기초자료 확보 및 식품정보 전달의 효율성 증대로

14)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 : 외국에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에 국내 등록상표로고를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

소통 강화

식품위해정보를 제공, 문제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일선 유통업체에 관련 시스템 적용하였다. 그럼으로 식품안전 관련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을 예방하고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처간 업무연계의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

3. 미흡한 점

- 가. 우선 실천과제의 질적인 면보다는 목표 달성의 양적인 면에 치우쳐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HACCP 적용 업체 비율로 프로그램의 올바른 적용과 점검보다는 업체 적용비율의 양적확대에만 주로 집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단순히 전년 대비 사업건수 증감, 국민 만족도 상승치 등 사업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단순비교 지표가 대부분이라 시계열적인 계량적인 사업 평가를 할 수 없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지자체 통합평가의 식품안전관련 지표는 4개로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 다. 정책집행이 조금 더디더라도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는 사전조사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대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를 거친 사업이 없어 보여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시범사업이나 사전조사를 실시토록 한다.
- 라. 잔류농약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차별화된 정책수립 및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아 업무의 중복,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수산물에 대한 제도 적용이 농산물

과 정도 차이를 보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 마. 대부분의 사업이 정책 수단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목표달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책목표의 성취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설정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였다.
- 바. 한국 교민위주의 한식세계화 등 일부과제는 정책내용이나 수단의 범위가 협소하여 정책 달성의 임팩트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사. GAP, HACCP 등이 농산물을 위주로 적용되는 등 대부분의 정책내용이나 수단이 기존 업무영역과 차별적이지 않고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 개선노력 등을 평가해 줄 수가 없었다.
- 아. 소비자단체 등과는 의견수렴 및 일정 점검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일부과제의 경우 언론·전문가그룹(학회)·식품업계 등의 Opinion leader 대상으로한 다양한 참여 노력이 미흡해 보였다.
- 자. 민관협의체 활용 및 어린이 먹거리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정부 부처간 사전 업무협조가 부족해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었다.
- 차. 대부분의 경우 과제추진 및 성과의 홍보가 보도자료 설명회 등 기존 방식에서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국민 인지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미흡하였다.

제2절 농림수산식품부

1. 안전관리 현황

<표 3-8>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2020년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있다.

농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 보인다.

<표 3-8>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전 2020의 추진전략

- ① 농어업의 체질전환
- ② 신성장 동력 창출
- ③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 ④ 국가식품시스템의 선진화
- ⑤ 지역 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

가. 사전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농식품부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은 ‘농어장에서 식탁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사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잔류농약, 중금속 및 유해미생물 등을 사전에 중점관리하는 GAP(농산물우수관리)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0년 GAP 인증농가는 34,421호로 물량기준 전체 농산물 대비 3.9%에 해당한다. 가공 축산물 HACCP 인증 현황을 보면 2010년 3,831개소로 전체 축산물의 75.8%가 해당된다. 수산물 HACCP 인증은 177개소로 전체 양식장의 약 6.6%가 해당된다.

농약과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리강화는 농작물용 고독성 농약 사용(12종) 및 축산 항생제(9종)의 사료첨가를 전면 중단하고, 생산 투입요

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독성 농약 3종에 대해서는 2010년 4월부터 금지하였고, 다른 9종은 2011년말부터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중금속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중금속 오염우려 지역(폐광산, 산업단지 등) 농경지의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다. 중금속조사 대상품목수는 2010년 13개에서 2011년 24개로 11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기준을 신설하였다.

나. 위기대응

농식품부는 유해한 농식품의 사전 유통을 차단하기위해 안전성조사와 위생감시 강화하였다. 검사는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산과학원, 축산물은 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 축산물위생연구소 등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소비 품목과 위생관리가 취약분야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안전성검사 강화로 농산물 부적합률은 2000년 4.5%에서 2010년 2.2%로 낮아졌고, 축산물은 2005년 0.25%에서 2010년 0.15%로 낮아졌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곰팡이독소, 병원성 미생물, 방사능 등이다. 농약 등 유해물질의 오염여부를 조사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식품은 농장에서 출하를 엄격히 제한하고, 또는 폐기(유통 중) 조치를 실시하였다. 축산물 관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등 35명으로 중앙감시단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1회 중앙·지자체의 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하였다.

다. 수입식품관리 철저

수입 전 현지 생산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국경부터 가정까지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였다. 11개 수입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수준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주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하였다. 위생약정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뉴질랜드, 대만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무작위 정밀검사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사관리를 추진하였다. 수입축산물 유해물질의 오염도는 1998년 0.15%(1천건 검사)에서 2010년 0.05%(6.4천건 검사)으로 검사건수는 증가하고 오염도는 개선되었다.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였다. 2010년 12월부터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 가공공장 등)가 시행되었다. 원산지 단속 실적은 2008년 3,803건에서 2010년 4,894건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의 수입식품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2011년 축산·수산·식물검역 조직을 통합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라. 위해성 평가 강화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위해성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유해물질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연구도 강화하였다. 유해물질 등 위해평가자료 모니터링 DB를 구축하고, 이를 실험실정보화시스템(LIMS)과 연계하였다.

식품안전·위해성분석관련 인력 확충과 교육 활성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축산물 HACCP 기준원의 경우 2010년 23명을 충원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 식품위해정보의 공개 및 교류 확대

2007년부터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Foodsafety)」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교류회를 연간 4회 개최하고, 농식품안전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총 3,899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농식품 안전 교육 책자를 제작하여 81천부를 배포하였다.

바. 인증·표시제 운영

농식품의 특성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수단인 농식품 인증제도는 소관 6개 법률에서 18종을 운영하고 있다. 품질 인증과 관련해서는 지리적표시, 식품 KS,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9종이 있으며, 안전 인증과 관련해서 농산물 GAP, 축·수산 HACCP 등 3종이 있다. 친환경 인증은 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있다. 친환경 축산물과 친환경수산물도 6종이 있다.

원산지표시제도 중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는 1994년,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2007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는 의무적 표시제이다. 2010년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원산지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다. 미국산 쇠고기에 수입재개와 농식품 수입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도 확대하였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10년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쌀·배추김치까지 확대되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도 2008년 531개 품목에서 2010년 868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GMO(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는 2001년부터, 축산물 등급 의무표시제(쇠고기, 돼지고기)는 1997년부터 시행하였다. GMO표시는 옥수수, 콩, 면화, 유채, 사탕무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콩’, ‘유전자변형 콩 포

함, ‘유전자변형 콩 포함 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하였다. 쇠고기 이력제과 양곡표시제 등도 시행중이다.

사.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사업 강화

농식품부는 매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등 도축장 위생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정책 참여를 확대하였다. 민간위생감시원은 23천명에 달한다. 소비자단체 연계 사업을 통해 소비자(학생, 주부 포함) 대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였다.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이며, 교육내용은 식품 표시(원산지, 지리적표시 등), 성분 표시, 인증마크(GAP, HACCP, 친환경 등) 등이며, 식품안전 퀴즈대회 등도 개최하였다.

아.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외국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서 주요 식품 수입국 중 해외실사와 연계효과가 높은 국가 위주로 식품 안전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태국, 호주·뉴질랜드,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 MOU 및 한·러 수산물 위생 MOU 체결 추진 중이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안전성 조사 추진 및 신종 유해물질 검색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기관은 현행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산과학원에서 지자체의 안전성 조사를 추가하였고, 폐금속 광산 지역 재배 농산물 중금속 부적합 발생시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오염된 농산물은 수매·폐기 조치하였다.

2. 평가

가. 신속하고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및 유해생물 등의 유해요소를 관리하고, 노후된 축사시설, 밀집사육 등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며, 수산물 생산 해역의 안전평가를 통한 해역별 위생등급을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함 식품 생산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1) 성과

농식품부는 농약의 불법유통 및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면적 재배 작물 농약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직권 등록 농약수를 대폭 늘리고, 안전사용기준을 개선하였다.

소의 생산사육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의무 도입을 추진하였고, 돼지고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도의 확대를 시행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장에서 식탁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사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속하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분야 정책은 대체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미흡한 점

가) 생산단계의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제도(GAP 및 HACCP) 활성화 미흡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및 HACCP 지정과 중

금속, 미생물 등 위해물질검사를 매년 확대하였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무작위 정밀검사를 확대하여 철저한 안전성 검사관리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GAP 농산물 비중이 총 생산량의 약 4%에 불과해 아직 EU(70~80%) 등에 비해 저조하고, HACCP 제품이 전체 가공축산물의 75.8%를 차지하지만, 「농장→도축·가공→판매」 중 농장·판매단계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단계의 예방적 위험관리 체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 다양한 검사수요에 대응 미흡

농산물의 경우, 생산단계에서 농약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균 등 기타 위해물질의 검사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식중독균 등 검사 확대 등 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안전성 조사 강화가 필요하다. 안전성 조사실적으로 보면 생산단계 75%, 유통/판매단계 25%로 유통/판매단계 비중이 낮다. 농산물의 분석실적을 보면 잔류농약(93.5%) 중심이고, 중금속(4.8), 병원성 미생물(0.5), 방사선조사 및 핵종(0.2)분야의 검사비중이 낮다. 소비자 관심이 집중되는 폐광산 주변 농경지·생고기 취급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수입국의 다변화, 국민식생활 형태의 변화, 분석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새로운 위해요소의 증대 및 안전관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위해성평가 결과의 품질 제고 및 대내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자료 생산·수집·DB화 등이 필요하다.

1) 성과

농약, 항생제 등 유해물질의 위해성 평가 관련한 시험연구기능을 강화하였다.

2) 미흡한 점

가) 품목별로 기능이 분산되어 체계화 및 표준화 미흡

농식품부의 위해성 평가기능은 과학적 시험연구를 통해서 충실히 수행되고 있으나, 농산물은 진흥청 농업과학원, 축산물은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은 수산과학원 등으로 분산되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취약점이다.

품목별로 위해성평가의 법적 근거가 달라 체계적으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표준화된 위험평가 매뉴얼이 없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못한 실정이다. 농산물은 농약을 제외한 여타물질에 대한 위험평가가 전무하다. 축산물은 동물약품을 제외한 분야는 전반적으로 위해성 평가기능이 취약하다. 수산물은 식품위해 사고 가능성이 높아 위험평가 수요가 높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위해성평가에서 우리국민의 식품섭취 습관 및 추이, 식품오염도 등의 자료가 중요하지만(노출평가), 기초자료 축적이 부족하다. 현재,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Codex의 잔류허용 기준을 사용하거나 선진국의 노출평가 자료 사용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기관간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중요한 기초자료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농산물품질검사원의 농약 중금속 모니터링 검사결과가 농진청 농약위험평가 활용에 미흡하고, 축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위험평가지 수의과학검역원과 농진청의 자료공유가 미흡하다.

나)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및 평가방법 미흡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유해 미생물 위해성평가에 대한 기준설정과 평가 방법이 미흡하다. 선진국에서는 인체 위해성이 가장 큰 생물학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U는 식품긴급위험정보 경보건수 445건('07) 중 생산단계 관리 대상 위해요소(225건, 50.5%) 가운데, 생물적 위해요소가 60%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과 수산물 안전성의 기본이 되는 사료, GMO 및 신종 유해물질(멜라민, 포르말린, 방사능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관리 방안 설정이 미흡하다.

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성공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식품위해에 대한 활발한 정보 및 의견교환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안전정책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잦은 식품안전 사고로 농산물 생산 현장이나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소비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1) 성과

2009년부터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Foodsafety)」을 운영해 왔고, 소비자단체와 정보교류회를 개최하고, 농식품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농식품 안전 교육관련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소비자와의 정보공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 미흡한 점

가) 소비자와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미흡

소비자단체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안전 정보를 공유하지만, 언론·전문가그룹(학회)·식품업계 등의 Opinion leader 대상 다양한 참여가 부족하다. 소관업무별 전문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 체계적인 분석·평가 기능의 취약

다양한 농식품 안전 정보가 생성·수집되나, 긴급정보와 일반정보의 구분 없이 체계적이지 못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어 정보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절히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기관별 수집·분산된 정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현지의 현지 식품안전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수집 취약한 실정이다.

3. 당면과제

앞에서 검토한 농식품 안전정책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농식품의 안전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체제 및 연구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의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유해물질 증가에 대비한 전문성과 정보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R&D의 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제3절 식품의약품안전청

1. 안전관리 현황

식약청은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이 추진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음과 같이 세부추진목표를 세워 선진국 수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CCP 적용 식품생산량 확대 : 30%(’08년) → 95%(’12년)-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 강화 : 1,638개(’08년) → 1,882개(’12년)-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 : 10.1%(’08년) → 30%(’12년)- 식중독 환자수 감축 : 인구 십만명 당 20.1명(’08년) → 10명(’12년)

가. 식품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

산업발달에 따른 식품 중 환경유해오염물질 및 식품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신종유해물질의 출현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 확산과 식품산업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이옥신의 경우에 ’99년 다이옥신 잔류 닭고기 유통으로 7.5억불의 손실을 보였고, 멜라민으로 ’08년 및 ’09년 분유 및 과자류 중 유해물질로 사회불안을 초래하였다.

한국 국민의 식품안전 만족도는 40%(’08.2 서울시 조사)으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평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영국 ’09년 64%).

수입식품의 증가와 단체급식, 외식 등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및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한데 수입식품은 ’98년 3조 1천억원에서 ’07년 8조 5천억원으로 식탁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있다. 수입식품 정밀검사비율의 확대(23%→30%)를 위한 분석장비(LC/MS/MS 등 67품목 104대, 101.7억원) 도입 및 부적합이력·위해우려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을 100%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나. 위해관리기준·규격 신설 및 강화

사전 예방적·과학적 식품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최종제품 중심의 경험적 관리에서 생산과정의 과학적 관리 및 쌍방향(소비자-생산자)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위해중심의 기준·규격이 신설·강화되어 '06년 47건, '07년 94건이 되었다.

가공식품(어묵류 등 6품목)에 대한 HACCP 시행이 '06.12월에 추진되었고, 농·축·수산물 및 유통식품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가 시행 중이며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즉, 선진 안전관리제도 도입 및 적용이 검토되어야 하며, 원산지표시제가 '08.7월 이후에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08.7월 쇠고기 및 쌀(밥류)에서 '08.12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원산지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다소비 식품(고춧가루 등) 및 채소류, 유통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여 유통 수입식품의 부적합율이 3.2%('00년)에서 1.1%('06년)로 감소되고 있다.

다. 사전예방시스템 강화

사전예방시스템 강화를 목적으로 안전한 식품제조·가공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제도의 신설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져 '08, 475개에서 '09.8, 632개로 확대되었고,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의 조기 정착과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가 이루어졌다.

2. 평가

가. 사전예방 원칙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1) 성과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확대하여 식품제조·가공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수준 안전평가제 도입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식품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해물질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식품위해요인 사전관리를 강화하였고, GMO 식품에 대한 표시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였다.

2) 미흡한 점

사전 위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선제적·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즉, 사전 위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위해정보를 사전에 수집·점검·분산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위해정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선제적·즉각적인 대응으로는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나.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 강화 및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도입

1) 성과

식품 제조·가공과정의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강화하여 '11년까지 HACCP 인증업체를 3,0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을 확보하

였다. 즉, '08년 475개소(식품제조가공업의 2%)에서 '11년 3천개소(식품제조가공업의 13%)로 확대하였고, 영세업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기준 개발·보급하였다.

즉, 시설 보다 안전확보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중심의 쉬운 기준을 개발하고 영세업소에 대한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4년간 1,200억원(업소당 3천만원 × 4천개)을 식품진흥기금(50%), 자비(50%) 구성으로 지원하였다.

2) 미흡한 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의 HACCP 등 품질관리시스템의 심사·평가 업무이전에 따른 실효성 파악 및 제도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 지자체 이양에 따른 제도 개선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겠다.

다.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1) 성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소비자가 업체별 그 등급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09. 8월)할 수 있는 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10년 1월부터 3년 마다 총 353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평가대상업체는 HACCP 적용업체(어묵류,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과자류·만두류·면류, 비기열음료, 레토르트식품)와 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연매출 500억원 이상 영업자이고, 평가내용은 제조시설, 설비관리,

검사관리 등이다.

평가결과는 95점 이상은 AAA(우수),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AA, 90점 미만은 A의 3등급으로 분류하고 우수등급 영업소에 관하여 1개 이상 일반신문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식약청장이 요청하게 되어있고, 우수등급 선정 업체는 “위생수준안전평가우수등급”로고를 표시·광고할 수 있고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 미흡한 점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하여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09.8월) 피해자 20명 이상이 요청시 위생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개 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된 요청과 점검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내실있는 활성화가 필요하다.

라.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사전관리 강화

1) 성과

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확대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08년 1,638개의 기준을 '10년에 EU 수준의 1,882개로 확대하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중금속(57종 → 61종, Codex수준), 곰팡이독소(3종 → 7종, EU 수준), 동물용의약품(87종 → 131종, EU수준), 잔류농약(398종 → 430종) 등이고,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 다소비식품 500품목을 선정하여 유해물질을 집중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08년 100품목, '09~'10년 400품목 추가) 고춧가루 등

30대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유해물질의 저감화 기술지원

식품제조가공 중 자연 생성되는 신중유해물질의 저감화를 위하여 '08년 3-MCPD, 바이오제닉아민, HCAs 저감화 실행규범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감화 TF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미흡한 점

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확대

공신력 있는 검사결과 도출을 위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사전관리 제도로써 단기적 및 중장기적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유해물질 검사인프라(재정, 전문인력, 정밀분석 장비 보강 등) 확충을 위한 민간검사기관(특화된 대학연구소 등)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며, 이들 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지침 및 평가지침이 마련되어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데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유해물질의 저감화 기술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저감화 연구, 홍보 등을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야겠다.

마. 우수수입업체 제도 시행

1) 성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을 확보하였다. 즉, 중국 청도 등 수입이 많은 지역에 민간의 현지식품 검사기관을 설치('09.9 중국정부와 인증신청 등 협상 중¹⁵⁾)하여 국내의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만을 수입토록 하였고,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사전에 확인·점검하여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도입 및 조기 정착화하였다.

그리고 OEM 수입식품¹⁶⁾ 해외 생산업체 현지 위생점검 의무화 추진하고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우수수입업체 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을 제정고시(안)하는 입안예고('09.6.19)를 하였다.

2) 미흡한 점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는 특히 김치, 과자 등 OEM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있는데 여전히 식품이물 등이 혼입되고 있어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범법시 적용할 강력한 행정처벌 규정도 마련되어야겠다.

그리고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의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등 실효성있는 평가와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15) 청도가 김치 가공 및 반가공품, 새우깡 반가공품 등 중국제품의 주요 수출지역

16)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은 외국에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에 국내 등록상표로고를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임.

바. GMO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1) 성과

GMO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GMO표시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GMO의 표시는 EU는 모든 식품, 미국은 미실시, 일본과 한국은 동일하게 GM이 남아있는 식품이 대상이다.

GMO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ON/OFF Line을 통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한 과학적·객관적 정보 전달을 확대하였다.

2) 미흡한 점

GMO표시 확대 및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홍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인식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때 그때 인식조사가 실시되어 시계열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워 조사결과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를 보인다.

사. 공신력 식품 관련 기초자료 확보 및 식품정보 전달의 효율성 증대

1) 성과

'09.7년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식품위해정보를 제공, 문제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2) 미흡한 점

범부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식품관련 기초자료의 선정 및 생산이 필요한데 유관부처, 협회, 상업적으로 생산·유통되는 통계자료 목록을 조사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통계 포털 서비스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하여 안전한 원료농수산물 확보 및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상호 협조·홍보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위해식품 회수현황, 인식도 조사결과 등 정책통계 기초자료 생산 및 전산화가 필요하다.

3. 당면과제

가.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 모니터 요원 외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온라인 홍보대사 등을 활용, 부정확한 정보 조기 차단 및 올바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나. 식중독 발생의 사전차단을 위한 장기적인 지도·감독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적정 수준의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여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곳을 대상으로 식재료의 조달 및 관리, 위생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한다.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식당 내부 위생상태 점검, 식자재 관리 상태를 견학 등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토록 한다.

다.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 농수산식품부, 교과부, 관세청, 지자체 등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는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

제4절 향후 추진대책

1. 전략목표

가. 식약청

〈표 3-9〉 식약청 미래전략 2010의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
완벽예방 (Sufficient Protection)	①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강화
	②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개선
	③ 정책대상별 맞춤형 예방서비스 제공
	④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 강화
신속대응 (Speedy Response)	⑤ 선진화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⑥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 활성화
	⑦ 신속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대
최적지원 (Smart Support)	⑧ 국내외 식의약 지원 네트워크 확립
	⑨ 정보공개 및 정책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⑩ 식의약 신기술 개발과 안전 지원 강화
	⑪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역량 확충

2. 신설과제

〈표 3-10〉 2020미래계획의 기관별 추진 과제 및 내용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추진과제	추진내용	추진과제	추진내용
범부처 「국가식품위원회」 설치·운영 (’12년)	범부처 차원의 ‘국가식품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와 소비자, 기업, 사회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식약의 안전 선진화를 위한 관리체계 쇄신	‘식약의 선진화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혁신 기반 마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취약계층 대상 식품보조제도(food stamp)를 도입, 영양 개선 및 국산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	최고수준의 안전기준 설정	국제적으로 미설정된 안전기준의 선제적 설정·등록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식의약품 녹색안전 기준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질환자를 위한 질병예방 식품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맞벌이, 독신가구를 위한 외식·급식 및 신선식품 관리강화
			현대인의 ‘셀프-케어’ 확대에 따른 안전 관리 개선
		대내외 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온라인 등 ‘셀프-케어 식의약품’ 의 유통 관리 강화
위해정보 분석·예측시스템 확충	대외 식의약 전문가 인력풀 활용 확대		
		위해정보 분석 및 예측 프로그램 개발·운영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추진과제	추진내용	추진과제	추진내용
		사고발생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기대응을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위기대응 소통창구 단일화(One Voice)
			이미지 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시설·장비 확보	신속한 검사 및 조치를 위한 장비 보급 확대
			지역별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조직 강화
		국제 식의약 네트워크 주도 및 국가 간 상호협력 확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의약 네트워크 주도
		허가·심사 등 정보 공개 확대	식약청 정보공개 원칙 (KFDA Transparency Initiative) 선언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한 우수심사기준(GRP) 운영 확대
보건산업 안전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영세업체 안전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의약품, 의료기기 등 User Fee(사용자부담) 도입 및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를 위한 영양서비스 제공		
	질환자를 위한 질병예방 식품환경 조성		

3. 계속과제

〈표 3-11〉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2020미래계획 추진 과제의 연계성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미래계획	
		농식품부	식약청
1-1-1. 농수산물 생산환경 관리 강화	①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확대	○	
1-1-4. 축산물 도축·유통단계 위생수준 제고	① 도축장 구조조정	○	
	② 유통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③ 도축장 시설 개선	○	
	④ 도축장 실명제 정착	○	
1-1-7.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강화	① 축산물 HACCP 확대	○	
	② 수산물 HACCP 확대	○	
	③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적용업체 지정 대폭 확대		○
1-1-8. 안전한 기능성 식품 생산관리	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 컨설팅 및 기술지원 확대		○
	② 국내개발 건강기능식품 소재에 대한 기술 컨설팅		○
1-2-1. 이력추적제 확대	①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	○	
	② 농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	
	③ 수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	
	④ 기업의 이력추적도입 지원 및 확산		○
1-2-2. 유통식품 안전관리망 구축	① 유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및 국가검사망 구축		○
1-3-1. 식품 등의 유해물질 기준 확대	④ 유해물질 안전기준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1-4-1. 생산자·수출지 안전관리	① 수입 축산물 위험평가 기능 강화	○	
	② 수입 수산물 현지 안전관리 강화	○	
	③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1-4-2. 통관단계 관리	① 수입 축산물 검사관리 강화	○	
	② 수입 수산물 검사관리 강화	○	
1-4-3. 국내 유통단계 관리	① 수입 농산물 유통단계 모니터링 강화	○	
	② 수입 축산물 유통단계 모니터링 강화	○	
	③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체계 구축	○	
	④ 수입 수산물 유통단계 모니터링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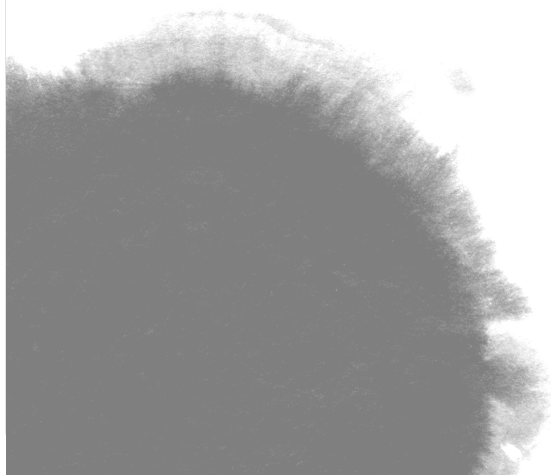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미래계획	
		농식품부	식약청
1-5-1. 식품위생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⑩ 우수 시험검사기관제도 운영		○
1-7-1. 위기대응매뉴얼 작성·운영	⑤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모의 훈련 실시		○
	⑥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및 교육 과정 운영		○
1-7-2. 위해식품 회수전담반 설치·운영	① 위해식품 신속회수를 위한 회수전담반 설치·운영		○
1-7-3.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① 위해 발생정보 신속전달 경보제도 시행		○
2-1-1. 과학적 위해성평가 강화	① 농산물 위해성 평가 강화	○	
	② 축산물 위해성평가 강화	○	
	③ 수산물 위해성 평가 강화	○	
2-1-2. 위해성 평가의 독립성 강화	① 위해성평가-위해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2-2-1. 식품 안전성 연구 강화	① 농산물 안전성 연구 강화	○	
	② 축산물 안전성 연구 강화	○	
	③ 수산물 안전성 연구 강화	○	
	④ 수산물 위해요소 제어기술 개발	○	
	⑤ 식품안전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 강화		○
2-2-2. HACCP 및 위해분석 전문인력 양성	① HACCP 기준원 전문성 강화		○
	② HACCP 지도관 교육훈련 확대로 지원역량 강화		○
	③ 민간인 대상 HACCP 전문교육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 강화		○
	④ 위해분석 전문기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2-2-3. 식품위생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	① 농산물 안전성 검사원 전문성 강화		○
	② 축산물 안전성 검사원 전문성 강화		○
	③ 수산물 안전성 검사원 전문성 강화		○
	④ 검사기관 검사원 교육지원 서비스 강화		○
	⑤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3-1-1.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⑤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및 의견교환 활성화		○
	⑥ 국민 참관인 제도 확대		○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미래계획	
		농식품부	식약청
3-1-2. 소비자 대상 정보 공개 및 교육 확대	⑤ 소비자 구매 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정보 공개 확대		○
	⑨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강화		○
3-2-1.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개선	③ 그린푸드(Green Food)제 도입 추진		○
3-3-2. 어린이 식생활 개선	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 및 고열량·저영양식품 학교매점 등 판매금지		○
	②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
	③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공표		○
4-1-1. Codex 협력 강화	① CODEX 참여 정보공유 확대		
	② CODEX 국제회의의 참여 활성화 및 국제 규격화 활동 확대		○
	③ CODEX 규격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활동 강화		○
4-1-2. 외국정부와 식품안전 MOU 확대	③ 위생약정 체결 확대		○
4-2-1. 식품안전정보 수집역량 강화	② 국내외 안전정보 수집·분석·공유		○
	③ 국내외 안전정보 수집 강화 및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
4-2-2.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① 국내외식품의 식품안전정보 제공		○
	②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4-3-2. 정보 공유 체계 구축	① 국내외 식품위해정보 관계부처간 공유체계 확립		○
	② 유해물질 목록 작성 및 자료 공유		○
	③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④ 식품안전정보 공유 확대		○
4-4-1. 식품제조·업체 위생관리 강화	① 식약청 위생감시인력 지방자치단체 이체 및 시·도 식품안전 전담부서 신설		○
	② 지자체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매뉴얼 제작		○
	③ 지자체의 위생관리 효율성 제고 및 상시 관리 체계 운영		○



04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제4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제1절 국제기구

1. Codex

Codex는 FAO와 WHO가 공동출자한 국제기구로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국제 기준을 설정한다. 지역위원회를 포함한 2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매년 한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 국제기준의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316종의 국제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 기준은 WTO 회원국 사이에 통상마찰이 발생했을 때 관련 조치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현재 Codex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Codex 분과위원회별 주요내용

분과위원회		개최 일시	주요내용
품 목	오염물질분과 (CCCF)	2011. 3.21-25	- 8단계와 5/8단계에서의 규격안과 지역규격초안 · 식용 사고(sago, 야자수 나무에서 열매에서 얻어지는 밀가루와 같은 것) 밀가루에 대한 지역 규격안 · 칠리소스에 대한 지역규격초안
	식품첨가물분과 (CCFA)	2011. 3.14-18	- 8단계와 5/8단계에서의 규격안과 지역규격초안 관련 문장 · 8단계와 5/8단계 각각에서의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GSFA)의 식품첨가량

분과위원회	개최 일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FA 식품분류체계의 개정초안 · 5/8단계에서 국제 식품첨가물 품목번호 부여체계에 관한 개정초안 · 5/8단계에서 식품첨가물의 성상 및 순도에 관한 규격초안. · 5단계에서의 규격초안과 관련 문장
분석 및 시료채취분과 (CCMAS)	2011. 3.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단계의 지침서(안) · 측정 불확실성에 대한 개정지침서(안) · 분석과 시료채취 방법 · 천연광천수 분석방법 등의 다른 단계에서의 Codex 규격의 분석방법
유지류분과 (CCFO)	2011. 2.2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단계와 5/8단계의 지침서(안) · 식물성 오일의 개정표준안: 팜 커널 올레인과 팜 커널 스테아린 포함. · 대용량 식용 유지의 저장 및 운송에 대한 지침: 이전의 허용 화물 목록에 포함된 물질의 허용 가능 평가 기준안 · 대용량 식용 유지의 저장 및 운송에 대한 지침: 이전의 허용 화물 목록안 · 대용량 식용 유지의 저장 및 운송에 대한 지침: 이전의 허용 화물 목록초안
식품위생분과 (CCFH)	2010. 11.29-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단계에서의 규격초안과 관련문서 · 닭고기의 캄필로박터 및 살모넬라종의 관리에 대한 지침서 초안 · 천연 광천수의 수집, 유통, 판매를 위한 국제권장 위생실행 규범의 개정초안
식품중 동물용의약 품진류분과 (CCRVDF)	2010. 8.30-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단계 또는 5/8단계에서 규격안과 규격초안 그리고 관련 문장 · 8단계에서 나라신(돼지 조직)과 틸미코신(닭, 칠면조 조직)에 대한 최대잔류허용치 규격안
영양 및 특수용도 식품분과 (CCNFSDU)	2010.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단계의 지침서(안) · 영양표시 지침서에 대한 부속서 초안: 일반인을 위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일반원칙
가공과채류 분과 (CCPFV)	2010. 10.2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 대한 수정안 · 가공된 과·채류 분과 위원회의 참고용어에 대한 수정안

분과위원회		개최 일시	주요내용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TFAMR)	2010. 10.18- 22	- 8단계에서의 식품유래 항생제내성의 위해성 분석을 위한 지침서(안)
	FAO/WHO 유럽지역조 정위원회 (CCEUROPE)	2011. 7.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차 위원회에서 폴란드를 지역조정국으로 지정하는데 동의 신선한 버섯 “살구버섯”과 터키 전통음료 “아이란”의 지역규정 개정에 동의
지 역	FAO/WHO 복미 및 남서태평양 지역조정위원회 (CCNASMP)	2010. 9.28-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들과 재정적 의미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경험과 전망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언급, 그리고 Codex, FAO와 WHO가 민간 규범 안에서 채택해야만 한다는 방법에 대한 제 33차 위원회의 제안의 포괄적인 지원 가공 치즈의 규격에 대해 계속 일할 필요가 없음에 동의함 현재는 추적성·제품 추적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음에 동의함 지역에서 Codex 전략계획 2008-2013의 4.5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의 다차원적 조정 촉구”와 5.5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비정부기구의 참여 강화”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 새로운 Codex 전략계획 2013-2018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응과 정보가 있는 설문지를 제공 물리적 활동 그룹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함에 동의함 목적 1 “확대 참여”에서 목적 2, 3 “종합적 참여 강화”, “과학적 / 기술적 참여 강화”으로 Codex 펀드 (Codex Trust Fund)으로 중점을 이동하는데 일반적인 지지의사 표명과 함께 CTF는 국가들이 Codex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구조의 능력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졸업한” 국가들이 계속 Codex 회의에 참석하고 후반부에 CTF 확장을 고려하는 것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동의함 파푸아뉴기니를 북아메리카와 남서태평양지역 조정국으로 임명하는 제3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추천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분과위원회	개최 일시	주요내용
FAO/WHO 아프리카 지역조정위원회 (CCAFRICA)	2011. 2.1-4	- CODEX의 전략적 계획 시행 2008-2013 · 위원회는 제 32, 3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일반원칙에 대한 제 6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제26차 위원회는 문서로 요약되고 특히 다음 문제들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짐.
FAO/WHO 아시아 지역조정위원회 (CCASIA)	2010. 11.22- 26	- 8단계와 5/8단계의 규격안과 지역규격초안 · 식용 사고 밀가루에 대한 지역 규격안 · 칠리소스에 대한 제출된 지역규격초안
FAO/WHO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조정위원회 (CCLAC)	2010. 11.8- 12	- 5/8단계의 과정에서의 규격초안 · 콜란트로 코요테(Culantro Coyote)에 대한 Codex 지역규격초안 · 루쿠마(Lucuma)에 대한 Codex 지역규격초안

자료: <http://www.codexalimentarius.net/web/archives.jsp?lang=en>

2. FAO

FAO는 Codex, WHO와 함께 또는 별도로 식품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회원국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안전품질서비스(Food Quality and Standards Service, AGNS)¹⁷⁾라는 사업을 통해 <표 4-2>에 제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7) <http://www.fao.org/ag/agn/agns/>

〈표 4-2〉 FAO 식품안전품질서비스(Food Quality and Standards Service, AGNS)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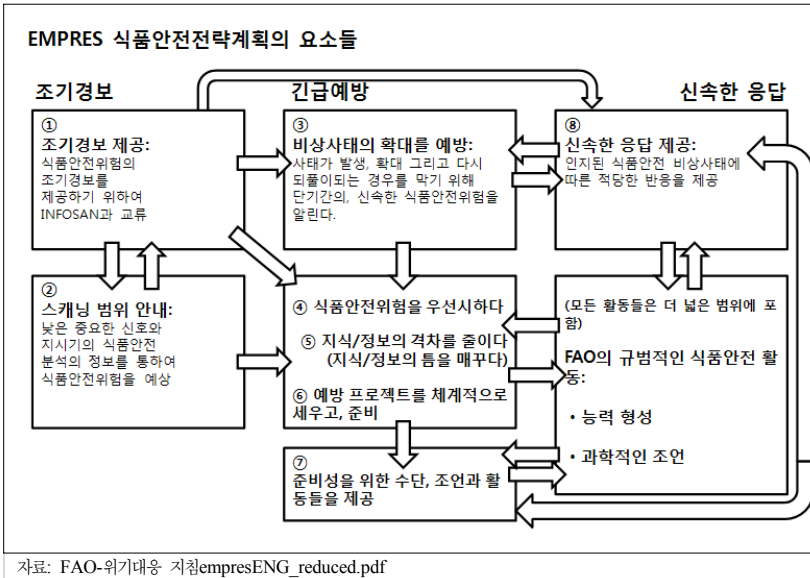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식품안전 (Food safety along the foodchain)	푸드 체인 접근법 (Food chain approach) 식품 무역 (Food trade)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통합적인 식품관리체계 (Integrated food control systems)	식품 관리 시스템 제어 (Managing food control systems) 위해성 분석 (Risk analysis) 법규 및 기준 (Regulations and standards) 우수 사례와 품질 보증 (Good practices and quality assurance) 바이오안보 (Biosecurity) 검사 (Inspection) 실험 품질 보증 (Laboratory quality assurance) 추적가능성 (Traceability) 사료 (Animal feed)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식품 (Food and food products)	강화 식품 (Fortified foods) 신선한 과일과 야채 (Fresh fruits and vegetables) 볶지 않은 커피콩 (Green coffee) 해산물 (Marine products) 육류 및 육류 제품 (Meat and meat products) 우유 및 유제품 (Milk and dairy products) 길거리 음식 (Street foods)
과학적 자문 제공 (Provision of scientific advice)	협의 과정 (Consultative process) 과학적 자문 제공을 위한 FAO/WHO의 구조 (FAO/WHO framework for the provision of scientific advice) 개발도상국의 참여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전문가 명단 (Expert roster)
식품과 JEMRA의 미생물 (Micro-organisms in food & JEMRA)	JEMRA 활생균 (Probiotics)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 (Antimicrobial resistance in micro-organisms)

구분	주요내용
식품과 JECFA의 화학물질 (Chemicals in food & JECFA)	JECFA 생물 독소 (Biotoxins) 식품가공에서의 염소 (Chlorine in food processing) 락토펜록수사다이제 (Lactoperoxidase) 곰팡이 독 (Mycotoxins) 잔류 농약 (Pesticide residues) 지방과 기름에 대한 허용가능한 이전 화물 (Acceptable previous cargoes for fats and oils) 멜라민 (Melamine) 다이옥신 (Dioxins)
생명 공학 (유전자 조작 식품) Biotechnology(GM food)	생명공학과 식품안전의 최신 FAO/WHO의 연구 (Latest FAO/WHO work on biotechnology and food safety) 코덱스 태스크 포스 (Codex Task Force) 전문가 상담 (Expert consultations) 유전자 조작 식품의 탐지 (Detection of GM food)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 (Safety assessment of GM food)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 (Labelling of GM food)
나노테크놀로지 (Nanotechnologies)	전문가 회의 (Expert meetings) 다른 활동들 (Other activities)
능력 배양과 교육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코덱스 이러닝 (Codex E-learning) 도구 (Tools) 교육 행사 (Training events)
자료: http://www.fao.org/ag/agn/agns	

FAO는 식품안전에 대한 위기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계획 지침서¹⁸⁾를 발간하였다. 식품안전 위기대응 시스템(Emergency Prevention System for Food Safety (EMPRES Food Safety)) 전략계획(Strategic Plan)은 [그림 4-1]과 같이 8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18) http://www.fao.org/ag/agn/agns/files/FAO-empresENG_reduced.pdf

[그림 4-1] FAO의 식품안전위기대응시스템 전략계획의 8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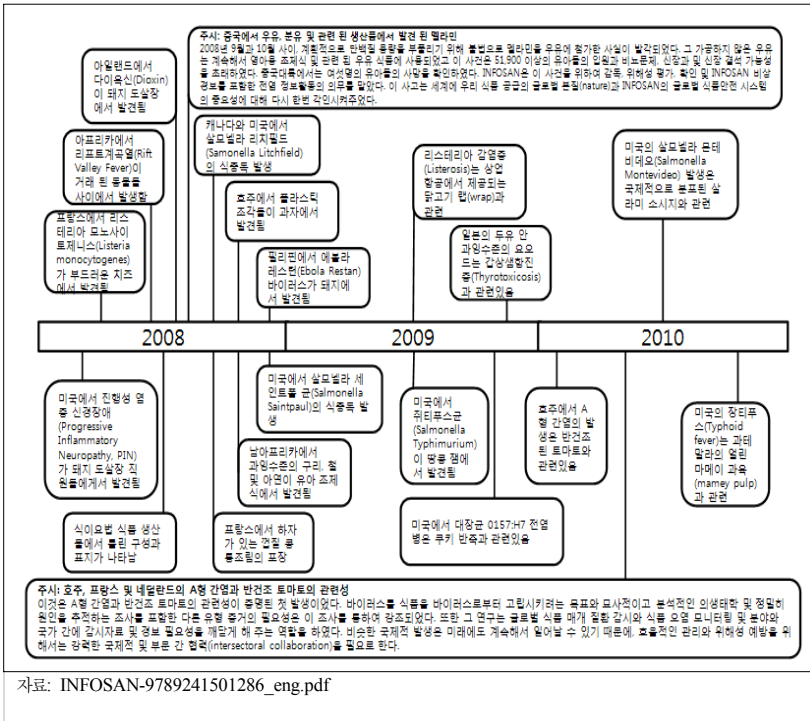


3. WHO

WHO는 Codex, FAO와 함께 또는 별도로 식품안전(food safety), 인수공통전염병(Zoonoses), 식인성질환(Foodborne diseases), 영양(Nutrition)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WHO는 FAO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활동해온 국제식품안전기관 네트워크(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¹⁹⁾ (INFOSAN)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INFOSAN은 현재 식품안전에 관해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19) http://www.who.int/foodsafety/fs_management/infosan/en/

[그림 4-3] IFOSAN의 주요 조기경보 실적(계속)



4. OECD

OECD는 국가간 정책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보건(health), GM식품을 비롯해서 농약(pesticide, biocide), 화학적 안전(chemical safety) 등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안전 이슈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지는 않으며, 농수산(Agriculture and fisheries)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무역(Trade) 부분의 일부 주제로 논의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GM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바이오 안전(Biosafety)으로 규제시각의 조화(Harmonis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와 신중식품 및 사료(Novel Foods and Feeds)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제시된 성과는 식품·사료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핵심적인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합의문서(consensus document)로 총 22종이 작성되었다.

〈표 4-3〉 OECD의 식품·사료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기준 관련 합의 문서 목록

연번	합의문서	연도
1	Oilseed Rape (<i>Brassica napus</i>)	2001
2	Soybean (<i>Glycine max</i>)	2001
3	Sugar Beet (<i>Beta vulgaris</i>)	2002
4	Potato (<i>Solanum tuberosum subsp. tuberosum</i>)	2002
6	Maize (<i>Zea mays</i>)	2002
7	Wheat (<i>Triticum aestivum</i>)	2003
9	Consideration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nimal Feedstuffs derived from Genetically Modified Plants	2003
10	Rice (<i>Oryza sativa</i>)	2004
11	Cotton (<i>Gossypium hirsutum</i> and <i>G. barbadense</i>)	2004
12	Barley (<i>Hordeum vulgare</i>)	2004
13	Alfalfa (<i>Medicago sativa</i>) and other temperate forage legumes	2005
14	An Introduction to the Food/Feed Safety Consensus Documents of the Task Force	2006
15	Cultivated Mushroom (<i>Agaricus bisporus</i>)	2007
16	Sunflower (<i>Helianthus annuus</i>)	2007
17	Tomato (<i>Lycopersicon esculentum</i>)	2008
18	Cassava (<i>Manihot esculenta</i>)	2009
19	Grain Sorghum (<i>Sorghum bicolor</i>)	2010
20	Sweet Potato (<i>Ipomoea batatas</i>)	2010
21	Papaya (<i>Carica papaya</i>)	2010
22	Molecular Characterisation of Plant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2010

자료 : http://www.oecd.org/document/2/0,3746,en_2649_34385_46814658_1_1_1_1,00.html

OECD는 화학적 안전(chemical safety)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항균제, 제초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나노물질의 안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로 상호 정보인정(Mutual Acceptance of Data, MAD) 사업²⁰⁾이다. OECD가 범국가적 기구가 아니라 정부간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이 매우 노동집약적이고 비싸기 때문에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eChemPortal이라는 명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Physical Chemical Properties), 환경적 운명이나 행동(Environmental Fate and Behaviour), 환경독성(Ecotoxicity), 독성(Toxicit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 생산되는 자료의 질 관리를 위해 우수실험실운영규정(Good Laboratory Practice, GLP) 도 마련하고 있다.

〈표 4-4〉 OECD의 화학적 안전 관련 주제

화학적 안전 관련 주제 목록
살생물제(Biocides)
화학물질 사고(Chemical Accidents)
화학분류 및 표시(Chemicals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화학 물질의 위해성 평가(Chemicals Hazard/Risk Assessment)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Chemicals Risk Management)
화학물질 시험 - 지침(Chemicals Testing - Guidelines)
기존 화학물질 조사에 대한 협력(Co-operation on the Investigation of Existing Chemicals)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신규 화학물질(New Chemicals)
농약(Pesticides)
오염물질 확산과 이전 등록(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제조 나노물질의 안전(Safety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자료: http://www.oecd.org/document/41/0,3746,en_2649_34365_1890473_1_1_1_1,00.html.

20) http://www.oecd.org/document/41/0,3746,en_2649_34365_1890473_1_1_1_1,00.html

제2절 미국

1. 개요

미국의 식품안전관리는 6개 부처가 품목 및 제도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²¹⁾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DHHS)는 일반식품의 안전관리는 물론, 사료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까지 수행하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등이 있다.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식육과 알 제품 관리, 동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한다. 소속기관으로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FSIS) 등이 있다.

환경보호처(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는 장관급 독립기구로 농약 및 비료에 관한 규제, 식품은 물론 사료의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한다.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 소속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국립해양수산물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²²⁾은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자율규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광고 부분을 담당하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산하 알코올담배 총기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ATF)은 주류를 담당한다.

21) 국외 식의약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정책동향 파악, 2008, 보시연·식약청, 권노성

22) <http://www.nmfs.noaa.gov/>

〈표 4-5〉 미국의 식품안전관리 담당 기관 현황

기관명		소관업무
보건후생부 (DHHS)	식품의약국(FDA)	- 일반식품, 건강식품 안전관리 - 사료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
	질병통제센터(CDC)	- 식중독 조사
	국립보건원(NIH)	- 식이보조제(dietary supplement) 관련 정보 제공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	- 식육 및 알 제품 관리
환경보호처(EPA)		- 잔류농약기준, 농약승인 및 비료 규제
상무부(DOC)	국립해양수산물국(NMFS)	- 수산물 자율규제 프로그램
연방거래위원회(FTC)		- 광고 등
법무부(DOJ)	알코올담배총기국(ATF)	- 주류 안전관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11.

식품안전 관리 다원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관련 정부기관들은 식품안전 대표 홈페이지(www.FoodSafety.gov)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중장기 계획으로는 FDA와 FSIS가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별 전략계획과 2009년 7월 식품안전 작업그룹의 제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

2.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

오바마 정부 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보건후생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이 공동의장을 하는 식품안전 작업그룹(Food Safety Working Group, FSWG)²³⁾이 2009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 그룹에서는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을 기획하였으며, 현재 관련 기관이 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계획의 기획과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5월 13일 보건후생부 장관과 농무부 장관의 기초연설 이후, 상하 양원 의원, 담당 정부기관, 주요 민간기관의 대표가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제에 대해 5가지 유형의 질문을 각각 하는 형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표 4-6〉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의견 수렴 질문서

주제	질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회복촉진 - 위해성에 근거한 감시 및 집행 확대 - 예방에 중점 - 효과적으로 자원 활용 - 모니터링 강화 및 위해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원칙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원칙의 틀이 제대로 잡혀있는가? - 각각 또는 상호 연계 속에서 연방정부, 주·지방 정부, 산업과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 연방정부는 새롭거나 확장된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 현재 연방정부의 식품안전활동은 확대, 축소, 또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연방정부, 산업계, 주·지방정부, 외국정부, 기타 기관들이 각각 또는 상호간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 성공을 위한 장벽과 기회는 무엇인가? - 그밖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제안은?

자료: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

2009년 7월 1일, 워킹그룹은 대통령에게 기본 원칙을 제출했다. 워킹그룹은 현대적이고, 잘 계획된 식품 안전 시스템 개발을 위한 3개의 핵심 식품 안전 원칙을 밝혔다.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은 최종적으로 2009년 7월 7일 부통령에 의해 발표되었다.

- 원칙 1: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
- 원칙 2: 효과적인 식품 안전 감사와 집행은 좋은 자료 및 분석에 의존
- 원칙 3: 식인성 질환의 발생은 신속하게 확인되고 중단되어야 함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O157:H7과 같

23)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

이 직접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현장의 식품안전 목표와 함께, 역추적·대응시스템, 연방식품조직과 같이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표 4-7 참조).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O157:H7의 경우, 계란, 계육, 쇠고기, 야채와 같은 원인식품에 대한 저감화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역추적·대응시스템의 경우에 각 기관별로 수행중인 주요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연방식품조직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협력 강화와 함께, 핵심기관인 FDA와 FSIS에 식품안전 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별도로 첨부하였다.

〈표 4-7〉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

분야	주요 내용
살모넬라균	계란의 살모넬라균 예방 계육 식품류에서의 살모넬라균 위험 예방
대장균 O157:H7	쇠고기 가공시설에서의 집행 강화 잎채소, 멜론, 토마토의 오염 방지
국가의 역추적 및 대응시스템	산업 상품 추적 시스템 개발 통합 재난대응체계 개발 공중 보건 역학 프로그램 강화 비상운영절차 업데이트 주 정부 능력 개선 개인 경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새로운 식품 안전 정보 전달 기술 이용
개선된 연방 식품 안전 책임 조직	횡단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방정부의 협력 강화 명확한 책임과 개선된 의무(FDA, FSIS 식품안전 담당 차관장신설) 근대화 법령

자료 :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ContentKeyFindings/HomeKeyFindings.htm>

지금까지 FDA, FSIS, CDC 등 정부 기관은 〈표 4-8〉 과 같이 후속조치를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7월 7일에는 의회에서 FDA 식품안전 현대화법(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이 통과되었다.

〈표 4-8〉 미국 정부기관의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 후속조치

구분	날짜
식품안전의 과정 평가: 현재 상황 및 미래의 방향: FSIS, FDA 및 CDC가 포트랜드(Portland) 공공 회의에서 세부적 내용 발표	2010.09.22
정부 기관 발표 과정 식품안전 업무그룹 개선 전략의 첫 해	2010.07.09
대통령의 식품안전에 관한 진술문	2010.07.07
FSIS, FDA, and CDC의 식품안전 과정 평가	2010.06.29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증에 대한 새로운 성과기준 발표	2010.05.10
FDA의 운송중 식품안전을 위한 촉진	2010.04.30
USDA의 식품안전 향상의 새로운 법에 대한 견해 추구	2010.03.25
FDA, FSIS, CDC의 식품안전 프로그램 성과 평가에 대한 방법을 위해 협력	2010.03.03
공공회의에서 차관 대표(Deputy Undersecretary Mande)에 의한 비평	2010.03.30
USDA와 FDA의 생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노력	2010.02.18
FDA의 살모넬라 몬테비데오(Salmonella Montevideo) 발생에 대한 조사 진술	2010.01.29
FDA가 멕시코시티 지원(Mexico City Post) 개설을 포함하여 미국 밖으로 영역을 넓힘	2009.12.15
USDA와 HHS의 식품안전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세관심사의 수입식품안전센터 개설	2009.12.09
FDA와 APHIS로부터의 식품방어 수단은 농부와 생산자들에게 약점 평가를 도와줌	2009.12.04
FDA와 FSIS는 안전하지 못한 식품 생산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하며 식품 매개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이 목표	2009.11.05
농업 장관인 Tom Vilsak의 최근의 대장균 뉴스에 대한 의견을 언론에 발표	2009.10.05
USDA의 FDA의 새로운 식품 안전 규율을 위한 협력, 산업 생산을 위한 기관들의 연합	2009.10.05
농업부 장관인 Vilsack과 건강복지부 장관인 Sebelius의 미국의 새로운 식품공급 안전 전략을 공표	2009.07.31
FDA의 토마토, 입줄기 채소 및 멜론에 대한 초안 안내	2009.07.31
USDA와 HHS의 식품 매개 질환 발생 응답에 대한 칭찬	2009.07.15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식품안전 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공약 발표	2009.07.07

자료: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ContentNewsArchive/HomeNewsArchive.htm>

3. FDA 전략 계획

FD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전략 우선순위 (STRATEGIC PRIORITIES)」에 관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략목적은 식품과 의약품, 담배, 조직관리로 구분되며, 식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식품안전과 영양으로 세분된다.

〈표 4-9〉 FDA 전략 : 식품안전을 위한 장기 목표

장기목표	주요전략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과학기반의 예방통제를 수립함.	가장 큰 위험을 먼저 다루기 위해 표적 예방통제의 개발을 우선으로 함. 지식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함. 예방통제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함
국내 및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방통제를 달성함.	통합적 식품안전 시스템 마련을 위해 공중보건, 산업계, 규제기관의 자원과 정보를 활용함. 현대화된 시찰, 조사, 집행시스템을 마련함. 사건에 대한 준비성, 반응성, 소통능력을 개선함. 수입품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함.
공중보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과학적 역량을 확립함.	향상된 의사결정을 위해 예측능력 및 위해성 분석능력을 향상시킴. 규제 연구와 규제방법개발을 우선시하고, 통합 및 향상시킴.

자료: 미국-FDA 전략 계획 UCM226907.pdf

〈표 4-10〉 FDA 전략 : 식습관과 영양을 위한 장기 목표

장기목표	주요전략
소비자가 더욱 건강한 식습관을 선택하고 만성질환과 비만을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적시적인 정보를 제공함.	더욱 건강한 식습관을 정립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음식포장과 식당메뉴에 표기되어 있는 식품영양표를 개선함 개정된 애원동물 식품표시 및 정의 제도와, 동물 사료를 위한 기준을 시행함.
고영양식품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식품 재조리를 권장함.	가공식품의 나트륨함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차원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 표시 및 그 밖의 시행을 통해 향상된 상품표시제도를 마련함.

자료: 미국-FDA 전략 계획 UCM226907.pdf

4. FSIS 전략 계획

FSIS는 현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는 5개년 중장기 전략 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 모두 6개의 전략목적(strategic goal)을 제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관련된 주요 목적 및 목표(objectives)는 다음과 같다.

〈표 4-11〉 전략목적(strategic goal) 달성을 위한 목표(objectives)

전략목적 (strategic goal)	목표(objectives)
공중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 집행체계 및 시행 강화	위해성 기반 검사(risk-based inspection)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에 근거한 관리통제의 확대 식품안전 법과 규칙의 위반에 대하여 엄격한 실행 활동과 제재
FSIS의 공중위생 보호 접근에 있어서 위해성 분석과 취약성 평가의 사용 강화	국가와 식품 안보 정책 및 체계의 관련성 개선 위해성 평가 증가 식품방어, 프로그램 완전성 및 자원관리의 빠른 확인과 취약성 대처 공중위생 정보를 제공하는 소스 증가 개발·실행되는 기능적인 식품 방어 플랜을 가진 FSIS 규제대상 기업 수 증가
과학의 발달과 위협에 근거한 정책 및 시스템의 강화	위해성 예측, 역학 자료, 평가와 다른 자료에 기반한 공중위생 정책 증가 공중위생에 대한 그들의 영향을 기반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정책 개발 및 지원활동 증가 평가에서 찾아낸 조직 취약성을 대처하기 위해 발전된 식품 방어 정책, 프로그램 및 개입 증가 프로그램 평가와 다른 조사결과들에 의거하여 위해성 기반 검사 체계 강화 위해성기반 검사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통합정보 기술 및 정책개발 정책의 개발 및 실행을 통한 ‘건강한 사람들 2010’과 ‘건강한 사람들 2020’의 목표와 일치하는 요리된(RTE식품), 혹은 요리되어 있지 않은(NRTE) 상품에서 살모넬라 감소 정책의 개발 및 실행을 통한 ‘건강한 사람들 2010’과 ‘건강한 사람들 2020’의 목표와 일치하는 대장균 O157:H7과 다른 시가독소 대장균(STEC) 감소 정책의 개발 및 실행을 통한 ‘건강한 사람들 2010’과 ‘건강한 사람들 2020’의 목표와 일치하는 요리된(RTE식품), 혹은 요리되어 있지 않은(NRTE) 상품에서 감소된 리스테리아.

전략목적 (strategic goal)	목표(objectives)
기관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튼튼한 자료수집과 분석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강화	지원활동, 검사, 수락 및 실행 노력을 연결하는 통합 IT
기관의 임무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반의 개발과 유지 강화	모든 FSIS 프로그램을 위한 관리 통제 및 운영 절차 개선
공중위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의 영향과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강화	회의 범규 규정과 식품 방어 프로그램에 있어 그들을 돕는 기업과 외국에 널리 확산된 복지 프로그램 생산 및 유통 안전 중에서 식품안전 및 식품 방어의 유지를 장려하는 기업, 소비자 및 식품 취급자에게 널리 확산된 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 확인된 주요 연구는 연구안건을 형성하는 공적/사적 독립체와 함께 일할 필요가 있음 공중위생 우선권과 식품 방어 계획과 관련하여 내,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자료: 미국-FSIS Strategic_Plan_2008-2013.pdf

제3절 유럽연합

1. 개요

EU 집행위원회의 식품안전담당기구로는 보건소비자보호총국(DG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DG SANCO),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가 있다.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은 식품안전 및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위해성 관리를 담당한다.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존의 공중보건집행기구(Public Health Executive Agency)가 건강소비자 집행기구²⁴⁾(Executive Agency for Health and Consumers, EAHC)로 '05년 확대 개편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식품안전 관련 교육²⁵⁾과 함께 다른 보건 및 소비자 관련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품안전 및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위해성 평가를 담당한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식중독 등의 확산을 모니터링 한다. 식품안전 관련 연구는 연구총국(DG for Research)이 담당한다.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은 물론 유럽식품안전청도 소규모의 단기간 연구만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EU 차원에서는 2000년 발표된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 이후 수립한 중장기계획은 없다. 다만, 유럽식품안전청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보건소비자보호총국과 달리 중장기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 보건소비자보호총국 연간계획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의 연간계획은 소비자정책(Consumer Policy), 공중보건(Public Health) 식품 및 사료안전·동물보건·동물복지·식물보건(Food and Feed Safety, Animal Health, Animal Welfare and Plant Health)의 3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최근 주요 정책과제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감 구축과 함께, EU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식품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인 절차(authorisation processes)를 정비하는 것이다.

24) <http://ec.europa.eu/eahc/about/about.html>

25) <http://ec.europa.eu/eahc/food/food.html>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성과지표는 식중독 발생 빈도로 전년도에 비해 매년 BSE 발생을 30%, 살모넬라 식중독을 5%씩 줄이는 것이다.

〈표 4-12〉 EU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의 식품안전 분야 성과지표

전체적 목표	성과 지표			
목표	지표	목표(장기)	주요 지표	현재 상황
3. 식품의 안전과 위생 보장	유럽의 주된 식중독(BSE 및 살모넬라균) 발병률	지속된 감소 추세	매년 전년도에 비해 사람에게 발병하는 BSE 사례 30%와 5% 살모넬라 사례 감소	2004년과 2009년 사이 연도별 BSE 사례의 30-45% 감소 및 이전 해에 비해 인류 살모넬라 사례의 5% 감소

자료 : http://ec.europa.eu/atwork/synthesis/amp/doc/sanco_mp.pdf

3. EFSA(유럽식품안전청) 전략계획

EFSA에서는 2009~2013년도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내외적 요인을 지속가능성, 세계화, 과학과 혁신, 인구와 소비자의 변화 등 사회의 변화, 조직 및 정책 틀의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표 4-13〉 EFSA의 식품안전관련 대내외적 요인 분석 결과

구분	주요내용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수율, 무질병 원재료, 농화학 적용에 기반한 기존의 집약적 농업방식이 환경, 동물복지 중시 방향으로 전환 추진 - 기후변화에 따라 동식물 질병패턴의 변화와 함께 농약 사용 등의 패턴 변화 예상 - 신흥국의 경제력 강화, 에너지 가격 상승, 남반구의 가뭄, 바이오에너지의 사용 증가가 식품공급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 (Globalis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다양한 식품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수출입 물량이 많아지고 국가간 장벽이 무의미해짐 - 매우 많은 식품사료 조기정보건수(2007년 7300건) - 지역적 문제가 국가적·전세계적 문제로 비화
과학과 혁신 (Science and inno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본 전략은 과학과 혁신을 EU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인으로 인식 - 식품과 사료생산에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위해성 평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에서 새로운 도전 요구 - 분석과 검사에서의 혁신은 위해성 평가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 - 유전체학(genomics),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시스템 생물학(systems biology),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의 발전은 위해성 평가에 상당한 의미
인구와 소비자의 변화 등 사회의 변화 (Changing Society: sociodemographic and consumer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인구의 증가, 소아 비만의 증가 - 환경 문제와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증가
조직 및 정책틀 (Organisational,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 조직 규모의 증가

자료: EU-EFSA-stratplan09en2.pdf

대내외적 요인을 감안하여 농장부터 식탁까지 통합적 접근, 규제 승인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 EFSA 소관 분야 자료의 수집·배포·분석 조정, 위해성 평가 방법에서의 EFSA의 최선도 위치,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EFSA 업무의 대응성 등 강화라는 6가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각 전략별로 제시한 목표, 계획, 성공지표는 <표 4-14>와 같다.

<표 4-14> EFSA의 주요 전략목적 및 계획과 성공지표

전략목적	목표	계획	성공지표
농장부터 식탁까지 식품체인과 관련된 과학적 지문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적 접근에 초점 (Focus on provid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delivering scientific advice associated with the food chain from field to plate)	1)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접근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접근을 개발하기 위해 위임 검토 위원회를 사용 - 패널과 네트워크 사이의 공동 혹은 합작 업무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SA에 유효한 관련된 기술의 전 범위를 반영하는 의견 - 공동 활동의 수
	2) EFSA는 그것의 권한을 이행하기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지식과 정보의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요청은 요구된 전문기술의 전 범위를 반영 - 전문기술, 자료 및 정보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국제기구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전문지식 확인에 있어서 효과적임. - 정기 전문가 만족 조사의 개선된 결과.
	3) EFSA의 평가의 질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검사 프로그램과 후속조치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검사 프로그램 결과의 개선
규제 승인 절차에 필요한 제품, 물질, 정보표시에 대한 높은 품질의 평가를 적시에 제공 (Provide timely, high-quality evaluation of products, substances and	1) 허가와 관련된 작업흐름은 효율적이고 능률적하도록 확실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를 처리하는 내부 절차의 정기적 검토 - 과학적 협력에 기반을 둔 회원국과, 36번 조항과 다른 협력방법을 통해 그들의 조언의 통합을 확실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의견의 적시 전달에 관련된 지원과 중요한 검토 - 36번 조항과 조달 프로젝트의 수

전략목적	목표	계획	성공지표
claims subject to the regulatory authorisation process)	2) EFSA와 회원국 내의 자원의 최적 사용을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욱 정확한 업무량, 정보, 그리고 자료의 필요와 과정을 예측하기위해 EU 기관, 산업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함 - 전문 기술, 자료 그리고 정보에의 접근을 확실히 하기위해 회원국, 국제기구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의 더 나은 예측 - 자료와 정보의 개선된 접근
	3) EFSA의 평가의 질을 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검사 프로그램과 후속조치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검사 프로그램 결과의 개선
EFSA 소관 분야의 자료를 수집, 배포, 분석하는 작업을 조정 (Coordinate the collation, dissemination and analysis of data in the fields within EFSA's remit)	1) EFSA의 위탁분야에 있는 범유럽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유럽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구성하고, 주도권을 적절하게 정비 - 정보수집 프로젝트를 위한 우선권은 동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SA에 의해 조직화된 유럽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EFSA와 회원국에 의해 발행된 보고의 수 - 동의된 일정까지 전달되는 자료수집 프로젝트
	2) 최근의 위험요소를 확인해서 EFSA의 역량을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검사 수용량을 포함하는 최근의 위험요소, 자료 수집과 분석 - 국가권위, 국제기구와 EU기관의 최근의 위험요소에 대한 네트워크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인으로 부터 전달받는 최근의 위험요소에 관한 연례보고서

전략목적	목표	계획	성공지표
유럽과 전세계적으로 위해성 평가 방법과 실행에서 EFSA가 최선봉에 위치 (Position EFSA at the forefront of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practices in Europe and internationally)	1) 유럽의 위험평가 방법론을 조화시키고, 진척시킴	- 회원국과 다른 유럽단체와 함께 조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개발하고 동의함	- EFSA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전달되는 중요한 유럽 조화 프로젝트에 관련됨
	2) EFSA는 위험평가에 있어서 혁신에 뒤떨어지지 않고, 위험평가 방법론의 개발에 활발히 기여하여 국제적인 공개 토론에 충분히 관여함을 확실하게 함	- 선견활동과 연구단체, 이해관계자와 국제기구들과의 대화를 좀 더 강화함 - 위험관리집단에 있어서 EFSA의 위치를 통합하고, 종합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행사와 교육 연수를 편성함	- EFSA는 위험관리 쟁점을 제기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침을 제정할 수 있음 - 과학후련활동 프로그램과 학회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위해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EFSA와 EU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강화 (Reinforce confidence and trust in EFSA and the EU food safety system through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and dialogue with partners and stakeholders)	1) EFSA와 EU 식품 안전 시스템의 신뢰 증가	- EFSA의 주소비자 요구와 위험지각의 이해를 강화 - 자문포럼/중심 네트워크와 협동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통한 회원국에 있어서 EFSA의 영향을 확장함	- 위험 지각과 결과 분석의 유로바로미터 조사 - 주 소비자 연구에 따른 EFSA의 업무평가에 있어서의 인식과 신뢰
	2) EU에 걸쳐 위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증가시킴	- 조기경고방법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조화를 포함하는 유럽위원회와 회원국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개발함 - 해당당국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청중에게 맞춰진 메시지의 지원 개발	- 위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일관성은 매체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측정함 - 사용자/주 소비자 연구에 따른 메시지의 관련성 평가

전략목적	목표	계획	성공지표
EFSA의 대응성, 효율성, 효과성 강화 (Assure the responsivenes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FSA)	3)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EFSA의 활동을 더 개발 - EFSA 우선권, 업무 프로그램과 계획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와의 회담의 수 - 이해관계자 활동의 일정한 검토
	1) EFSA의 관리 시스템과 사회기반시설은 적합하고, 우선순위와 업무 환경에 맞도록 확실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개선과 변화 시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SA 성과의 유용성, 적시성
	2) 직원과 전문가 모두를 위한 활기차고 보람 있는 근로 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SA의 업무 환경과 활동 시행의 연간 평가 분석 결과 - EFSA의 업무 지원 효과성 측정하는 전문가의 상황에 대한 연간 조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이직률 - 직원 만족도 - 패널 회원에 대한 전문가 재신청률 - 전문가 만족도
	3) EFSA의 즉각적인 대응을 확실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위기대응절차 재검토 - 긴급한 과학적 자문에 대한 빠른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비상 매뉴얼과 성공적인 위기대응 연습 - 긴급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

자료: EU-EFSA-stratplan09en2.pdf

제4절 일본

1. 개요

일본의 식품안전관리는 내각부를 중심으로 소비자청,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소관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다.

내각부(우리의 총리실)의 소비자정책 특명담당대신은 각료(우리의 국무위원에 해당)로 정부 차원의 식품안전 위기대응을 주관한다. 내각부 소속 소비자청은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며, 다른 기관의 식품안전 기준 등에 대한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다.²⁶⁾ 위기대응 과정에서는 소비자청이 사무국의 역할을 한다. 내각부 소속인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해평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에 준하는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주로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등의 위해관리기관으로부터의 평가 요청을 받거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도 하며, 매년 위해평가업무에 관한 정량적 목표를 세워 시행하고 있다.²⁷⁾

후생노동성은 식품의 수입·제조·유통·소비단계의 위해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확보, 식품의 잔류농약, 식품중의 오염물질 대책, 식품첨가물의 안전 확보, 건강식품, 식중독방지대책, 광우병(BSE)대책,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확보, 기구, 용기포장, 장난감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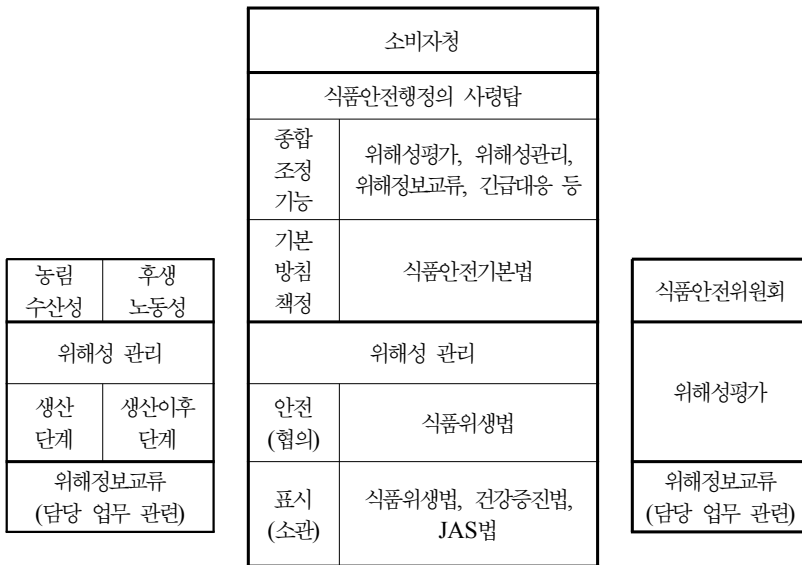
26) 과거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관장하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표시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표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장함. 다시 말해, 해당 법률의 대부분 사항은 후생노동성 등이 집행하지만, 표시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청이 직접 기획·집행함. 다만, 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사무 중 상당수(특별용도표시의 허가 및 재심사 청구, 영양표시기준의 제·개정, 과대표시 금지의 범위)는 내각총리대신이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하지 않도록 법령¹⁾에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후생노동성 대신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기타 건강증진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입각하여 식사섭취지군을 정하며, 내각총리대신은 식사섭취기준에 따라 과거 후생노동성 대신이 정하던 영양표시 기준을 직접 정함(소비자청 및 소비자 위원회의 설치에 동반하는(어울리는) 개정 식품위생법 등의 시행에 대해서, 09.8.28, 후생노동성 건강국장, 의약식품국장)

27) <http://www.fsc.go.jp/iinkai/index.html>

안전 확보의 범위에 대하여 매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지자체에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²⁸⁾. 이에 따른 한 예로서 동경도의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후생노동성 소속 기관 중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검역소, 지방후생국,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있으며, 독립행정법인(우리의 정부출연기관과 유사)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가 있다. 농림수산성은 생산단계 위해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4-4] 일본의 식품안전행정체계



자료 : 식품안전위원회 소비자행정추진회의 제출자료(09.7.23) 재편집.

중앙에서 범부처 차원의 식품안전 계획은 없다. 대신 내각부의 소비자청이 수립하는 소비자 기본계획이 범부처의 계획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소관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식품안전 분야를

28)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dl/pamph01.pdf>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의 지방정부는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47개 도도부현 중 41개 도도부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계획과 액션플랜을 수립·시행하고 있다.²⁹⁾

2. 소비자청 기본계획

소비자청은 2010년 11월 소비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면상으로 이 계획은 소비자청의 소관업무에 대한 계획이지만, 소비자청이 사실상 거의 모든 식품안전 관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보니 실제로는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물 소비안전기술센터에서 DNA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식품표시에 대한 감시강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 관리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식품안전청의 출범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는 소비자청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식품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범부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계획은 <표 4-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권리 증진 및 자립 지원,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협력 및 소비자정책 실효성 제고, 경제사회발전에 대응이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계획으로 식품안전행정체계 정비, 식품표시관련 법률 일원화 및 표시 규정 정비, 유기농산물에 관한 소비자 교육 등의 사업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29) http://www.shoku-net.pref.gunma.jp/jiti-net/net_sisaku.htm

〈표 4-15〉 일본 소비자기본계획 중 식품안전 관련 사항

구분	주요내용
소비자의 권리 존중과 소비자의 자립 지원	식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기본적 사항을 내각부 및 소비자청에 있어 체제정비를 도모한 후 개정,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식품안전에 관한 리스크 관리는 과학에 근거하여 국제적동향이나 국민의 의견을 배려 필요한 조치 강구 식품사업자나 소비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리스크 관리시책에 반영시켜 리스크 관리조치 강구
	리스크 평가기관의 기능강화나 리스크 관리기관을 일원화 할 식품안전청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연대 하에 검토
	농림물자규격조사회 등의 심의를 걸쳐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JAS 규격 도입 추진
	식품감시제도 계획에 의거 수출국정부와의 국간 협이나 재외공관을 통하여 현지조사 등의 실시, 담당관의 증원, 정보 등의 입수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연대 추진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감시체제의 강화 도모
소비자의 자주적·합리적 선택 기회 확보	식품표시에 관한 일원적 법률 제정 등 법체계에 관해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의 식품표시의 관계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운영하는 것과 함께 현행제도의 운영개선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 검토
	가공식품에 있어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의무부착 확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의무 확대 및 식품첨가물 표시에 관한 국제적 대응상황 관련 외국과의 정보교환과 연구수행 검토
	농림수산물 소비안전기술센터에 의한 DNA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식품표시 감시를 시행
소비자 개발활동 추진과 소비생활 교육 충실	식품안전이나 식생활과 건강에 관해서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정보제공 추진
	국민의 적절한 식생활 선택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성, 영양, 식습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추진

구분		주요내용
지방공공 단체 등과의 협력과 소비자 정책의 실효성 확보·향상	사업자나 사업자단 체와의 자주적 대처 촉진	식품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도모하기위해 식품업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기업행동 규범, 각종 매뉴얼의 책정, 적절한 운용 방법을 도모 법령준수나 기업·사회논리 준수 철저 촉진
경제사회 의 발전 대응	환경을 배려한 소비행동 과 사업 활동 촉진	유기농업에 관해서는 유기농업추진법 및 동법에 근거 기본방침 준수 촉진
		유기농산물 등 환경을 배려한 농산물에 관해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를 촉진하고 유기농업의 추진에 근거 유기농업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의 개최
		화학비료·농약의 저감하는 농업자에 대한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소비자의 이해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활동 등을 추진
		식품관련 사업자 등에 의한 식품 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및 열회수, 식품폐기물 등의 발생의 억제 및 감량에 관한 우수한 업체를 표창 전국에 소개 보급개발 도모

자료: 일본-소비자기본계획-100330keikaku.pdf

3. 농림수산물 기본계획

농림수산성은 소비자청은 2010년 3월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³⁰⁾을 수립하였다. 이 중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표 4-16>과 같다.

농림수산성은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해요인 함유실태조사와 함께 GAP, HACCP를 통해 각 단계별 안전관리 제도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력추적제를 모든 식품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국과의 협력 강화 등 일부 내용은 앞서 살펴본 소비자청의 기본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인다.

30) <http://www.maff.go.jp/j/syouan/seisaku/plan/index.html>

〈표 4-16〉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중 식품안전 관련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식품의 안전성의 향상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산 농립수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위해요인의 함유실태조사와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침 등 제시
푸드체인에서의 대응 검토 확대	농업생산공정관리(GAP) 도입이 미진한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산지에서 도입 확대 추진 HACCP의 경우 도입비용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이 도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여 「식품의 제조 과정의 관리 고도화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기초한 장기 저리 융자 확대와 함께 현장 책임자 등 양성 추진 HACCP 도입이 어려운 영세업체는 도입 전제조건인 일반적 위생관리 철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이나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조사 등 실시하고 관계부서와의 제휴추진 쌀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제(traceability) 도입 촉진하고 기타 식품에 대한 입·출하 기록 작성보존 의무화 등 검토
식품을 대하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점차 확대

자료: <http://www.maff.go.jp/syouan/seisaku/plan/index.html>.

4. 동경도 기본계획

동경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식품안전추진계획³¹⁾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도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의 체계는 <표 4-17>과 같다. 3대 기본방향을 사업자 책임에 의한 식품의 안전 확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된 사전방지 및 확대 방지, 관계자에 의한 상호이해와 협력 촉진으로 정하고 각 과제별 40개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1)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kuhin/jourei/keikaku_2.html

〈표 4-17〉 동경도의 식품안전추진계획 체계

기본 방향	실행과제	
1. 사업 책임에 의한 식품의 안전 확보	- 사업자의 자주적 위생관리의 추진	1. GAP수법을 포함한 생산위생관리체제의 정비 2. 생산정보제공 식품사업자 등록 제도의 촉진 3. 식품위생자주관리인증제도의 추진 4. HACCP도입지원 및 승인시설의 외부검증의 실시 5. 식품위생추진원제도의 활용 6. 식품위생자치지도원제도로의 지원 7. 도매시장내의 안전·품질 관리자의 활용
	-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8. 농산물이나 가축의 안전대책의 보급지도 9. 식품가공분야의 기술에 관한 보급지도 10. 사업자에 대한 강습회 등의 개최
2.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관된 미연방자·확대방지	-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평가의 추진	11. 가축의 병이나 병해충의 발생상황의 파악 12. 식중독발생동향 및 원인조사 13. 식품안전에 관한 선행적 조사 14. Dioxin류 등의 미량화학물질의 실태조사 15. 해외정보, 학술정보의 수집 16. 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의 운영 17. 식품안전조례에 따른 안전성 조사·조치 권고제도의 활용
	- 식품 등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감시 지도 등의 충실	18. 농약·동물용의약품등 생산 자재의 적정사용에 관한 감시 19. 축산물등의 안전대책 20. 도축장에서의 식육의 안전 확보 21. 우해면상뇌증(BSE)대책 22. 지역감시 23. 광역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24. 수입식품대책 25. 「건강식품」 대책 26. 지주회수권고제도의 운용

기본 방향	실행과제	
	- 긴급시의 체제정비	27. 식품안전대책추진조정회의에 의한 긴급시 대응 체제정비 28. 건강위기관리체제의 정비 29. 도매시장 내에서의 위기관리대응
3. 관계자에 의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추진	- 식품표시의 적정화의 추진	30. 법령·조례에 따른 적정표시의 지도 31. 소비자생활조사원에 의한 조사
	- 교육·학습의 추진	32. 식품안전에 관한 보급계발·정보제공 33. 식품안전에 관한 식육 추진 34. 도민의 자주적 학습에 대한 지원
	- 정보의 유희, 의견의 교류 등 추진	35. 관계자가 한 자리에어 만나 행하는 정보·의견교류의 추진 36. 정보전달역할을 담당하는 관계자 상호이해의 촉진 37. 식물 Allergy에 관한 이해의 촉진
	-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의 반영	38. 식품안전에 관한 심의회 등으로의 도민·업자의 의견반영 39. 도민·업자가 의견요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 40. 상담 등의 적절한 대응
4. 안전을 확보하는 시책의 기초 만들기	- 기초가 되는 조사연구 · 기술개발	41. 식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생산·제조기술의 개발 42. 시험검사법의 개발·개량 43. 식품안전에 관한 기초연구의 추진
	- 인재육성	44. 식품안전에 관련한 인재의 계획적 육성
	- 구시정촌, 정부 등과의 연대	45. 생산단계의 안전 확보에 관련 있는 자치제외의 연대강화 46. 식품위생에 관한 자치단체의 광역적 연대의 추진 47. 식품위생에 관한 특별구 및 보건소 설치시외의 연대협력의 증진 48. 소비생활시책에 관한 자치체 연대 49. 정부나 관계기관과의 연대, 정부위 제안요구

자료: 동경도 기본계획.pdf 재편집.

동경도는 40대 과제 중 중점 추진과제 9개를 별도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4-18 참조). 이들 과제는 <표 4-17>에 제시된 종합체계 중 추진과제에서만 선정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몇 개의 과제를 묶어서 하나의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하였다.

〈표 4-18〉 동경도의 중점추진과제³²⁾

기본 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사업자의 Compliance 의식을 높여 자주관리 향상을 위하여 시책의 충실을 기도한다.	전략적 Plan 1. GAP와 생산정보제공 식품사업 등록제도의 추진 전략적 Plan 2. 사업자가 대처하는 자주적 위생·품질관리의 추진
2. 건강피해의 미연 방지·확대 방지에 역점을 둔 시책의 충실을 기도한다.	전략적 Plan 3. 긴급시의 위기관리체제의 정비 전략적 Plan 4.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평가 전략적 Plan 5. 「건강식품」에 의한 건강피해의 방지 전략적 Plan 6. 수입식품의 안전확보 대책의 충실
3. 먹는 것의 신뢰확보를 향한 도민으로의 정보제공의 충실을 기도한다.	전략적 Plan 7. 식물 Allergy에 관한 이해의 촉진 전략적 Plan 8. 식품표시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적정표시의 추진 전략적 Plan 9. 먹는 것에 관한 Risk Communication의 충실

자료: 동경도 기본계획.pdf 재편집

제5절 중국

1. 개요

중국의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안전법(2009.2.28)에 따라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기준 설정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안

32) 동경도 기본계획.pdf 재편집

전관리 업무 등을 분담하고 있다. 위생행정부문(위생부, 우리의 복지부)은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의 직책, 식품 안전 위협평가, 식품안전 표준제정, 식품안전 정보발표, 식품검역기구의 자질인정조건과 검역규범의 제정, 식품안전 중대사고의 조사와 처벌 등을 담당한다. 품질감독부문(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식품생산, 공상행정관리부문(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식품유통,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식약품감독관리국)은 식품접객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그 밖에 식품안전법에 명시되지 않는 농업부 등이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상급기관으로 현재 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³³⁾. 국무원 부총리인 리커창(이극강), 후이량 위, 왕치산이 각각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2인)이다. 참고로 국무원은 총리 1인, 부총리 4인, 국무원위 5인과 비서장 1인이 참여하는 상무위원회와 각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한다³⁴⁾. 위원으로는 위생부 등 관련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표 4-19〉 식품안전위원회 구성원

구분	직책
위원장(1)	국무원 부총리 1인
부위원장(2)	국무원 부총리 2인
위원(15)	국무원 부비서장, 발전개혁위 부주임, 과기부 부부장, 공업 정보화부 부장(장관), 공안부 부부장, 재무부 부부장, 환경보호부 부부장, 농업부 부장, 상무부 부부장, 위생부 부장, 상공업 총국 국장, 품질검사총국 국장, 식량국 국장,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사무실주임

자료: http://www.gov.cn/zwgk/2010-02/10/content_1532419.htm

33) http://www.gov.cn/zwgk/2010-02/10/content_1532419.htm

34) http://www.gov.cn/test/2008-03/17/content_922434.htm

2. 식품안전정책 방향

중국은 국무원 직속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관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9년 6월 「12·5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이를 시행 중에 있다. 위원회 사무국장³⁵⁾은 2011년 2월 2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기본 시각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식품안전 수준은 그간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등의 노력으로 좋아지고 있으나, 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많고 사건·사고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다보니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산업의 수준, 업체의 책임과 소비구조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식품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진입문턱이 낮다보니 대부분 업체가 영세하고 관리능력도 취약하다. 업체의 책임감도 부족하다. 소비자의 수요도 맛과 향이 좋은 식품뿐만 아니라 편리함, 저렴함, 보관의 용이함 등을 요구하다보니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첨가물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중요한 정책 목표는 <표 4-20>과 같이 5가지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범죄 단속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식품산업 자체의 체질개선 정책도 산업정책과 연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식품안전행정 체계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중국의 현실을 감안해 관련 부처간 업무 분담과 함께 이를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종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35) <http://cpc.people.com.cn/GB/64093/64102/14026644.html>

〈표 4-20〉 중국의 식품안전정책 5대 목표

목표	주요 내용
식품안전관리 심화	주요문제의 집중처리, 전형적 사건의 조사, 범죄세력의 엄중처벌, 식품안전의 숨어있는 문제를 처리
주요 업계에 대한 종합관리	소비량이 많고, 영향범위가 넓은 유제품·식용유·육류·건강식품 등 주요 품종에 대한 안전수준 제고, 특히 종합관리를 통해 유제품 품질안전 상황을 개선
관리감독 역량을 꾸준히 강화	법규 및 기준을 정비 가속화, 자금지원 강화, 위해성 모니터링평가와 검증 강화, 진입관리 엄격 실시, 일상적 관리감독 역량제고, 종합협조능력 강화, 부분별 관리감독업무의 긴밀한 연관성 유지
표면적 현상과 근본 문제를 함께 해결	산업경제정책 발표, 종류별 식품추적관리 실시, 신뢰시스템 구축
홍보와 여론의 지도강화	적극적 홍보 강화와 사건처리 실시간 보도를 통해 식품안전업무에 유리한 여론분위기 조성

자료: <http://cpc.people.com.cn/GB/64093/64102/140266>.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식품안전 정책 추세를 가늠해보는 차원에서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의 동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FAO, WHO, Codex,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간 공조와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FAO와 WHO에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FAO는 2010년 식품안전 위기대응 시스템 전략계획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WHO는 FAO와 함께 식품안전 위기경보 체계인 INFOSAN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은 비단 국제기구 차원만의 의제는 아니다.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불거진 식품안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

대책의 핵심은 추적 및 대응 시스템 정비이다.

둘째,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계획은 대형 사건 발생 이후 단발성으로 수립·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평상시에는 각 기관 별로 연도별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땅콩버터 등으로 인한 식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불거지자 관계부처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후 여기서 마련된 주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을 전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FDA와 FSIS는 기관 중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에 2000년 광우병 사건 이후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를 마련하고 이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계획이 거의 마무리 된 지금 별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 움직임은 없다. 아마도 그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은 집행위원회와 식품안전청(EFSA)이 각각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업무가 안정화된 집행위원회는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위해성 평가를 중심으로 상당기간 발전이 필요한 EFSA는 중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 별도의 범부처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EU와 같이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식품안전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이 활발하다. 중앙정부의 경우는 소비자청과 농림수산성이 각각 소비자기본계획과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일부로 식품안전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동경도 등 41개 도도부현에서 안전안심추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부처간 할거주의가 상당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식품안전 업무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도지사 등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관련 업무를 모두 관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중국의 경우에 국무원 직속 식품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으나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상황에서 아직 산업체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사고가 발생하고, 또한 이런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관련 범죄의 적발·처벌과 함께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종합·추진하는 방향으로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은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 국가별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는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시사점

첫째, FAO 지침 등을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 체계를 재점검·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FAO·WHO)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가 다원화됨으로 인해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에 어려움이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효과적인 추적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중국, 일본과 식품안전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식품안전 관리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신설된 식품안전위원회를 통해 국무원이 직접 정부 차원의 식품안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상무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내부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올해의 8대 중점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은 내각부가 소속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와 소비자청을 활용해 위해성 평가 및 식품표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위기관리 업무는 내각부가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소비자청이 사무국 역할을 한다. 삼국간 식품교역이 많고 어느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이 곧바로 이웃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차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 등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중앙보다 지방에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더 잘 이루어지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남겨 놓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시행하였다. 당장 식품안전관리체계 정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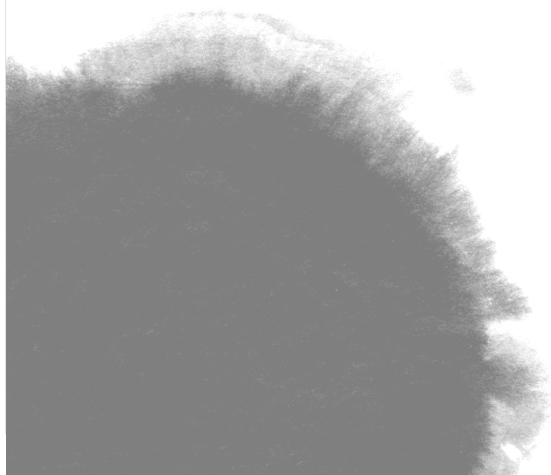
넷째, 역점관리 식중독균의 저감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기본계획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의한 식중독, EU는 BSE 발생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저감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05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취약성 평가





제5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취약성 평가

제1절 식품위생법 제·개정 현황

1. 제·개정 현황

<표 5-1>에는 1962년 10월 10일에 식품위생법 및 하위법령이 제정되면서 2010년까지 제·개정된 내용을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총 181회의 법률 제·개정이 있었고, 모법인 식품위생법이 42회, 시행령이 63회, 그리고 시행규칙이 76회로 나타났다. 111회가 일부 개정이었고, 전부 개정은 10회로 확인되었다.

각 제·개정 회차별로 주요 관점, 세부 개정내용 등은 다음 절에서 세부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표 5-1〉 식품위생법 개정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일부개정	타법개정	전부개정
계	181	111	60	10
식품위생법 ¹⁾	42	22	18	2
식품위생법 시행령 ²⁾	63	35	25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³⁾	76	54	17	5

주 1: 식품위생법 제정(1962.1.20) 및 시행(1962.4.21)

주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정(1962.6.12) 및 시행(1962.6.12)

주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정(1962.10.10) 및 시행(1962.10.10)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제2절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재개정 연혁 및 내용

1. 총괄현황

<표 5-2>에는 1962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2010년까지 제·개정된 내용을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총 76회 개정이 있었고 이중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련된 개정 회수는 22회로 확인되었다.

〈표 5-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관련 개정내용

(단위: 건)

구분	개정 수	비고
총 개정 수	76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개정내용 ¹⁾	22	
시설기준변경	36	
기타 관련 개정내용 ²⁾	18	

주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유흥영업자의 준수사항 제정(1962.10.10) 제정 및 시행(1962.10.10)

주 2: 기타 관련 개정내용에는 시설기준 변경(36건)과 타법개정에 관한 사항(정부조직법 개정 등) 법 조항 신설내용이 포함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1962년 10월 10일 제정 및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자 준수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9조 (유흥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接客부가 영업소 내에서 객과 함께 숙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객이 요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接客부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지 말 것
 3. 위생상 유해한 행위가 없도록 할 것

2. 연혁

<표 5-3>에는 제정이후 총 22회 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연혁별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42조에 집중되어있고, 2009년에 처음 제57조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표 5-3〉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개정법 조항 총괄 현황

번호	시행기준 개정 법조항	개정일	주요내용
1	시행규칙 제19조	1976.1.6	- 유흥업자의 준수사항→음식점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변경
2	시행규칙 제19조	1983.1.15	- 종업원 건강진단, 위생제복착용, 가격표, 휴일제 실시
3	시행규칙 제19조	1983.6.10	- 유흥업소 미성년자 출입 거부
4	시행규칙 제19조	1984.6.8	-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금지외래품, 혐오음식 판매금지) 등
5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0	1987.3.28	- 음식점영업자등의 준수사항→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6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1989.11.30	- 영업자 준수사항 별표 13(당초 별표10), 영업자분류등 - 식품접객영업자→식품접객영업자등 으로 변경
7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1990.12.22	- 식품조리·판매영업자 준수사항 변경
8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1991.12.28	-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 준수사항 변경 - 식품소분판매운반자 준수사항 신설
9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1993.7.3	-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변경,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신설
10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1995.8.31	-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변경, 신설 등
11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1998.10.19	- 먹는물 또는 식품 제조·공정물 수질검사 규정 세부기준 신설
12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1999.12.29	- 영업자 준수사항 변경 및 금지영업행위 추가
13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2000.8.8	- 야생동물 식품의 제조·가공 사용 금지 조치
14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2001.7.31	-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소비자 혼동 유사명칭사용 광고금지)
15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2003.8.18	- 먹는물 또는 식품 조리·세척물 수질검사 규정 세부기준신설
16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2005.7.28	- 위해평가 완료 전 금지식품 제조·가공·판매 금지 신설
17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2006.12.29	- 식품의 거래기록작성, 최종기제일로부터 2년간 보관 신설
18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2008.1.21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 변경, 준수사항 신설
19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2008.6.20	- 쌀 및 배추감치 원산지 표시 신설(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6개월 이상)
20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2009.4.3	-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신설(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21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2009.7.1	- 뷔페영업자 관할 5키로이내 제과점영업자에게 빵류 구매 순납에게 제공(2011년 6월 30일까지)
22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2009.8.12	- 법 조항 항목 변경(당초 법 제42조 별표13에서 변경)

제3절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재개정 연혁 및 내용

1. 총괄현황

<표 5-4>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제·개정 총괄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총 76회의 제·개정이 있었고,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총 36회의 제·개정이 있었다.

<표 5-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관련 개정 내용

(단위: 건)

구분	개정 수	비고
총 개정 수	76	
시설기준 관련 개정내용 ¹⁾	36	
기타 관련 개정내용 ²⁾	40	영업자 준수사항 변경(22건) 포함

주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6 업종별 시설기준 제정(1962.10.10) 제정 및 시행(1962.10.10)

주 2: 기타 관련 개정내용에는 영업자 준수사항(22건)과 타법개정에 관한 사항(정부조직법 개정 등) 법 조항 신설내용이 포함됨.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현행법령 연혁

2. 연혁

<표 5-5>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연혁별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있다.

총 36회의 제·개정이 있었으면 제1회 개정은 1963년 9월 음식점영업의 건물에 대한 구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었고, 가장 최근은 2011년 4월에 시행된 제 36회 개정안으로 옥외시설에서 영업별 음식물 제 공할 수 있는 기한은 2013년까지 연장한 것과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시설기준을 변경(객실을 둘 수 없으나 내부가 보이는 경우 제외)이었다.

〈표 5-5〉 업종별 시설기준 관련 개정법 조항 총괄표

번호	시설기준 개정 법조항	개정일	주요내용
1	시행규칙 제26조 별표6	1963.09.30	- 음식점영업의 건물의 구조 변경, 신설
2	시행규칙 제26조 별표6	1964.06.11	- 첨가물제조업의 건물의 구조 변경
3	시행규칙 제26조 별표6	1966.10.20	- 음식점영업의 건물의 구조 변경, 급수 및 오물처리시설 변경
4	시행규칙 제26조 별표6	1967.12.30	- 음식점영업, 유통주점업의 건물의 구조 변경, 업종명 신설
5	시행규칙 제26조 별표6	1968.08.01	- 청량음료수제조업 업종의 작업장구조, 식품취급설비 신설
6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1972.01.05	- 제조업·가공업·처리업시설기준의 공통시설기준 신설
7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1973.01.12	- 제조업·가공업·처리업시설기준의 공통시설기준 변경
8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1973.09.26	- 음식점영업, 유통음식점영업 시설기준 변경, 업종 삭제 등
9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1975.02.18	- 간이음식점영업 시설기준 변경
10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1975.07.08	- 다과점영업 등 업종명 변경, 시설기준 신설(수세식화장실)등
11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1976.01.06	- 간이 음식점영업시설기준 삭제, 어패류 경매업시설기준 삭제
12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1976.07.03	- 제조업·가공업·처리업시설기준 변경(청량음료제조업)
13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1977.04.30	- 제조업·가공업·처리업시설기준 단서조항 변경, 업종명 변경
14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1977.12.23	- 식육운반업시설기준 중 운반시설에 항공기 신설
15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1980.03.17	- 제조업·가공업·처리업시설기준 공통시설 변경
16	시행규칙 제24조 별표9	1981.08.31	-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17	시행규칙 제24조 별표9	1982.05.22	-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변경
18	시행규칙 제24조 별표9	1983.01.15	- 식품접객영업, 유통음식점영업의 시설기준 신설
19	시행규칙 제24조 별표9	1984.06.08	-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 변경
20	시행규칙 제20조 별표7	1987.03.28	- 당초 시행규칙 제24조 별표9에서 변경
21	시행규칙 제20조 별표7	1988.03.04	- 업종별 시설기준 변경 및 신설
22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1989.11.30	- 당초 시행규칙 제20조 별표7에서 변경
23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1991.12.28	- 업종별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 변경 및 신설
24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1993.07.03	- 업종별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 변경 및 신설
25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1995.08.31	- 당초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에서 변경
26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1998.10.19	- 업종별 시설기준 변경
27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1999.12.29	- 업종별 시설기준(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설
28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2000.08.08	- 업종별 해당 취급업종 변경
29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2003.08.18	- 위탁급식영업 시설기준 신설
30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2006.12.29	- 위탁급식영업 시설기준 변경
31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2008.01.21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
32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2008.06.20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시설기준 신설
33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2009.04.03	- 식품접객업 허가기준 변경
34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2009.07.01	- 옥외시설 영업별 식품 제공 신설(2011년6월30일까지)
35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2009.08.12	- 당초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에서 변경
36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2011.04.07	- 식육운반업 시설기준 중 차고 기준(식육운반 전용차고 설치 기준 중 사용계약차량의 계약사항)변경 - 옥외시설 영업별 식품 제공 변경(2013년6월30일까지) -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시설기준 변경(객실을 들 수 없으나 내부보이는 경우 제외)

제4절 업종별 영업 허가·신고·등록 현황

1. 총괄현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개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관련 식품업소의 허가신고 규정 개정이다.

<표 5-6>에는 이와 관련하여 타 업소의 영업에 대해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6〉 업종별 허가·신고·등록 현황

번호	관련법	관련 법조항	법률에 의한 관련시설	허가	신고	등록	기타 (지정)
1	식품위생법	법 제37조 시행령 제23조 시행령 제25조	식품조사처리업	○			
			유흥주점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2	공중위생관리법	법 제2조 법 제3조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피부)		○		
			세탁업		○		
			위생관리용역업		○		
3-1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16조	사회복지법인	○			

번호	관련법	관련 법조항	법률에 의한 관련시설	허가	신고	등록	기타 (지정)
3-2		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		○		
4	담배사업법	법 제11조	담배제조업	○			
5		법 제13조	담배판매업 (도매 또는 소매인 판매업)			○	
6		법 제16조	담배소매업				○
7		법 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		
8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9조	건설업			○	
9	건설기계관리법	법 제3조	건설기계			○	
10	도서관법	법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			○	
11	유통산업발전법	법 제8조	대규모점포 개설			○	
12	약사법	법 제20조	약국 개설			○	
13		법 제31조	의약품 제조업	○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	안경업소 개설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 제28조	자동차대여사업			○	
16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법 제10조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키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허가업종은 해당기관에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신청하는 자에게 해당기관이 그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등록업종은 해당기관에 해당업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야만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신고업종은 해당기관에 사업의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소규모 창업의 가능한 대부분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업소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소는 식품조사처리업, 유흥주점업, 사회복지법인, 담배제조업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업소는 대부분 신고제와 등록제로 허용되고 있었다.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담배가격도 신고토록 되어있다. 그 외 등록만 하면 되는 업소는 담배판매업(도매, 소매), 건설업, 건설기계, 약국, 사립 공공도서관, 안경업소,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사전점검, 교육이수 및 특징에 대한 세부 현황은 <표 5-7>에 제시되어 있다.

제1절 및 제2절 등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식품관련업소들은 대부분 허가 개념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업소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관리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강화된 시설기준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표 5-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허가, 등록, 신고의 영업종류에 구분 없이 해당법의 필요에 따라 사전현장점검, 교육이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은 영업의 유효기간이 없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통하여 갱신되도록 정하고 있고, 약사법에서는 면허허가의 등록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5-7〉 업종별 허가·신고·등록 관련 주요 규정 비교

해당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담배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형태	허가/신고	신고	허가/신고	허가/신고/등록/지정	등록
대상	(허가대상) - 식품조리처리업 - 유흥주점영업 (신고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축산물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피부) - 세탁업 - 위생관리용역업	(허가대상) - 사회복지법인 (신고대상) -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	(허가대상) - 담배제조업 (신고대상) - 담배의 판매가격 (등록대상) - 담배판매업 (지정대상) - 담배소매업	- 건설업
사전 현장 점검	- 출입·검사·수거 (법제22조)	- 보고 및 출입· 검사(법제9조)	-	-	- 검사 및 인도 (법제37조) - 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법제86조의3)
유효 기간	-	-	-	-	-
갱신	-	-	-	-	-
교육 이수 여부	- 식품안전교육명령 (법제19조의3) - 식품위생교육실시 (법제41조)	- 위생교육 (법제17조)	-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법제13조)	-	-
특징	- 검사명령 (법제19조의4)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법제48조)	- 위생서비스수준 의 평가 (법제13조)	-	-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표 5-7〉 업종별 허가·신고·등록 관련 주요 규정 비교(계속)

해당법	건설기계 관리법	도서관법	유통산업 발전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체육시설설치· 이용에관한법률
형태	등록	등록	등록	허가/등록	등록	등록	등록/신고
대상	- 건설기계	- 사람공공 도서관	- 대규모 점포	(허가대상) - 의약품제조업 (등록대상) - 약국	- 안경업소	- 자동차대여	(등록대상) - 골프장업 - 스키장업 - 자동차경주장업 (신고대상) - 요트장업 - 조정장업 - 카누장업 - 빙상장업 - 승마장업 - 종합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 체육도장업 - 골프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당구장업 - 썰매장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사전 현장 점검	- 보고검사등 (법제35조)	-	-	- 보고와 검사등 (법제69조)	- 보좌 감독 (법제15조)	-	-
유효 기간	-	-	-	- 품질검사기관 지정의유효기간 (법제73조의2)	-	-	-
갱신	- 검사 등 (법제13조) ※ 정기검사 : 3년	-	-	- 면허·허가 등록증의 갱신 (법제80조)	-	-	-
교육 이수 여부	-	-	- 유통전문 인력양성 (법제23조)	- 제조관리자등 에 대한 교육 (법제37조의2) - 검사원의 교육 (법제73조의3)	- 보수교육 (법제20조)	-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법제25조)	-
특징	-	-	-	-	-	-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제5절 수입식품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제·개정안

1. 제57조 관련 [별표 17] 관련 수입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전면개정 (안)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에 따른 규정 개정(안)에서 수입판매업 시설 기준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강화할 시설기준이 별도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수입판매업 영업자준수사항은 기존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전면개정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중 2. 식품소분 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의 기준에 근거하여 수입판매업 영업자 관련 규정을 발췌하고 강화할 사항을 추가한 전면개정안이 제안되었다.

<표 5-8>에 제안된 전면개정(안)의 근거자료 및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각 항별로 아래와 같다.

전면개정(안)의 ‘가’는 현행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의 ‘가’항의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였다.

전면개정(안)의 ‘나. 수입하려는 식품 등의 수출업체는 수출국의 식품 관련 법규에 적법하거나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규에 적법한 업체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수입가공식품자주관리지침 4.1과 뉴질랜드 「Food (Importer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2008」 2.6 (b) 등의 제외국 기준에도 기술되어 있다.

전면개정(안)의 ‘다. 수입검사 전에 수입하려는 제품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 표시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마다 로트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일본의 수입가공식

품자주관리지침 4와 뉴질랜드 Food (Importer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2008. 2.6 (b)에도 언급된 바 있다.

전면개정(안)의 ‘라. 보관, 유통, 판매시 유해한 물질의 오염이나 혼입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기준은 일본의 수입가공식품자주관리지침 4.4와 뉴질랜드 Food (Importer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2008의 3.7 보관, 3.8 운송에 관련되어 기술된 바 있다.

전면개정(안)의 ‘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현행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의 자.항’에 준하며, Codex 식품 위생일반원칙 5.7의 식품의 유통에 관한 기록에 관한 규정에도 언급되어 있다.

전면개정(안)의 ‘바.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한다. <신설, 2011.8.19>’는 규정은 현행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바’항에 준하며, 이는 뉴질랜드 Food (Importer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2008의 4.9 기록 유지, 4.10 기록 유지 절차, 4.11 기록 제공 등의 규정에 ‘기록’에서 다루고 있다.

전면개정(안)의 ‘사.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타’항에 준한다.

전면개정(안)의 ‘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 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현행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파’항의 수입판매업에 준한다.

전면개정(안)의 ‘자. 별표 16 제5호를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현행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마’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별표 16. 5. 식품제조·가공업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전면개정(안)의 ‘차. 회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유통·판매에 관련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입한 제품에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신설되었다. 이는 일본의 수입가공식품자주관리지침 5.1, Codex 5.7 및 5.8과 뉴질랜드 『Food (Importer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2008』 4.9에서도 기술되어 있으며,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회수와 관련된 규정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되었다.

〈표 5-8〉 [별표 17] 관련 수입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전면개정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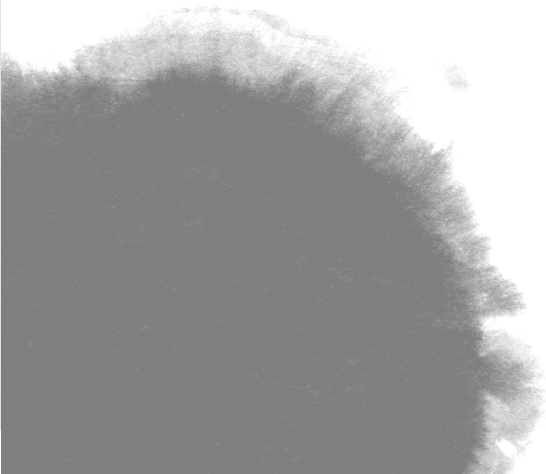
현행	연구원 개정안	규제구분
<p>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p> <p>가.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거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 거래 내역 입력 프로그램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p>	<p>3.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준수사항</p> <p>가.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거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 거래 내역 입력 프로그램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p>	<p>규제 강화</p> <p>규제 강화</p>
<p><신설></p>	<p>나. <u>수입하려는 식품 등의 수출업체는 수출국의 식품관련 법규에 적법하거나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규에 적법한 업체이어야 한다.</u></p>	<p>규제 강화</p>
<p><신설></p>	<p>다. <u>수입검사 전에 수입하려는 제품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 표시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은 로트관리를 하여야 한다.</u></p>	<p>규제 강화</p>
<p><신설></p>	<p>라. <u>보관, 유통, 판매시 유해한 물질의 오염이나 혼입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u></p>	<p>규제 강화</p>
<p>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규제 강화</p>

현행	연구원 개정(안)	규제구분
<p>바.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한다. <신설, 2011.8.19></p>	<p>바.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한다.</p>	규제 강화
<p>다.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사.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규제 강화
<p>파. 식품소분·판매업자는 <u>법 제15조제2항에 따라</u>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u>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u>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아. <u>법 제15조제2항에 따라</u>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u>수입하여서는</u> 아니 된다.</p>	규제 완화
<p>마. 식품판매업자는 <u>별표 16 제5호를 위반한</u>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자. <u>별표 16 제5호를 위반한</u>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규제 강화
<p><신설></p>	<p>차. <u>회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유통·판매에 관련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입한 제품에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u></p>	규제 강화



06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제6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제1절 기본 틀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 실천과제의 단계별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Key Word를 선정하는 것이다.

1. 식품안전환경변화

식품사고 유형변화와 소비자 만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등 총 8개 식품안전환경변화에 대해 검토, 조사하기로 하였다.

1. 식품사고 유형 변화
2. 수입식품 및 식품유해물질 증가
3.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변화
4. 신소재 식품 및 신기술 출현
5.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등 강화
6. 인구 고령화 및 식이섭취 변화

2. 전략 목표의 주요 key words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상위개념인 전략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Key Word는 <표 6-1>에 제시된 바와 같고 전문가 조사를 거쳐 수정보완 및 추가될 것이다.

총 8개 Key Word를 전략목표를 설정하는데 지속가능성, 공정, 역량, 식품의 건전, 완전, 안전 등은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이고 예방, 과학, 소통은 기 포함되었던 목표이나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Key Word에 포함되었다.

현재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이 갖추어야 할 3가지 범위의 건전성, 완전성, 안전성을 전략목표화하여 여전히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식품의 건전성과 완전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상위개념인 전략목표와 추진전략간의 개념차이를 구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Key Word 안

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2. 안전(Safety)
3. 역량(Capability)
4. 공정(Fairness, equity)
5. 예방(Prevention)
6. 과학(Science)
7. 소통(Communication)
8. 건전(Soundness), 완전(Wholesomeness), 안전(Safety)

3. 추진 전략의 주요 key words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상위개념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할 추진전략의 Key Word는 <표 6-2>에 제시된 바와 같고 전문가 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표 6-2>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Key Word 안

1. 거버넌스(Governance)
2. 규제(Regulation)
3. 방식(Method)
4. 지원(Support)
5. 근거(Evidence)
6. 대응(Response)
7. 평가(Evaluation)
8. 시장(Market)

초안으로 선정된 Key Word는 총 8개로 상위개념인 전략목표에 비해 현장에 적용가능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한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향후에는 식품안전도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장도 포함되었고, 식품안전관리 다원화체제 하에서의 거버넌스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추진전략에서부터 합리적인 규제정책으로 건전한 기업은 육성하고, 불량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전략과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근거중심의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이 필요해 지고 있고, 개방화시대에 대응은 신속성, 정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처럼 보이는 지원과 평가는 사실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평가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 및 추가하기로 한다.

4. 세부실천과제의 주요 key words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상위개념인 추진전략을 계획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과제로 대상분야별과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Key Words가 구성되었다. 두 분야별로 나누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상분야

<표 6-3>에는 세부실천과제중 대상분야별에 대한 Key Words가 제시되어있다. 비슷한 대상분야 및 유형을 묶어 총 15개 실천과제가 선정되었다.

환경변화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는 정말 중요하고 수출식품의 안전성 확보도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가 신인도와 관련이 되는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되고 있다. 또한 광우병 등의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검역은 가공식품 수입적부를 결정하는 수입식품 검사와 함께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결정하고 소비자의 식품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조직의 감축을 대신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표시, 인증 등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정보 제공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증가와 고위험 집단인 영유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먹거리 안전, 날로 증가하는 외식과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또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등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식중독, HACCP, GMP, GAP 등 국가 인증,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소비자가 민감해 하는 잔류농약, 건전한 식품유통 및 저장 등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는 없다고 하겠다.

〈표 6-3〉 세부실천과제 수립을 위한 대상분야별 Key Words 안

1.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2. 식품유해물질
3. 표시 및 인증 등 정보
4. 신소재 및 신기술 식품
5. 식중독
6. HACCP, GMP, GAP, GHP
7. 식품첨가물
8. 유기농 및 잔류농약
9. 유전자재조합식품
10.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11. 계층별 (어린이, 노인) 먹거리
12. 외식 및 집단급식
13. 건강기능식품
14. 식품이물
15. 식품저장 등

나. 시스템

<표 6-4>에는 세부실천과제 중 시스템에 대한 Key Words가 제시되어 있다.

비슷한 대상분야는 묶어 총 6개 실천과제를 선정되었다.

최적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개방화시대에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식품사고의 사전예방도 중요하고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또한 중요하며,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의 전단계를 확인하는 이력추적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력추적시스템의 구축은 고비용 제도로 대상식품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비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담당자의 역량강화는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현재 대부분의 식품안전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고, 각 기관내의 담당자의 역량 강화도 더불어 필요한 바 이들을 평가하는 평가체계의 확립과 평가 강화 및 평가결과의 선순환적인 환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 6-4〉 세부실천과제 수립을 위한 시스템 Key Words 안

1. 인프라
2. 국제협력
3. 사전 모니터링, 사후관리
4. 위해식품 신속수거 등 대응
5. 이력추적
6. 지자체 평가 및 자체평가 강화

제2절 전문가 조사 실시³⁶⁾

1. 조사개요

<표 6-5>에는 제안된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조사개요가 정리되어있다.

총 5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이 35명, 전문가가 23명으로 조사대상자의 구성비가 균형감을 갖고 있다.

〈표 6-5〉 조사개요

조사대상	공무원					전문가
	소계	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시·도	
발송규모	40명	12명	2명	10명	16명	166명 - 1차 : 120명 - 2차 : 46명
응답규모	35명	12명	2명	10명	11명	23명
최종응답률	87.5%	100.0%	100.0%	100.0%	68.8%	13.9%
조사방법	온라인 웹조사 및 우편조사 병행					온라인 웹조사
조사기간	2011.07.08~07.19 (12일간)					좌동
조사내용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등					좌동

12일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온라인 웹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최종 응답률은 87.5%로 조사대상 공무원중에서는 시도 공무원이 11명으로 응답률이 68.8%로 나타났고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은 모두 100.0%의 응답율을 보였다.

36) 정기혜 외,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 및 향후 추진방향, 국무총리실, 2010.

2.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구성 현황

<표 6-6>에는 조사대상자의 구성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공무원의 전체의 60.3%,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가 전체의 39.7%로 공무원이 전문가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조사대상자 구성분포

(단위: 명, %)

구분		응답현황	구성비
합계		58	100.0
공무원	소계	35	60.3
	농림수산식품부	12	20.7
	보건복지부	2	3.4
	식품의약품안전청	10	17.2
	시·도	11	19.0
전문가	23	39.7	

나.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1) 총괄분석

<표 6-7>에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근간으로 최근의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비교적 반대 의견이 많은 분야가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인증 강화, FTA 확대와 소비자 만족도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로 나타났고, 가장 찬성하는 분야는 기후변화와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식이섭취 양상 변화로 조사되었다.

〈표 6-7〉 환경변화 Key Word에 대한 분석

(단위: 명, %)

Key Word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의견없음	
	N	%	n	%	n	%	n	%	n	%
인구구조 고령화 및 식이섭취 변화	58	100.0	56	96.6	-	-	2	3.4	-	-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58	100.0	53	91.4	1	1.7	3	5.2	1	1.7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	58	100.0	52	89.7	1	1.7	2	3.4	3	5.2
식품사고 유형변화	58	100.0	49	84.5	-	-	7	12.1	2	3.4
신소재, 신기술 출현	58	100.0	48	82.8	1	1.7	6	10.3	3	5.2
FTA 확대	58	100.0	42	72.4	4	6.9	10	17.2	2	3.4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58	100.0	35	60.3	6	10.3	11	19.0	6	10.3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강화	58	100.0	32	55.2	3	5.2	15	25.9	8	13.8

2) 수정보완 의견

〈표 6-8〉에는 수정 보완된 의견이 정리되어 제시되어있다.

가장 반대가 많았던 소비자 만족도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타당한 의견이 많았다. 즉, 안전관리를 소비자 만족도에 근거하면 안되고, 소비자의 요구와 과학적인 근거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진이 갖고 있던 사고를 정확히 파악한 의견도 있었다. 즉,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홍보한다면 소비자 만족도는 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 평가 등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다음은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강화는 소비자 역량강화

와 식품인증을 따로 보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식품인증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의 중요성과 소비자 대상 교육 확대, 인증제도의 종합적 관리, 인증 확대의 폐해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FTA 확대에 대해서도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로 사용할 만큼 새로운 환경변화는 아니라는 응답이었으나 계속 확대되고 있어 다시 한번 환경변화의 한 요인으로 주지할 필요성은 있어 보였다.

〈표 6-8〉 환경변화 Key Word에 대한 의견

Key Word	Key Word별 수정보완 및 검토의견
인구구조 고령화 및 식이섭취 변화	고령사회대비 실버푸드 개발
	식이요법이 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고려됨.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기후의 변화. 즉 습도 온도 등 모든 조건이 식품과 관련됨.
	식품안전과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한계가 보임.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를 파악 및 예측하는 기술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서 식품과의 관계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보임.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	그것에 의해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님. “수입식품등을 통한 식품유해물질 발견”으로 수정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수입식품이라고 반드시 유해 물질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며 항상 유해물질 존재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봄.
	FTA 확대와 묶어 '대외적 환경변화' 등으로 서술
식품사고 유형변화	식품사고 유형 분류 필요 의견 1. 식품사고 유형을 제조, 유통과정, 원료생산과정 등으로 분류 의견 2. 일반인이 알기 쉽게 유형별로 정리하여 알려주어야 한다고 사료됨.
	“사고”라는 표현이 너무 직설적임.
신소재, 신기술 출현	신소재, 신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함. 의견 1. 신소재나 신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행되어야 함. 의견 2. key words 라고 하기에 내용이 다소 모호함, 좀더 구체적이면 좋겠음. 의견 3. 너무 막연함.

Key Word	Key Word별 수정보완 및 검토의견
	신소재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경쟁에 이길 수 있어야 함.
FTA 확대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와 묶을 필요 있음.
	현재 동시에 여러 국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FTA확대는 수입식품증가와 연관되므로 불필요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강화	<p>소비자 역량강화와 식품 인증간의 관계 부적합</p> <p>의견 1. 소비자 역량강화와 식품 인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 항목임.</p> <p>의견 2. 소비자 역량강화와 인증간 상관관계가 이해되지 않음.</p> <p>의견 3. 소비자역량강화와 식품인증제와 관계가 미흡</p>
	<p>식품인증 강화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필요</p> <p>의견 1. 인증을 강화하고 인증을 받고 나서의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해야함. 또한 인증이 너무나 많이 소비자들이 혼란이 있을수 있으므로 가급적 인증의 수는 적게 함.</p> <p>의견 2. 식품인증제도의 신설 증가로 소비자의 역량 강화보다는 인증제도의 신뢰도 하락과 소비자의 오인, 혼동이 초래되고 있음.</p> <p>의견 3. 여러가지 식품인증사례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너무 많은 인증으로 인해 더 혼란을 초래함 국민들을 위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함.</p>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강화’와 ‘소비자 만족도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는 ‘소비자 인식수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증가’ 등으로 통합 가능
	식품과 농산물을 어떻게 구분하여 할 것인지 관련부서와 의논하여 인증으로 하지 않기를 바람.
	식품인증제 강화라고 하면 될것 같음,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음.
	인증 제도는 총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p>소비자 만족도가 아닌, 국민 건강 보호에 목적을 두어야 함.</p> <p>의견 1. 소비자 만족도 보다는 건강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함.</p> <p>의견 2. 식품안전관리 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임.</p>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강화’와 ‘소비자 만족도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는 ‘소비자 인식수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증가’ 등으로 통합 가능

Key Word	Key Word별 수정보완 및 검토의견
	만족도 대비 안전관리 추진은 populism에 의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음.
	생산자의 의견도 수렴하여 참고하길 바람.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량적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됨.
	소비자 만족도와 안전과는 거리가 있음. 안전 자체로 관리가 필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안전정책을 홍보한다면 소비자 만족도는 변화할 수 있음.
	소비자의 요구와 전문가 의사는 다를 수 있음.
	소비자의 삶의 가치 변화 등의 표현도 좋을 듯 합니다.

3) 추가 및 기타 의견

<표 6-9>에는 전문가 조사에서 추가로 개진된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제기된 의견들을 보면, 식품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파악 및 분석(기술),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완화, 식품테러, 일본 원전 대응, 식품유통기한 등 현안위주의 과제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원전사고 등에 의한 방사능 대응을 제외하고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신고에서 허가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현안이기는 하지만 전부터 문제시되고 있던 규정이라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 환경변화로 재 언급하기에는 적정치 않은 것으로 논의되어 포함시키지 않고 세부실천과제에서 다루어짐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다만 식품규제에 대한 계획 수립은 추진전략 차원에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표 6-9〉 환경변화 Key Word에 대한 추가 및 기타 의견

Key Word	기타 검토의견
식품 위해성 물질의 정보 파악 및 분석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해성물질의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파악과 분석기술 개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농산물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위해성 문제를 다루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을 것임. (농식품으로써 포괄적으로 운영)
식품인허가 등 관리업무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한 식품안전관리의 어려움	<p>식품인허가등 관리업무의 규제완화정책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즉 식품제조업소를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하고 식품위생관리인제도를 부활시켜 사전안전관리제로 전환시켜 식품안전관리체제로 전환</p>
식품제조유통(위탁제조 등)과정 공개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충족	-
식품테러	-
일본 원전 등 방사능	-
기타	조사에만 끝나지 말고 의견들을 참조하여 실행되기를 바람.
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가치 변화	-
국민의 가치 변화 (건강, 안전, 웰빙 등)	-

다. 국가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1) 총괄 분석

<표 6-10>에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전략목표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총 8개의 key word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었으나 역량, 공정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한 대상자도 2~3명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정, 보완의견을 개진한 key word도 반대한 경향과 비슷하게 공정, 역량, 지속가능성, 과학, 소통 등으로 나타났다.

<표 6-10> 국가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채택여부 검토결과

(단위: 명, %)

Key Word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의견없음	
	N	%	n	%	n	%	n	%	n	%
안전(Safety)	58	100.0	57	98.3	-	-	1	1.7	-	-
예방(Prevention)	58	100.0	57	98.3	1	1.7	-	-	-	-
소통(Communication)	58	100.0	54	93.1	1	1.7	3	5.2	-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58	100.0	51	87.9	-	-	7	12.1	-	-
과학(Science)	58	100.0	49	84.5	1	1.7	6	10.3	2	3.4
건전(Soundness), 완전(Wholesomeness), 안전(Safety)	58	100.0	42	72.4	2	3.4	12	20.7	2	3.4
역량(Capability)	58	100.0	38	65.5	3	5.2	17	29.3	-	-
공정(Fairness, equity)	58	100.0	34	58.6	3	5.2	21	36.2	-	-

2) 수정보완 의견

<표 6-11>에는 전문가 조사에서 현재 제시된 key word에 대한 수정 보완의견을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안전과 함께 안심이라는 단어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WHO 정의에 제시된 바대로 식품의 건전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어채택과 대신 식품의 안전성은 큰 틀의 안전에 포함시키라는 의견 및 예방을 최우선 화두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표 6-11〉 국가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검토의견

Key Word	Key Word별 수정보완 및 검토의견
안전(Safety)	안심이라는 용어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예방(Prevention)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최우선순위로 선정
소통(Communication)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과학(Science)	기술 분야도 포함
	모든 것이 확실하고 확고한 과학적 근거를 두어야 함.
	Key word로 하기엔 너무 Broad(포괄적임)
건전(Soundness), 완전(Wholesomeness), 안전(Safety)	안전(safety)의 중복 의견 1. 위 항목의 safety 하고 뭐가 다른 것 인가? 의견 2. 앞의 안전과 중복
	WHO 식품위생의 정의
	건전 및 완전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외당지 않음.
역량(Capability)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함.
공정(Fairness, equity)	식품안전관리에서 공정성의 의미가 불명확

3) 추가 및 기타 의견

<표 6-12>에는 전문가 조사에서 추가로 개진된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제기된 의견들을 보면, 기술개발, 평가, 소통과 참여, 책임성, 환경 등의 단어가 개진되었다.

〈표 6-12〉 국가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관련 기타의견

Key Word	기타 검토의견
기술 개발	과학 분야에 기술개발이 포함되기를 희망함.
평가(assessment)	과학에 포함되는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평가(assessment)에 대한 검토가 필요
소통+참여	-
안심	-
책임성	-
환경	-

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1) 총괄분석

<표 6-13>에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Key Word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찬성이 가장 적은 Key Word는 방식, 시장으로 나타났고, 수정보완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은 방식, 거버넌스, 근거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3〉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검토결과

(단위: 명, %)

Key Word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의견없음	
	N	%	n	%	n	%	n	%	n	%
평가(Evaluation)	58	100.0	53	91.4	2	3.4	3	5.2	-	-
규제(Regulation)	58	100.0	52	89.7	2	3.4	4	6.9	-	-
대응(Response)	58	100.0	52	89.7	1	1.7	4	6.9	1	1.7
근거(Evidence)	58	100.0	50	86.2	2	3.4	6	10.3	-	-
거버넌스 (Governance)	58	100.0	47	81.0	-	-	11	19.0	-	-
지원(Support)	58	100.0	46	79.3	2	3.4	10	17.2	-	-
시장(Market)	58	100.0	36	62.1	2	3.4	20	34.5	-	-
방식(Method)	58	100.0	30	51.7	3	5.2	23	39.7	2	3.4

2) 수정 및 보완 의견

<표 6-14>에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Key Word에 대한 전문가의 수정 및 보완의견이 제시되어있다.

방식에 방법을 포함, 대응에 반응을 포함하라는 의견이 직접적인 지적이었고 나머지 의견은 각 key word를 해석하고, 활용함에 유념해야 할 사항을 주로 개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4〉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검토의견

Key Word	Key Word별 수정보완 및 검토의견
평가(Evaluation)	-
규제(Regulation)	규제를 하되 정당성을 판단하여 규제 여부를 정할 것으로 사료됨. 규제 완화시에는 규제완화에 대한 이행여부 관리를 강화시켜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지원(Support)	-
대응(Response)	용어에 “반응”을 같이 사용
근거(Evidence)	-
거버넌스 (Governance)	“거버넌스”정책별로 유기적이고 중복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융합하는 노력 필요 고전적 거버넌스(국가 정부 주도)와 뉴거버넌스(국가+민간 협력) 개념의 적절한 조화
시장(Market)	시장개념은 산업육성과 관련된 듯함. 안전관리와 거리감 있음.
방식(Method)	방법을 같이 사용 방식은 적당한 용어가 아닌 것 같음, 방법 방식에 대한 구체성 결여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음

3) 추가 및 기타 의견

<표 6-15>에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Key Word에 대한 추가 및 기타의견이 제시되어있다.

수입, 생산, 전략, 지원, 교육 및 시험, 연구, 보상, 측정 등의 화두가 제시되었는데 이중 지원과 연구는 새로운 key word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 다른 차원에서 포함되어있어 추진전략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교육교재 자체가 미국 등 외국의 책자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위생사나 영양사 등의 자격시험 문제도 최신화되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어 내실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최근 일부층에서 식품위생교육 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사료된다. 단,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위생교육체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5〉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관련 기타의견

Key Word	기타 검토의견
수입, 생산	-
전략(strategy)	-
지원(support)	-
교육 및 시험	<p>식품위생교육 대부분의 위생교육 관련 책자가 외국 원서 번역 수준</p> <p>위생이란 일반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생이 중요시 되는 지역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적 지역상황에 맞는 위생교육서의 제작이 이루어져서 교육되어야 함.</p> <p>예로, 미국은 햄버거의 소고기 분쇄육과 장출혈성대장균의 관계가 중요한 반면 한국은 날 어패튜와 비브리오가 중요하다. 관련 시험-위생교육 평가가 위생사 및 영양사 혹은 관련 공무원직 시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기 및 실기시험이 시대 및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이 포함.</p> <p>위생교육시험의 질적 수준 향상이 요구.</p>
관련 학계 및 정부의 연구	<p>식품안전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방향성 있는 목표를 가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p> <p>연구 결과물은 농장에서 밥상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것임.</p>
보상	-
Management Measure or Control	-

마.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분야)

1) 총괄 분석

<표 6-16>에는 전략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선정에 대한 조사결과가 정리되어있다.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등 비슷한 성격을 갖는 세부과제는 동일한 카테고리로 묶어 조사되었는데 향후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세부과제별로 세분화하여 과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러 세부과제중 식품저장, 사료, 주류안전관리에 대해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정보완과제로는 사료, 주류안전관리, 식품저장, 신소재신기술 식품, 외식 및 집단급식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16〉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분야) 검토결과

(단위: 명, %)

Key Word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의견없음	
	N	%	n	%	n	%	n	%	n	%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58	100.0	56	96.6	-	-	1	1.7	1	1.7
HACCP, GMP, GAP, GHP	58	100.0	55	94.8	-	-	3	5.2	-	-
식중독	58	100.0	53	91.4	1	1.7	3	5.2	1	1.7
식품유해물질	58	100.0	52	89.7	-	-	4	6.9	2	3.4
유전자재조합식품	58	100.0	51	87.9	-	-	4	6.9	3	5.2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58	100.0	51	87.9	1	1.7	6	10.3	-	-
유기농 및 잔류농약	58	100.0	49	84.5	-	-	7	12.1	2	3.4
건강기능식품	58	100.0	48	82.8	-	-	10	17.2	-	-
식품첨가물	58	100.0	48	82.8	1	1.7	6	10.3	3	5.2
계층별 (어린이, 노인)먹거리	58	100.0	47	81.0	2	3.4	7	12.1	2	3.4
외식 및 집단급식	58	100.0	47	81.0	1	1.7	10	17.2	-	-
표시 및 인증 등 정보	58	100.0	45	77.6	1	1.7	10	17.2	2	3.4
신소재 및 신기술 식품	58	100.0	42	72.4	1	1.7	13	22.4	2	3.4
식품이물	58	100.0	39	67.2	3	5.2	15	25.9	1	1.7
식품저장 등	58	100.0	33	56.9	4	6.9	19	32.8	2	3.4
주류안전관리	58	100.0	33	56.9	4	6.9	20	34.5	1	1.7
사료	58	100.0	25	43.1	4	6.9	25	43.1	4	6.9

2) 수정 및 보완의견

<표 6-17>에는 전략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견이 제시되어있다.

우선 식품유해물질을 유해물질과 유해미생물로 나누자는 의견을 비롯하여 표시와 인증을 통합하고, 과도한 인증은 소비자 혼란만 초래하니 유사인증을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른 key word 못지않게 의견이 많은 부분이 유기농으로 유기농과 잔류농약은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하고 유기농은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재배방식에 의한 질에 관한 것이므로 삭제함이 옳다는 의견과 함께 잔류농약은 식품유해물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표 6-17〉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분야) 검토의견

Key Word	Key Word별 수정보완 및 검토의견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
식중독	식중독에 관하여서는 발생원인별 확실한 규명 제시가 필요함.
식품유해물질	유해물질과 유해 생물로 구분
표시 및 인증 등 정보	표시 및 인증제도의 통합 운영 필요 의견 1. 농산물과 통합하여 운영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의견 2. 인증제도 과다로 소비자혼란우려 (유사제도와 통폐합 검토)
	인증의 종류나 방법제안이 아닌 교육프로그램 강화일 경우 찬성
HACCP, GMP, GAP, GHP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ISO22000도 포함시켜 검토요망
	다양한 인증방법은 소비자가 아닌 제조자를 규제 또는 인증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어려움. 용어 단일화 및 홍보 필요함.
유전자재조합식품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Key Word	Key Word별 수정보완 및 검토의견
식품첨가물	-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p>소비자 홍보 제외</p> <p>의견 1. 소비자 홍보는 식품안전기본계획과는 거리가 있음</p> <p>의견 2. 중요성 비중이 낮다고 봄. 소비자 홍보와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은 불필요</p>
	소비자 홍보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유기농 및 잔류농약	<p>유기농 제외</p> <p>의견 1. 유기농과 잔류농약은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함.</p> <p>의견 2. 여기서는 잔류농약만 관리하고 유기농은 관련단체가 임의로 하도록 유도</p> <p>의견 3. 유기농은 반대(타분야와 비교하여 위생 안전 측면 약함)</p> <p>의견 4. 유기농은 안전보다 질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안전 분야에서 제외해서 다루어야 함이 타당하다.</p>
	잔류농약은 식품유해물질로 분류, 통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
계층별 (어린이, 노인) 먹거리	<p>계층별 구분 필요 없음</p> <p>의견 1. 먹거리가 계층별로 뚜렷하게 구분되기 어렵다. 비록 영유아를 위한 식품으로 infant formula가 있지만 이는 주요 관리 식품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이 어려울는지.</p> <p>의견 2. 구분 할 필요는 없음.</p>
	고 위험 집단의 먹거리 안전
외식 및 집단급식	식중독 연관성과 관련
신소재 및 신기술 식품	-
식품이물	식품안전관리로 묶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너무 세부적인 과제인 것으로 판단
	이물관리는 어느 정도 선진화되어 더 이상 과제 발굴은 불필요
	이물에 대한 폭넓은 적용으로 행정수요 과다투입 (유해우려 이물에 대해서만 선택적 관리)
	이물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 필요
	철저한 조사 감독

Key Word	Key Word별 수정보완 및 검토의견
식품저장 등	유통 관리 포함 의견 1. 식품저장 및 유통 의견 2. 안전한 유통 관리 포함
	식품안전관리로 묶을 수 있는 시안으로 판단되며 너무 세부적인 과제인 것으로 판단
	어느 단계의 저장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만약 식품 가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반적인 식품 제조공정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류안전관리	비록 최근에 수입식품에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리콜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주류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본다. 주류를 식품의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사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루어야 함 의견 1. 동물을 통해 식품에 유해물질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루어야 할 시안임. 의견 2. 농정분야 소관
	사료 안전관리
	사료는 원칙적으로 식품이 아님
	정책방향 결정에 따라 선택 필요

3) 추가 및 기타 의견

<표 6-18>에는 전략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중 기타로 추가하여야 할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품포장, 교육, 방사능, 식품접객업소, 알러지, 잔류물질, 영양관리를 추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특히 Food Chain 상 농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제조가공식품의 안전성도 담보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농식품 생산도 의미있는 주장으로 평가되었다. 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표 6-18〉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분야) 관련 기타 의견

Key Word	기타 검토의견
안전한 농식품 생산	안전한 농식품 생산 문제도 고려되어야 함. 원료가 안전해야 제조 식품도 안전함.
식품 포장	분류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면 식품 포장이 빠진 듯 함.
교육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계층별 (어린이, 노인) 먹거리”에서 대상 교육부분이 강화요망
방사능	-
식품접객업소(외식) 관리	-
영양관리	-
잔류물질	-
allergy 관리	현재 선진국에서는 식품 내 allergy원 오염을 심각하게 관리 국내에선 비록 식품포장 표식에 allergy원을 기입하고는 있지만, 식품 내 오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
식품 영양을 포함하는 식생활 교육(체험 포함)	-
학교급식(단체급식)	-
단체급식, 식품영양 및 식생활 교육	-

바.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시스템)

1) 총괄분석

〈표 6-19〉에는 전략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중 시스템에 관한 조사결과가 정리하여 제시되어있다. 반대의견은 거의 없었으나 지자체 및 자체평가 강화와 국제협력에 대해서만 개선되었다.

〈표 6-19〉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시스템) 검토결과

(단위: 명, %)

Key Word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의견없음	
	N	%	n	%	n	%	n	%	n	%
이력추적	58	100.0	55	94.8	-	-	2	3.4	1	1.7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58	100.0	54	93.1	-	-	3	5.2	1	1.7
위해식품 신속수거 등 대응	58	100.0	54	93.1	-	-	3	5.2	1	1.7
국제협력	58	100.0	52	89.7	1	1.7	5	8.6	-	-
인프라	58	100.0	51	87.9	-	-	6	10.3	1	1.7
지자체 평가 및 자체평가 강화	58	100.0	34	58.6	3	5.2	18	31.0	3	5.2

2) 수정 및 보완 의견

〈표 6-20〉에는 전략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중 인프라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견이 정리되어있다.

인프라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라는 의견에서부터 위해 식품 신속수거는 사후관리의 한 과제로, 이력추적은 사전관리의 한 과제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전 분야 지자체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분야만 독립적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식품안전분야 실적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6-20〉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시스템) 검토의견

Key Word	Key Word별 수정보완 및 검토의견
이력추적	사전관리의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인프라	우리말로 수정요망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사전모니터링은 중점보완 필요
위해식품 신속수거 등 대응	사후관리의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제협력	-
지자체 평가 및 자체평가 강화	<p>지자체 평가는 행정안전부 소관업무 임.</p> <p>의견 1. 결과보고서(1년마다)를 제출, 평가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강화는 추후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p> <p>의견 2. 아직까지 지자체가(비록 서울시라 해도) 식품안전에 관해 기획, 추진,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하달, 교육, 감시 및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p> <p>의견 3. 지자체 평가 및 강화는 행정안전부 소관업무로 동 내용의 실현 가능성 어려움</p> <p>의견 4. 정부합동평가에서 수행중</p>

3) 추가 및 기타 의견

〈표 6-21〉에는 전략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중 인프라에 대한 추가 및 기타 의견이 정리되어 있다.

범정부적 대응과제로 내부협력, 식품안전 일원화, 위해분석, 업무조정 및 협의 체계 구축,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유효성 평가 및 확인, 그리고 지자체 평가를 행안부 협조하에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함 등의 의견이 추가로 개진되었다.

이중 거버넌스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식품안전 일원화, 업무협력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어 있고, 지자체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별 부처보다는 국무총리실이 총괄하여 평가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

다. 여러 의견중 반드시 세부과제로 포함시켜야 할 것은 경로당, 구멍가게 등 식품안전사각지대에 대한 관리이다. 또한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의 차원에서 근간되는 유효성 평가와 매뉴얼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이 적당한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6-21〉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시스템) 관련 기타의견

Key Word	기타 검토의견
내부협력 (범정부적 대응과제)	-
식품안전 일원화	-
위해분석 (Risk Analysis)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개념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위해분석(Risk Analysis)를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관계부처간 업무 조정, 협의 메커니즘 (시스템) 구축	-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안전관리강화	농어촌오지벽지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안전관리강화(경로당, 구멍가게 등)
유효성평가(validation) 및 확인(verification)	한국의 식품안전 시스템의 주요 담당자는 1)질병관리본부 2)식약청 그리고 3)지자체 관련 부서. 먼저 이들이 한국사회의 식품안전 확립을 위해 일할 충분한 역량이 평가할 필요가 있음. 각 담당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지 그 유효성평가(validation)를 실시하고, 또한 정말 그 일을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verification)해야 함.
기타	지자체 평가 및 자체 평가 강화 관련 과제 발굴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기보다 국무총리실 단독 과제나 행안부 협조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와의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보 공개	-
정보 교류	-

3. 응답자별 세부 조사결과

가.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항목

<표 6-22>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환경변화 Key Words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해본 결과 조사대상자 수가 적어서인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6-22> 조사대상자별 환경변화 Key Word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Key Word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의견 없음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의견 없음
인구구조 고령화 및 식이섭취 변화	35 (100.0)	33 (94.3)	- (-)	2 (5.7)	- (-)	23 (100.0)	23 (100.0)	- (-)	- (-)	- (-)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35 (100.0)	31 (88.6)	1 (2.9)	3 (8.6)	- (-)	23 (100.0)	22 (95.7)	- (-)	- (-)	1 (4.3)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	35 (100.0)	31 (88.6)	1 (2.9)	2 (5.7)	1 (2.9)	23 (100.0)	21 (91.3)	- (-)	- (-)	2 (8.7)
식품사고 유형변화	35 (100.0)	30 (85.7)	- (-)	4 (11.4)	1 (2.9)	23 (100.0)	19 (82.6)	- (-)	3 (13.0)	1 (4.3)
신소재, 신기술 출현	35 (100.0)	29 (82.9)	1 (2.9)	5 (14.3)	- (-)	23 (100.0)	19 (82.6)	- (-)	1 (4.3)	3 (13.0)
FTA 확대	35 (100.0)	22 (62.9)	3 (8.6)	8 (22.9)	2 (5.7)	23 (100.0)	20 (87.0)	1 (4.3)	2 (8.7)	- (-)
소비자 만족도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	35 (100.0)	19 (54.3)	6 (17.1)	7 (20.0)	3 (8.6)	23 (100.0)	16 (69.6)	- (-)	4 (17.4)	3 (13.0)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강화	35 (100.0)	17 (48.6)	3 (8.6)	12 (34.3)	3 (8.6)	23 (100.0)	15 (65.2)	- (-)	3 (13.0)	5 (21.7)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나. 국가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표 6-23>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전략목표에 대한 Key Words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해본 결과 완전, 건전, 안전 Key Word만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조사대상자수가 적어서인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6-23> 조사대상자별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Key Word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의견 없음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의견 없음
예방(Prevention)	35 (100.0)	35 (100)	- (-)	- (-)	- (-)	23 (100.0)	22 (95.7)	1 (4.3)	- (-)	- (-)
안전(Safety)	35 (100.0)	34 (97.1)	- (-)	1 (2.9)	- (-)	23 (100.0)	23 (100.0)	- (-)	- (-)	- (-)
소통(Communication)	35 (100.0)	33 (94.3)	1 (2.9)	1 (2.9)	- (-)	23 (100.0)	21 (91.3)	- (-)	2 (8.7)	- (-)
과학(Science)	35 (100.0)	31 (88.6)	- (-)	4 (11.4)	- (-)	23 (100.0)	18 (78.3)	1 (4.3)	2 (8.7)	2 (8.7)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35 (100.0)	30 (85.7)	- (-)	5 (14.3)	- (-)	23 (100.0)	21 (91.3)	- (-)	2 (8.7)	- (-)
역량(Capability)	35 (100.0)	23 (65.7)	2 (5.7)	10 (28.6)	- (-)	23 (100.0)	15 (65.2)	1 (4.3)	7 (30.4)	- (-)
건전(Soundness), 완전(Wholesomeness), 안전(Safety)*	35 (100.0)	22 (62.9)	1 (2.9)	11 (31.4)	1 (2.9)	23 (100.0)	20 (87.0)	1 (4.3)	1 (4.3)	1 (4.3)
공정(Fairness, equity)	35 (100.0)	21 (60.0)	3 (8.6)	11 (31.4)	- (-)	23 (100.0)	13 (56.5)	- (-)	10 (43.5)	- (-)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다.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표 6-24>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Key Words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해본 결과 거버넌스만이 유의한 의미를 보였고 조사대상자수가 적어서인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6-24〉 조사대상자별 추진전략 Key Word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Key Word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의견 없음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의견 없음
거버넌스* (Governance)	35 (100.0)	32 (91.4)	- (-)	3 (8.6)	- (-)	23 (100.0)	15 (65.2)	- (-)	8 (34.8)	- (-)
규제 (Regulation)	35 (100.0)	31 (88.6)	2 (5.7)	2 (5.7)	- (-)	23 (100.0)	21 (91.3)	- (-)	2 (8.7)	- (-)
대응 (Response)	35 (100.0)	31 (88.6)	1 (2.9)	3 (8.6)	- (-)	23 (100.0)	21 (91.3)	- (-)	1 (4.3)	1 (4.3)
근거 (Evidence)	35 (100.0)	30 (85.7)	1 (2.9)	4 (11.4)	- (-)	23 (100.0)	20 (87.0)	1 (4.3)	2 (8.7)	- (-)
평가 (Evaluation)	35 (100.0)	30 (85.7)	2 (5.7)	3 (8.6)	- (-)	23 (100.0)	23 (100.0)	- (-)	- (-)	- (-)
지원 (Support)	35 (100.0)	29 (82.9)	- (-)	6 (17.1)	- (-)	23 (100.0)	17 (73.9)	2 (8.7)	4 (17.4)	- (-)
시장 (Market)	35 (100.0)	19 (54.3)	2 (5.7)	14 (40.0)	- (-)	23 (100.0)	17 (73.9)	- (-)	6 (26.1)	- (-)
방식 (Method)	35 (100.0)	18 (51.4)	3 (8.6)	14 (40.0)	- (-)	23 (100.0)	12 (52.2)	- (-)	9 (39.1)	2 (8.7)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라. 세부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분야)

<표 6-25>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세부실천 과제 분야별 Key Words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6-25> 조사대상자별 세부추진과제 Key Word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Key Word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의견 없음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의견 없음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35 (100.0)	33 (94.3)	- (-)	1 (2.9)	1 (2.9)	23 (100.0)	23 (100.0)	- (-)	- (-)	- (-)
식품유해물질	35 (100.0)	31 (88.6)	1 (2.9)	3 (8.6)	- (-)	23 (100.0)	22 (95.7)	- (-)	- (-)	1 (4.3)
표시 및 인증 등 정보	35 (100.0)	31 (88.6)	- (-)	4 (11.4)	- (-)	23 (100.0)	21 (91.3)	- (-)	- (-)	2 (8.7)
식중독	35 (100.0)	33 (94.3)	- (-)	2 (5.7)	- (-)	23 (100.0)	22 (95.7)	- (-)	1 (4.3)	- (-)
HACCP, GMP, GAP, GHP	35 (100.0)	32 (91.4)	- (-)	3 (8.6)	- (-)	23 (100.0)	19 (82.6)	- (-)	1 (4.3)	3 (13.0)
유전자재조합식품	35 (100.0)	31 (88.6)	1 (2.9)	3 (8.6)	- (-)	23 (100.0)	20 (87.0)	- (-)	3 (13.0)	- (-)
계층별(어린이,노인) 먹거리	35 (100.0)	30 (85.7)	- (-)	4 (11.4)	1 (2.9)	23 (100.0)	17 (73.9)	2 (8.7)	3 (13.0)	1 (4.3)
식품첨가물	35 (100.0)	29 (82.9)	- (-)	6 (17.1)	- (-)	23 (100.0)	19 (82.6)	- (-)	4 (17.4)	- (-)
유기능 및 잔류농약	35 (100.0)	29 (82.9)	1 (2.9)	4 (11.4)	1 (2.9)	23 (100.0)	19 (82.6)	- (-)	2 (8.7)	2 (8.7)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35 (100.0)	29 (82.9)	- (-)	5 (14.3)	1 (2.9)	23 (100.0)	20 (87.0)	- (-)	2 (8.7)	1 (4.3)
신소재 및 신기술 식품	35 (100.0)	28 (80.0)	1 (2.9)	5 (14.3)	1 (2.9)	23 (100.0)	17 (73.9)	- (-)	5 (21.7)	1 (4.3)
외식 및 집단급식	35 (100.0)	27 (77.1)	1 (2.9)	7 (20.0)	- (-)	23 (100.0)	20 (87.0)	- (-)	3 (13.0)	- (-)
건강기능식품	35 (100.0)	22 (62.9)	1 (2.9)	11 (31.4)	1 (2.9)	23 (100.0)	20 (87.0)	- (-)	2 (8.7)	1 (4.3)
식품이물	35 (100.0)	21 (60.0)	3 (8.6)	11 (31.4)	- (-)	23 (100.0)	18 (78.3)	- (-)	4 (17.4)	1 (4.3)
식품저장 등	35 (100.0)	19 (54.3)	3 (8.6)	13 (37.1)	- (-)	23 (100.0)	14 (60.9)	1 (4.3)	6 (26.1)	2 (8.7)
주류안전관리	34 (100.0)	17 (50.0)	3 (8.8)	14 (41.2)	- (-)	23 (100.0)	16 (69.6)	1 (4.3)	6 (26.1)	- (-)
사료*	34 (100.0)	10 (29.4)	4 (11.8)	18 (52.9)	2 (5.9)	23 (100.0)	15 (65.2)	- (-)	7 (30.4)	1 (4.3)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해본 결과 사료 Key Word만이 유의한 의미를 보였고, 나머지는 조사대상자수가 적어서인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마. 세부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시스템)

<표 6-26>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세부실천과제 시스템에 관한 Key Words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해본 결과 조사대상자수가 적어서인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6-26〉 조사대상자별 세부실천과제 시스템 Key Word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Key Word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의견 없음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의견 없음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35 (100.0)	32 (91.4)	- (-)	2 (5.7)	1 (2.9)	23 (100.0)	22 (95.7)	- (-)	1 (4.3)	- (-)
위해식품 신속 수거 등 대응	35 (100.0)	32 (91.4)	- (-)	2 (5.7)	1 (2.9)	23 (100.0)	22 (95.7)	- (-)	1 (4.3)	- (-)
이력추적	35 (100.0)	32 (91.4)	- (-)	2 (5.7)	1 (2.9)	23 (100.0)	23 (100.0)	- (-)	- (-)	- (-)
인프라	35 (100.0)	31 (88.6)	- (-)	4 (11.4)	- (-)	23 (100.0)	20 (87.0)	- (-)	2 (8.7)	1 (2.0)
국제협력	35 (100.0)	30 (85.7)	1 (2.9)	4 (11.4)	- (-)	23 (100.0)	22 (95.7)	- (-)	1 (4.3)	- (-)
지자체 평가 및 자체평가 강화	35 (100.0)	17 (48.6)	3 (8.6)	13 (37.1)	2 (5.7)	23 (100.0)	17 (73.9)	- (-)	5 (21.7)	1 (6.0)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4. 조사결과 시사점

환경변화, 전략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얻어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실천과제

세부실천과제는 분야별과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23개의 Key Words가 개발되어 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에 의해 도출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실천과제는 가능한 제안된 분야를 모두 포함토록 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식품생산에서 범위를 넓혀 식품포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현재는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인 노인정 등까지 안전관리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세부실천과제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둘째, 세부실천과제 내용은 식품안전 등 특정분야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포함토록 한다.

이 연구가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자칫 식품안전으로만 범위를 국한할 수 있는데 범위를 확대하여 사료 안전관리, 알러지 관리, 농식품의 안전관리 등 식품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분야는 모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셋째, 세부실천과제는 가능한 세분화하여 각 과제별 고유 영역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즉, 사전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분리하고, 식품유해물질은 미생물 등 유해생물을 분리하여 개별 세부실천과제화 하기로 하였다.

넷째, 세부실천과제의 시스템에서 가장 논란과 관심이 많았던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과제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현 평가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식품안전관리의 집행업무는 지자체에서 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프라 파악과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현재 행정안전부가 통합평가체계하에서 평가하고 있는 식품안전 분야는 평가 지표가 4개로 사실상 지자체의 실적을 충실히 평가할 수 없어 식품안전담당기관인 식약청에서 총괄하여 평가지표를 추가한 후 추가지표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한편 지자체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행안부의 협조를 얻어 추가평가를 실시함을 제안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지자체 업무실적 추가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실천과제라 하겠다.

나. 추진전략

연구진에 의해 제안된 Key Words는 총 8개였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원과 연구의 2개 Key Word를 포함시켜 총 10개로 최종 구성토록 하였다.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수정 및 추가의견이 없던 분야였다.

다. 전략목표

식품안전은 과학에 기반을 두지만 소비자의 심정적 안심은 정책 신뢰도 제고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안심이란 Key Word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안된 기술개발은 단어가 같고 있는 범위가 기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Key Word인 과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독립적으로 Key Word화 하기에는 부적당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WHO정의에서 언급된 개별식품의 안전과 폭 넓은 안전 개념은 일부 통합, 일부 분리 등 상황에 맞게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라. 환경변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향후 환경변화 전망에서 FTA 대응은 진부한 Key Word란 지적이 많았으나 향후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비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를 환경변화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여러 수정보완이나 추가의견이 있었지만 연구의 틀 범위내에서 고려하여 포함, 감안, 삭제 등 적절한 처리를 하였다.

제3절 향후 추진전략 수립

1. 기본 방향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6-27〉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틀

1. 향후 3년간을 포함한 그 이후의 식품안전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부여
2. 타 분야와 동일한 국정기조,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계획 수립
3. 전략목표는 새롭게 채택된 방향과 기존 강조되어야 할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
4.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는 각각 상위개념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구성
5. 세부과제는 식품안전관리 범위의 확대 차원에서 가능한 폭넓게 포함
6. 각 부처의 추진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적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
7.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과 더불어 신규사업 개발, 추가
8. 각 중앙정부 부처간 업무연계 강조
9. 지자체의 업무추진 능력 제고
10. 자체 평가 강화에 의한 역량 제고 모색

2. 식품안전환경 변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이 수행되는 향후 3년을 포함하여 2010년 등 미래의 식품안전이 처하게 되는 주요 환경 변화를 예측하였다.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식품안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며, 여러 분야로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연구진과 전문가에 의해 향후 환경변화로 수입식품 및 식품유해물질 증가,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 변화, 신소재 및 신기술 출현, FTA 확대,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 확대, 인구 고령화 및 식이섭취 변화,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 원전사고 대비 등의 8가지 사안이 개선되었다.

원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FTA 확대는 이미 진부한 아젠다라는 지적과 새로운 환경변화로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 영향으로 원전사고 대비에 대한 지적이 있어, 원전사고 대비는 중요성이 인정되어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변화의 한 요인으로 포함되었고, FTA 확대는 진행 중인 사항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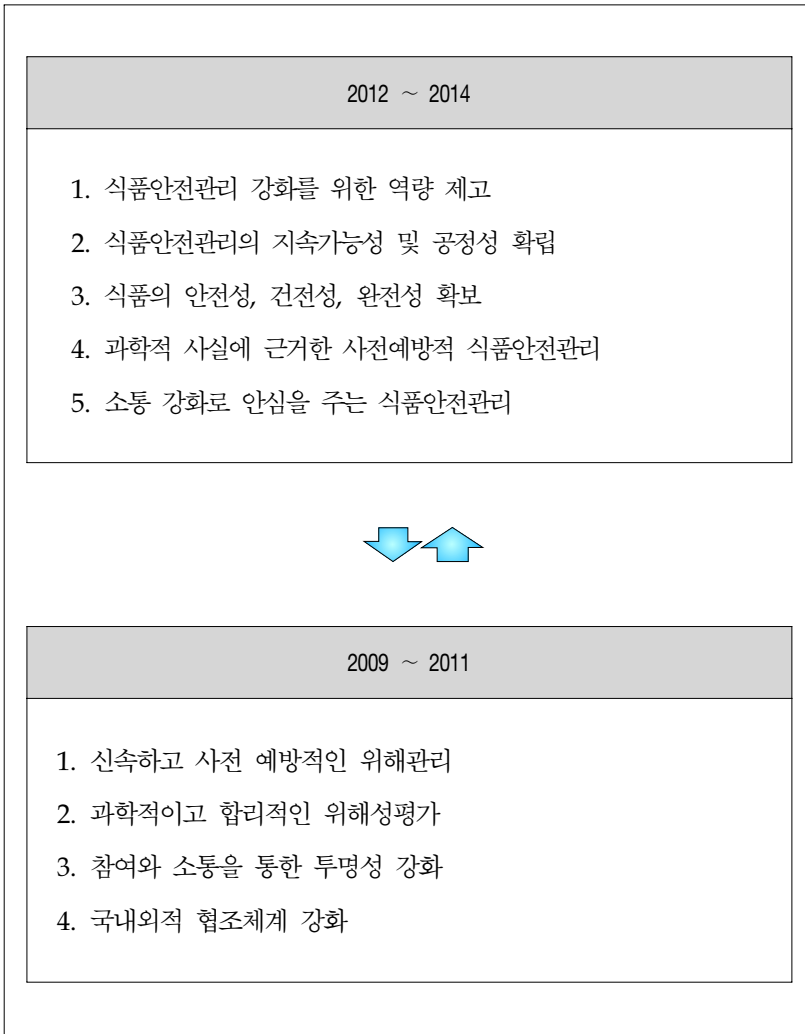
〈표 6-28〉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식품안전환경변화

1. 식품사고 유형 변화
2. 수입식품 및 식품유해물질 증가
3.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변화
4. 신소재 식품 및 신기술 출현
5. FTA 확대
6.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등 강화
7. 인구 고령화 및 식이섭취 변화
8.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
9.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식품안전관리

3. 전략목표

[그림 6-1]에는 선정된 Key Word로 설정된 전략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6-1]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목표(안)



전략목표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여 총 9종의 Key Word가 선정되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전(Safety), 역량(Capability), 공정(Fairness, equity), 예방(Prevention), 과학(Science), 소통(Communication), 식품의 건전(Soundness)과 완전(Wholesomeness)에다 전문가 조사에서 개선된 “안심”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확정되었다. 이중 예방, 과학, 소통은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에도 명시되었던 Key Word로 중요성이 인정되어 새로운 Key Word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전략목표로 채택되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가 조사에서 개선된 평가(Evaluation)는 전략목표이 기보다는 추진전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목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초안대로 추진전략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식품안전기본계획의 가장 큰 목표는 식품안전관리의 강화가 될 것이며, 시대 소명에 맞는 식품안전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즉, 식품안전관리의 지속가능성, 공정성, 역량 제고가 그렇다.

4. 추진전략

전략목표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여 총 10종의 Key Word가 선정되었다.

추진전략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좋은 수단이 되어야 함으로 전략목표보다는 하위개념의 Key Word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정된 Key Word는 애당초 연구진에 의해 연구, 제안되었던 거버넌스(Governance), 규제(Regulation), 방법(Method), 지원(Support), 근거(Evidence), 대응(Response), 평가(Evaluation), 시장(Market)과 전문가 조사에서 추가된 연구(Research)와 교육(Education)이다.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기 제시된 5가지

전략목표별로 10종의 추진전략 Key Word가 조합식으로 총 50개의 추진전략이 수립됨이 원칙이나 일부 전략목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추진전략은 수립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수립된 추진전략별 세부과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수립됨이 원칙이나 해당이 없는 세부과제는 수립하지 않기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였다.

5개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은 <표 6-2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29>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전략목표	1.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역량 제고	2. 식품안전관리의 지속가능성, 공정성 확립
특징	제도의 효율화, 합리화 등, 국가, 기관, 개인 등 경쟁력 제고	관리체계 전환 및 구축, 공정경쟁, 취약부문 지원
거버넌스	업무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성 증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효율적인 업무협력체계 구축
규제	단계별 식품안전규제 합리화	중장기적인 규제개선 정책 수립 및 집행
방법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실효성있는 현장 지도감독 강화
지원	국제기준에 합하는 법 제·개정 등 관리 균형화	인적, 물적 지원의 타당성 제고
근거	근거기반한 위해평가 실시	식품안전의 취약성 평가 및 활용 강화
대응	식품사고에 신속, 적정 대응시스템 구축	위해식품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체계 마련
평가	지자체 식품안전업무 추진 실적 평가	평가결과의 선순환적 활용 확대
시장	신소재, 신기술 제품의 안전관리	친 시장적 정책 및 관리 기능 강화
연구	연구 확대로 정책의 근거 기반 마련	자료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유지 강화
교육	교육 강화로 이해당사자간 소통 원활	업무추진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표 6-29〉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 계속

전략목표	3.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확보	4.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특징	위해식품 및 식품의 영양관리	사전관리, 위해평가 강화
거버넌스	식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위해평가의 전문성 강화
규제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	규제승인에 필요한 평가의 적시 실시
방법	고 영양식품의 올바른 조리지침 마련	국내외적 위해예방통제 강화
지원	새로운 식품 개발을 위한 지원	과학에 근거한 위해정보 수집체계 강화
근거	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과학의 발달과 위험에 근거한 정책개발 및 시스템 강화
대응	고 위험식품의 관리 강화	식품감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평가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식품관련 인증제의 실효성 평가 및 개선
시장	식품인증 등 표시 강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근절
연구	소비자 인식조사의 체계화 및 시계열적 분석	외국의 식품유해물질 관리 현황 연구
교육	만성질환(비만포함) 감소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수입국의 해외실사 전문성 강화 교육

〈표 6-29〉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 계속

전략목표	5. 소통 강화로 안심을 주는 식품안전정책 구현
특징	국가, 기관, 업체, 개인 등 소통
거버넌스	소통체계의 전문화 및 계통화 유지
규제	단계별(생산부터 소비까지) 소통차단 요인 확인 및 개선
방법	생산 및 유통환경의 위생수준 강화
지원	이력추적시스템 확대 적용을 위한 지원
근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환경 조성
대응	식품공급에 관련된 건강위험 최소화
평가	정기적인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장	(식품)유통구조 간전화
연구	식품안전의 사회위험화 현황 및 대응 전략 마련
교육	올바른 인터넷 정보 선택 및 활용을 위한 교육 강화

5. 세부과제

가. 세부분야별 과제

세부과제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추진전략에 해당되는 식품안전 세부분야별 개별분야와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구분하여 폭 넓게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조사시 묶음화하였던 과제들, 예를 들면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등을 모두 개별과제로 독립시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시된 세부과제 수는 개별 분야별로

는 30개 과제와 시스템 분야에서는 8개 과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식품유해물질, 유해 미생물, 표시, 인증, 신소재 및 신기술, 식중독, HACCP, GMP, GAP, GHP, 식품첨가물, 유기농, 잔류농약, 유전자재조합식품,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고위험집단의 먹거리, 외식, 집단급식, 건강기능식품, 식품 저장, 식품유통, 사료, 주류, 식품포장, 알리지, 방사능, 농식품(식재료), 영양, 식품이물 등으로 전문가 조사결과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 분야에서 제기된 식품안전사각지대(경로당, 구멍가게 등)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결국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세부과제별로 추진할 과제를 개발하는 것은 각 해당부처별의 몫으로 실제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추진 차원에서 세부과제는 가능한 많은 분야가 제시되었지만 각 부처별로 고유업무, 신규업무, 지속업무는 폭 넓게 포함시켜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 시스템 분야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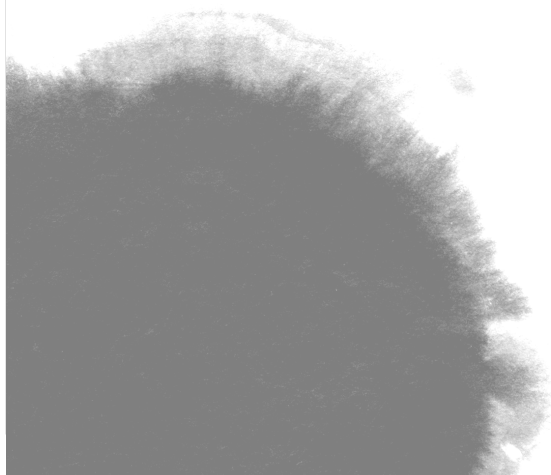
시스템 분야는 총 8종의 Key Word가 선정되었다.

인프라, 국제협력, 사전 모니터링, 사후관리, 이력추적, 지자체 평가, 자체 평가, 협력체계이다.

전문가 조사에서 제기된 위해분석(Risk Analysis)은 위해평가, 위해 관리, 위해소통으로 구성된 상위개념으로 시스템 세부과제로 포함시키기에는 부적당하여 사전 모니터링, 사후관리, 이력추적 등으로 세분화시켜 구체화시켰다. 또한 개인 및 조직의 유효성 평가 및 확인은 자체 평가의 세부과제로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식품안전사각지대는 세부분야별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07

정색제언 및 함의





제7장 정책제언 및 함의

제1절 결론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관리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영국 등 일부국이 영양, 식량확보 등을 주요 아젠다로 포함한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로, 기후변화 등으로 곡류생산 및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각국은 식량확보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있고, 총괄 조정업무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리 영역이 발생할 경우에 국무총리실로 업무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며, 각 부처별 독자적인 위원회 설치는 또 다른 차원의 식품안전관리 이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현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조직기능을 확대하여 식량, 영양 등 새로운 분야를 확충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올해는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추진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집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향후 3년간 식품안전업무 추진의 나침반이 되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될 것이다.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총 195

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이중 18개 과제가 지연되었으며, 2010년은 총 174개 과제중 12개 과제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처별로 보면 식약청과 농식품부가 동일하게 2개 과제이고, 타 부처가 2개 과제를 지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평가가 우수한 사업은 유지하고, 불량한 사업은 폐지, 개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업 내용상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보면 우선 실천 과제의 질적인 면보다는 목표 달성의 양적인 면에 치우쳐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HACCP 적용 업체 비율이다. 프로그램의 올바른 적용과 점검보다는 업체적용비율의 양적확대에만 주로 집중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단순히 전년 대비 사업건수 증감, 국민 만족도 상승치 등 사업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단순비교 지표가 대부분이라 시계열적인 계량적인 사업 평가를 할 수 없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지자체 통합평가의 식품안전관련 지표는 4개로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그리고 정책집행이 조금 더디더라도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는 사전조사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대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를 거친 사업이 없어 보였다.

잔류농약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차별화된 정책수립 및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아 업무의 중복,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정책 수단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목표달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책목표의 성취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한국 교민위주의 한식세계화 등 일부과제는 정책내용이나 수단의 범위가 협소하여 정책 달성의 임팩트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GAP, HACCP 등이 농산물을 위주로 적용되는 등 대부분의 정책 내용이나 수단이 기존 업무영역과 차별적이지 않고 답습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에는 소비자단체 등과는 의견수렴 및 일정 점검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일부과제의 경우 언론·전문가그룹(학회)·식품업계 등의 Opinion leader 대상으로등 일부 사업에서 정부부처간 사전 업무협조가 부족해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과제추진 및 성과의 홍보가 보도자료 설명회 등 기존 방식에서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국민 인지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제시된 전략목표가 달성된 성과도 있다. 하지만 제1차 식품안전 기본계획과는 달리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은 기초연구를 근거로 수립되는 계획이므로 3년후 더 나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Key Words 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는 이 연구는 활용도가 매우 크다 하겠다.

제2절 정책 제언

1. 사후평가 강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하의 사업들은 해마다 자체평가가 중심이 되어 평가되고 있으나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하에서는 평가위원회에 의한 심층평가가 이루어져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2. 해마다 식품안전관리의 Key Word 선정 및 발표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12년부터는 새해에 그해의 식품안전 Key Words를 1~2개 선정하여 언론 등에 발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올해의 식품안전의 주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존재성도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지속적인 연구 추진

현재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등으로 다원화되어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연구는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우선 내년에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하에 사업평가를 하기 위한 심화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 문헌

- 곽노성 외(2008). **국외 식의약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정책동향 파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 관계부처 합동(2009).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_____ (2010).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09)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_____ (2011).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10)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김정선 외(2010). **식품 위해성 평가방안 연구**. 국무총리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2009). **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_____ (2010). **201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_____ (2010).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_____ (2011). **2011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 현안 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청(2010).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
_____ (2009).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
_____ (2009).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_____ (2010). **국민의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희망
미래 2020**
- 정기혜 외(2009).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_____ 외(2009). **해외 식품안전 관리실태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감사원

정기혜 외(2010).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요인 인지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onsensus Documents for the Work on the Safety of Novel Foods and Feeds

http://www.oecd.org/document/2/0,3746,en_2649_34385_46814658_1_1_1_1,00.html

미국 국립해양수산물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

<http://www.nmfs.noaa.gov/>

미국 식품안전 작업그룹(Food Safety Working Group, FSWG)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

미국의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 (2009년 7월)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ContentKeyFindings/HomeKeyFindings.htm>

Preliminary FoodNet Data on the Incidence of Infection with Pathogens Transmitted Commonly Through Food --- 10 States, 2008, MMWR 58(13): 333-337, April 10, 2009.

미국 식품안전 작업그룹(Food Safety Working Group, FSWG)의 활동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ContentActivities/HomeActivities.htm>

캐나다 농무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gen/portfolioe.shtml>

캐나다 보건부의 건강제품·식품국(Health Products and Food Branch)

<http://www.hc-sc.gc.ca/fn-an/index-eng.php>

캐나다 보건부의 공중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http://www.phac-aspc.gc.ca/index-eng.php>

EU 건강소비자집행기구(Executive Agency for Health and Consumers, EAHC), <http://ec.europa.eu/eahc/about/about.html>

EU 건강소비자집행기구(Executive Agency for Health and Consumers, EAHC)의 식품안전 관련 교육,
<http://ec.europa.eu/eahc/food/food.html>

EU 연구총국(DG for Research)의 식품안전 관련 연구
http://ec.europa.eu/research/biosociety/food_quality/index_en.html

DG Health and Consumers Management Plan 2011 and beyond
http://ec.europa.eu/atwork/synthesis/amp/doc/sanco_mp.pdf

일본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중장기계획
http://www.shoku-net.pref.gunma.jp/jiti-net/net_sisaku.htm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품안전관리 중장기계획
<http://www.maff.go.jp/j/syouan/seisaku/plan/index.html>

동경도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kuhin/jourei/keikaku_2.html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http://www.gov.cn/zwgk/2010-02/10/content_1532419.htm

중국 국무원 전원위원회
http://www.gov.cn/test/2008-03/17/content_922434.htm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사무국장의 식품안전정책 방향 예측 인터뷰
<http://cpc.people.com.cn/GB/64093/64102/14026644.html>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2011년 8대 중점과제
<http://news.hexun.com/2011-02-20/127427146.html>

후생노동협회(2010). **국민위생 동향**

소비자청(2010). **소비자기본계획**

식품안전위원회(09.7.23). 『소비자행정추진회의 제출자료』. 재판집.

FAO-위기대응 지침empresENG_reduced.pdf

INFOSAN-9789241501286_eng.pdf

INFOSAN-9789241501286_eng.pdf

미국-FDA 전략 계획 UCM226907.pdf

미국-FDA 전략 계획 UCM226907.pdf

미국-FSIS Strategic_Plan_2008-2013.pdf

캐나다-Health Canada.pdf

캐나다-CFIA.pdf

EU-EFSA-stratplan09en2.pdf

EU-EFSA-stratplan09en2.pdf

일본-소비자기본계획-100330keikaku.pdf

동경도 기본계획.pdf 재판집

<http://www.codexalimentarius.net/web/archives.jsp?lang=en>

<http://www.fao.org/ag/agn/agns/>

http://www.oecd.org/document/2/0,3746,en_2649_34385_46814658_1_1_1,00.html

<http://www2.oecd.org/biotech/>

http://www.oecd.org/document/41/0,3746,en_2649_34365_1890473_1_1_1,00.html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ContentKeyFindings/HomeKeyFindings.htm>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ContentNewsArchive/HomeNewsArchive.htm>

http://ec.europa.eu/atwork/synthesis/amp/doc/sanco_mp.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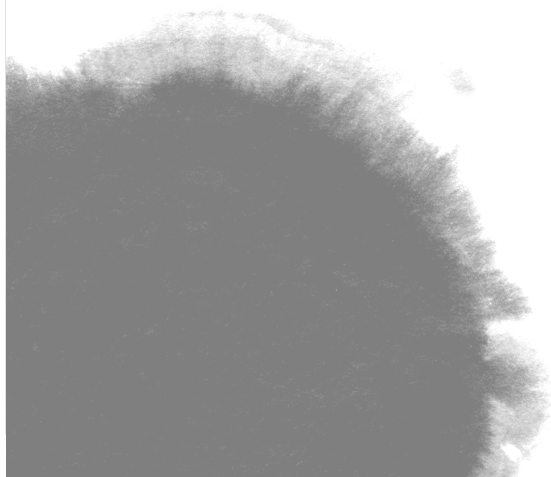
<http://www.maff.go.jp/j/syouan/seisaku/plan/index.html>

http://www.gov.cn/zwgk/2010-02/10/content_1532419.htm

<http://cpc.people.com.cn/GB/64093/64102/14026644.html>



부 록





부록

부록.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조사표

조사대상	일련번호	작성자	
		성명	연락처
		() - () - ()	()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과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1년 국무총리실의 수탁과제인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과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의견은 식품안전관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연구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조사결과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할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입니다.
- 각 환경변화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택여부 표시 : 찬성(O), 반대(X), 의견없음 혹은 수정·보완(△)
의견 기재 : 반대나 수정시 의견을 직접 작성

환경변화	채택여부	의견
식품사고 유형변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		
신소재, 신기술 출현		
FTA 확대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강화		
인구구조 고령화 및 식이섭취 변화		
소비자 만족도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		

추가 의견(직접 기재)

- 1.
- 2.
- 3.
- 4.
- 5.

2. 국가 전략 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시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입니다.
- 각 Key words 대한 검토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정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택여부 표시 : 찬성(O), 반대(X), 의견없음 혹은 수정·보완(△)
의견 기재 : 반대나 수정시 의견을 직접 작성

Key words	채택여부	의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전(Safety)		
역량(Capability)		
공정(Fairness, equity)		
예방(Prevention)		
과학(Science)		
소통(Communication)		
건전(Soundness), 완전(Wholesomeness), 안전(Safety)		

추가 의견(직접 기재)

- 1.
- 2.
- 3.
- 4.

3.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한 조사입니다.

- 각 Key words 대한 검토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정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여부 표시 : 찬성(O), 반대(X), 의견없음 혹은 수정·보완(△)
의견 기재 : 반대나 수정시 의견을 직접 작성

Key words	채택여부	의견
거버넌스(Governance)		
규제(Regulation)		
방식(Method)		
지원(Support)		
근거(Evidence)		
대응(Response)		
평가(Evaluation)		
시장(Market)		

추가 의견(직접 기재)

- 1.
- 2.
- 3.
- 4.

4.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분야)

□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시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기본틀 마련을 위한 조사입니다.

- 각 Key words 대한 검토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정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택여부 표시 : 찬성(O), 반대(X), 의견없음 혹은 수정·보완(△)

의견 기재 : 반대나 수정시 의견을 직접 작성

Key words	채택여부	의견
수입식품, 검역, 수출식품		
식품유해물질		
표시 및 인증 등 정보		
신소재 및 신기술 식품		
식중독		
HACCP, GMP, GAP, GHP		
식품첨가물		
유기농 및 잔류농약		
유전자재조합식품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계층별 (어린이, 노인) 먹거리		
외식 및 집단급식		
건강기능식품		
식품이물		
식품저장 등		

□ 추가 의견(직접 기재)

- 1.
- 2.
- 3.
- 4.
- 5.

5.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시스템)

-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시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조사입니다.
- 각 Key words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 표시기호(O, X,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정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채택여부 표시 : 찬성(O), 반대(X), 의견없음 혹은 수정·보완(△)**
의견 기재 : 반대나 수정시 의견을 직접 작성

Key words	채택여부	의견
인프라		
국제협력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위해식품 신속수거 등 대응		
이력추적		
지자체 평가 및 자체평가 강화		

□ 추가 의견(직접 기재)

- 1.
- 2.
- 3.
- 4.
- 5.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달미아	5,000원
	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7,000원
	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미정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미정
	11-09	인구집단 의료이용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 지대응 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미정
	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11-13	사회보장제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미정
	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미정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미정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미정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미정
	11-17-4	2011 보건복지 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미정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미정
	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미정
	11-21	탈수급 제고를 위한 기초보장 패널구축: 역동성 평가를 위한 양적, 질적 패널 구축 및 기초연구	최현수	미정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미정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미정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 국제비교연구: 정부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복지서비스행정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기층의 복지제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미정

11-27	다문화가족이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미정
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미정
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미정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미정
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미정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도방안	정영철	미정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미정
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미정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미정
11-37-1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미정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미정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미정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미정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미정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미정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M시 종적연구기반(1)	오영희	미정
11-37-14	고령친화여가 산업활성화 방안	김수봉	미정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오영희	미정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이삼식	미정
11-37-17	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미정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생업연구	이소정	미정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미정
비발간	국제신포자음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미정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미정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미정

	11-39-4	건강영양평가 DB구축	김동진	미정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미정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미정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미정
	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및응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미정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김미숙	미정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미정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비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미정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미정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비아	5,000원
	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연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환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율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이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관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가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경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산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산노년층(에비노년층)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신우덕	5,000원
10-30-21	산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정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정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